

2023

통합24차 정기총회 (19차 대의원총회)

- 일시 : 2023년 02월 25일(토) 오후 2시
- 장소 : 대전 대덕구 증리서로 83, 럭키스포츠프라자 5층

총회 진행순서

[제 1부 기념식]

- 건강체조
- 개식선언
- 생명의례
- 2022년 활동 영상 시청
- 시상
 - 개인부문
 - 단체부문
- 임원 / 원장단 인사
- 폐식선언
- 기념촬영

[제 2부 정기총회]

- 경과보고
- 전차 대의원총회 의사록
- 상정의안

자료집 목차

	건강정의	5
	설립이념, 정관 전문	6
	기념사	7
	연혁 및 현황	8
	시상	17
	경과보고	21
	전차회의록	22
	상정의안 순서	27
제1호 의안	2022년 종합감사보고 승인의 건	29
제2호 의안	2022년 탈퇴조합원에 대한 출자금 환급 승인의 건	35
제3호 의안	2022년 사업예산 변경 사후 승인의 건	39
제4호 의안	2022년 사업보고 및 결산보고(안) 승인의 건	43
	I 사업 보고	45
	II 사업 실적	
	1. 설립이념에 따른 2022년도 사업 실적	47
	2. 정관에 따른 2022년도 사업 실적	50
	3. 2022년도 사업계획에 따른 사업 실적	
	1) 일차의료센터 사업보고	53
	2) 지역사회의료센터 사업보고	58
	3) 통합돌봄사업본부	65
	(조합사업부, 주민참여건강증진센터, 주간보호센터)	
	4) 경영지원실(총무회계팀, 홍보협력팀)	82
	III 결산 보고(안)	
	1. 결산 보고 총평	89
	2. 자산 / 부채 / 출자금 현황	90
	3. 주요 결산 실적	91
	4. 자본결산	92
	5. 재무상태표	
	1) 통합 재무상태표	94
	6. 손익계산서	
	1) 통합 손익계산서	96
	7. 부서별 수지계산서	98

	8. 예산대비 집행계산서	<u>100</u>
	Ⅳ 민들레 10원칙 실적보고	<u>103</u>
	1. 제1원칙 : 자발적이고 개방된 조합원제도	<u>105</u>
	2. 제2원칙 :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인 관리	<u>107</u>
	3. 제3원칙 : 조합원에 의한 경제적 관리	<u>109</u>
	4. 제4원칙 : 자율과 독립	<u>110</u>
	5. 제5원칙 : 교육·훈련 및 정보제공	<u>111</u>
	6. 제6원칙 : 협동조합 간 협동	<u>112</u>
	7. 제7원칙 :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u>114</u>
	8. 제8원칙 : 적정진료, 적정서비스의 원칙	<u>116</u>
	9. 제9원칙 : 노동자 주권의 원칙	<u>117</u>
	10. 제10원칙 : 약자우선	<u>118</u>
제5호 의안	2022년 잉여금 처분(안) 승인의 건	<u>119</u>
제6호 의안	2023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의 건	<u>123</u>
	Ⅰ 2023년도 사업계획(안)	
	1. 사업기조	<u>125</u>
	2. 6대 핵심지표 달성 목표	<u>126</u>
	3. 단위 부서별 사업계획	
	1) 일차의료센터	<u>127</u>
	2) 지역사회의료센터	<u>131</u>
	3) 통합돌봄사업본부 (주간보호센터, 주민참여건강증진센터)	<u>134</u>
	4) 조합사업부	<u>140</u>
	5) 경영지원실	<u>143</u>
	Ⅱ 2023년도 사업예산(안)	
	1. 2023년도 예산 수립 기초	<u>147</u>
	2. 예산 총칙	<u>148</u>
	3. 단위부서별 2023년 예산(안)(2022년도 결산대비)	<u>149</u>
제7호 의안	차입금 한도 승인의 건	<u>161</u>
기타 의안		
부록	정관 및 규약	<u>165</u>



민들레의료복지 사회적협동조합

1. 건강정의
2. 설립이념
3. 기념사
4. 연혁 및 현황
5. 시상

●● 건강 정의

건강이란 '아픔을 중심에 두고 자기를 극복하는 힘'이며
몸, 마음, 세상의 안녕과 더불어 영적, 생태적으로 건강한 관계를 발현해가는 과정이다.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건강증진이란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도록 하는 과정이다. <WHO. 2000>

●● 건강 약속

아플 때, 나를 돌아보게 하소서.
내 몸의 소리를 듣게 하소서.
내가 아픈 것은 세상이 아픈 것임을 깨닫고
그 아픔의 근원을 응시할 수 있게 하소서.
우주인 생명이 내는 소리에 귀를 열게 하소서.
이웃의 아픔이 곧 내 아픔임을 깨닫게 하소서.
늘 안부를 묻고 살피는 서로가 되게 하소서.
이웃이 아플 때 아픈 내 몸 쓰다듬듯 손 내밀어 잡게 하소서.
하나의 생명으로서 그 본성처럼 늘 서로 돕고, 늘 서로 나누며
그것을 통해 더불어 하나 됨 속에서 기뻐할 수 있게 하소서.
한 생명 한 생명이 빛날 수 있게 하소서.
<2015.10.05.제정, 2018.01.17.개정.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민들레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이란

지역주민과 의료.복지 종사자가 협동하여 의료, 돌봄, 예방 사업을 통해 마을마다
건강생활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사회적협동조합이자 사회적기업이며 지역사회 주민조직이다.

●● 설립이념, 정관 전문

설 립 이 념

지역사회 주민이 참여하는 협동조합으로서
생명과 평화, 공동체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한다.

환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치료과정에 함께 참여하며
인권을 존중하는 의료, 복지, 노인건강사업을 펼쳐나간다.

자신과 가정, 직장, 마을에서 좋은 생활습관과 환경을 만들어
질병을 사전에 예방하는 보건의료를 실천한다.

주민의 자치와 참여, 협동을 통해
지역의 마을마다 건강한 생활공동체를 만들어간다.

정 관 전 문

민들레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은 나눔과 협동의 경제를 지향하는 지역통화운동단체 「지역품앗이 한발레츠」와 참다운 의료생활의 실현을 위해 노력해 온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대전·충남지회」가 중심이 되어 시작되었다. 이후 친구랑 공동육아어린이집, 한발생활협동조합, 한살림대전생활협동조합 등의 협동조합과 대전지역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지역주민들의 노력으로 창립하였다.

민들레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은 다음과 같은 네 가지를 기본 이념으로 한다.
첫째, 지역사회 주민이 참여하는 협동조합으로서 생명과 평화, 공동체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한다.
둘째, 환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치료과정에 함께 참여하며 인권을 존중하는 의료, 복지, 노인건강사업을 펼쳐나간다.
셋째, 자신과 가정, 직장, 마을에서 좋은 생활습관과 환경을 만들어 질병을 사전에 예방하는 보건의료를 실천한다.
넷째, 주민의 자치와 참여, 협동을 통해 지역의 마을마다 건강한 생활공동체를 만들어간다.

민들레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은 위 네가지 기본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조합원 주권의 원칙을 따르며 세계의 협동조합과 연대하며 평화롭고 행복한 세계를 이루어 나갈 것이다.

●● 기념사



민들레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석연희

조합원, 대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민의 살림이 더욱 힘들어지고 안타까운 지구촌의 소식들을 들으며 우리 민들레 가족들은 평안하신지 안부를 여쭙습니다. 그래도 절기는 봄이고 통통해진 목련 봉우리에서 아름다움과 희망을 느끼는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민들레는 조합원과 지역주민의 건강자치력 향상을 위해 끊임없이 나아가 이웃과 지역의 건강을 함께 생각하고 살피는 **건강반 활동과**, 나부터 시작하는 건강나눔 **건강리더** 교육을 통해 건강을 사거나 팔지 않고 협동으로 만들어가는 활동들을 지속하고 있으며

신뢰받는 일차의료센터를 통한 걱정 진료와, 돌봄이 필요하신 가정으로 직접 찾아가 맞춤형 통합 돌봄 의료서비스를 해드리는 재택의료, 가정간호, 방문간호, 장애인주치의 등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건강 돌봄으로 여러분들의 곁에 있습니다

무엇보다 많은 조합원님과 대의원 여러분의 출자와 기부로 만들어진 **'주치의가 있는 주간보호센터'** 개소는 매우 뜻깊은 성과로 존엄한 노후생활을 위해 정성으로 어른신들을 살피 드리고 있습니다. 올해는 주간보호센터 안정화를 위한 모두의 노력이 필요한 때입니다. 조합원님과 새롭게 구성된 9기 대의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민들레와 함께
나의 건강 약속
서로의 건강 약속
공동체의 건강 약속으로 건강을 돌보고 민들레의 확장에 함께해 주십시오

우리가 만들고 다진 시간들이 길이 되고 역사가 될 것입니다.

자신을 돌보고
서로를 돌보고
공동체를 돌보는 민들레 조합원, 대의원님들이 계셔서 든든합니다.

고맙습니다.

1. 민들레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연혁

2001년	2002년	2003년
<p>■ 지역품앗이 한발레츠 회원 8명 민들레의료생협 준비모임 결성</p> <p>■ 민들레의료생협 준비위원회 결성(20여명)</p>	<p>“주민의 참여와 협동으로 만드는 건강한 마을”</p> <p>■ 민들레의원, 한의원 개원</p> <p>■ 발기인 대회 (발기인 50명, 대표 김조년)</p> <p>■ 창립총회 (조합원303명, 이사장 김조년)</p> <p>■ 소식지 창간호 ‘민들레’</p>	<p>“주치의 사업의 기반 마련, 조합원 기초조직을 통한 조합운영, 진료권 내 중심을 둔 조합활동”</p> <p>■ 홈헬퍼 파견사업 선정 (사회복지공동모금회)</p> <p>■ 공동체 화폐로 만드는 건강한 마을사업 선정 (사회복지공동모금회)</p>
2004년	2005년	2006년
<p>“조합원 가족주치의, 법동품앗이, 민들레 학교”</p> <p>■ 일본 아мага사키 의료생협 방문 환영회</p> <p>■ 법동품앗이 창립</p>	<p>“체조하고 걷는 해”</p> <p>■ 건강실천단 발대식 만걸음 걷기 행사(계족산)</p> <p>■ 새터가족과 함께하는 건강운동회</p> <p>■ 민들레 중장기 발전을 위한 워크숍</p>	<p>“체조하고 걷는 해”</p> <p>■ 사회복지봉사활동인증센터 지정</p> <p>■ 한국의료생협연대 개소식</p> <p>■ 민들레의원 1층 이전</p> <p>■ 전화상담 민들레 교육훈련</p> <p>■ 공동체 자원활동가 교육훈련</p> <p>■ 치과 개원</p>

<p style="text-align: center;">2007년</p> <p style="text-align: center;">“걸고 체조하고 자전거타는 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월평공원-갑천 생태계 지키기 시민대책위 ■ 「공생공빈」저자 스찌다 다카시 초청강연회 ■ 암치유 전략워크숍(나준식) ■ 공동생협학교 	<p style="text-align: center;">2008년</p> <p style="text-align: center;">“지구와 함께 건강해지는 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태안 자원활동 ■ 건강실천단 발대식 ■ 한의원 뜸 전략 기획단 ■ 슬로건 만들기 대의원 WS ■ 창립 6주년 등반대회 ■ 건강캠프 ‘오약사 따라잡기’ ■ 소액금융지원 약정체결 (사회투자지원재단) ■ 의료생협 서비스 품질 WS 	<p style="text-align: center;">2009년</p> <p style="text-align: center;">“건강증진활동의 기초를 다지는 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본 미나미 의료생협 민들레 방문 및 교류회 ■ 제1차 이용자 간담회 ■ 건강증진실 개소 ■ 창립7주년 야간산행 ■ 사회적기업가 양성과정 보건분야 개강 ■ 호숫가품앗이가게 개소식 ■ 노인복지센터 이전개소식
<p style="text-align: center;">2010년</p> <p style="text-align: center;">“건강한 마을의 기초를 다지는 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본 / 일본의료생협 연수 ■ 건강검진센터 개소 ■ 비영리경영컨퍼런스 ■ 가정간호사업소 개소 	<p style="text-align: center;">2011년</p> <p style="text-align: center;">“조합원이 함께 민들레를 세우는 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검진 협약 (세이브더칠드런 등) ■ 대전지역생협연대 공동산행 ■ 조합원 방문의 날 ■ 제2의료기관 설립을 위한 워크숍 ■ 임시대의원 총회(둔산진출) ■ 둔산민들레 추진위원회 ■ 우수 사회적기업 표창 (대전광역시) 	<p style="text-align: center;">2012년</p> <p style="text-align: center;">“새로운 10년을 펼치는 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둔산민들레 개원 ■ 황성수 박사 초청 특강 ■ 한미FTA폐기 동네춧불 ■ 현미채식건강실천단 ■ iCOOP씨앗기금 전달식 ■ 조합원 제안사업 ■ 우수 사회적기업 표창 (대통령) ■ 업무협약(양심과 인권‘나무’) ■ 10주년 기념행사, 토론회 ■ 해고노동자 검진(민주노총) ■ 치과진료협약(굿네이버스) ■ 여성새일센터 협약 ■ 여성친화기업 인증 ■ 대덕치과 이전

2013년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협동조합 전환창립 ■ 민들레-한밭생협 세화강좌 ■ 씨앗기금 협약 ■ 한밭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창립,가입 ■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연합회 전환창립 ■ 의료생협 현지조사 참여 (보건복지부)

2014년
“조합원과 더 많이 만나는 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좋은 이사 학교 ■ 장애인부모연대 치과치료협약 ■ 임시총회(건물매입) ■ 세상콘테스트 성장기부문 수상 ■ 건물매입계약 ■ 의료민영화반대 기자회견 ■ 민들레 방문의 날 (비영리협동조합연대) ■ 사회적기업 월드포럼 참가자 민들레 방문 ■ 건물매입을 위한 조합원 행사 진행(구별) ■ 건강의 집 담당자 교육 ■ 사회공헌 한마당 참여

2015년
“흑자경영 원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K사회성과인센티브 참여 ■ 우수 협동조합 표창 (기획재정부 장관) ■ 중장기발전계획수립을 위한 간담회 ■ 홈커밍데이 ■ 건강나눔터 “바르게 걷기” ■ 전국자치단체 일자리경진대회 우수상(어린이집) ■ 지역사회주도형 노인건강돌봄지원사업 선정 (사회복지공동모금회) ■ 사회문제해결 기술연구 리빙랩사업 선정(연구재단) ■ 건물매입완료

2016년
“건강의 집으로 지역사회에 뿌리 내리는 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비이사학교 ■ 1기 건강조직가 양성과정 ■ 유성구 진잠동 주민참여형 건강마을만들기 ■ 리빙랩-당뇨자조모임 ■ 가족친화기업 인증(여성가족부) ■ 사회성과인센티브 어워드 ■ 노인의료복지연구모임 ■ 아동여성안전병원 협약(대전광역시) ■ 사회적기업 클라우드 펀딩대회 최우수상 ■ ‘청춘은행’ 시스템 구축 ■ 스포츠의학센터 개소 ■ 1기 건강리더양성과정 ■ 여성친화기업 인증(대전광역시)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협약

2017년
“주민참여 보건의료혁신을 통한 대전의 건강한 미래를 주도해가는 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세종 감사 사회적기업가 대통령 표창 ■ 나준식 이사장 사회적기업 유공 대전광역시 표창 ■ 드림터 청소년 희망멘토 사업장 인증 (대동종합사회복지관) ■ 주민참여건강증진센터 개소 ■ 지역사회주도형노인건강돌봄사업 (사회복지공동모금회) ■ 사회격차해소 연구개발 프로젝트(연구재단) ■ 혁신형 협동조합 모델발굴사업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대전광역시 공동체활성화 가꾸자 사업 (대전광역시 사회적자본지원센터)

2018년

“대덕구 지역사회중심 의료요양 통합돌봄 시스템 단계적 준비 및 건강리더, 건강반 조직을 통한 주민건강자치력 향상”

- 청소년 진로 동기강화 및 성숙도 향상 기여 감사장(대동종합사회복지관)
- 대전광역시 공동체활성화 공모사업
- 대전광역시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 지원
- 커뮤니티비즈니스 활성화 사업 (R&D, 비R&D분야, 산업통상자원부)
-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커뮤니티케어 일본연수(치바)
- 커뮤니티비즈니스 활성화사업 커뮤니티케어 선진지 연수(후쿠오카)
- 대전광역시발달장애인지원센터 협약
- 법동 커뮤니티케어 추진단 구성
- 일본케어매니저제도와 교육과정 및 지역포괄케어시스템 벤치마킹 연수(이바라키)
- 지역사회적경제 활성화 유공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표창(나준식 이사장)
- 지역,산업 맞춤형일자리창출 지원사업 기관 협력 협약(대덕구청)
- 건강리더 양성과정(5개 기수) 36명 수료, 청소년 건강리더(1개 기수) 18명 수료

2019년

“마을주도 통합돌봄 모델을 만드는 해”

- 민들레-자산관리공사대전충남지역본부 업무협약
- 2019년도 건강반 46개 승인 및 반장설명회
- 커뮤니티케어와 사회적경제의 만남 마주봄 엑스포개최
- 10,11기 건강리더양성과정 시작
- 한울아학 장애인 건강교육 진행(장애인주치의사업)
- 뇌병변 장애인 맞춤형 재활프로그램
- 만성질환(고혈압,당뇨)관리 교육 및 영상제작 활용
- 대덕구공동체지원센터 수탁 운영
- 둔산치과 사업종료
- 사회적경제정부포상 고용노동부장관 감사패 수상
- ICT기술 활용한 노인치매·낙상예방'편편'활동
- 건강자원조사위한 동네돌봄단 활동 시작
- 중장년남성위한 꽃중년 건강리더양성과정
- 케어매니저양성 기초교육과정개설
- 장애인체력측정, 장애인 운동프로그램, 금연상담, 건강의달인 프로그램
- 2019 건강반 축제 개최
- 민들레대의원씨앗모임
- 제8기 민들레대의원선거

2020년

“민들레형 동네돌봄을 만드는 해”

- 지역사회의료센터 개설, 방문의료서비스 확대
-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사업 협동조합 창업지원
- 제13, 14기 건강리더양성과정 수료
- 제8기 대의원 자치회 단합대회 개최, 모임 활동
- 장애인건강주치의 시범사업 2단계 시작
- 민들레만의 방문의료특화사업 ‘재활, 구강, 예쁜발 프로젝트’
- 주민참여 커뮤니티케어 시스템지원 ICT통합솔루션개발사업
- 대덕구 경증치매어르신 웰라이프 돌봄서비스
- 지역사회통합돌봄 방문건강관리사업 “건강을 부탁해”
- 대전대와 2020케어매니저 양성 심화교육
- 조합원 4천 명 돌파 (4,008세대 달성)

2021년

“민들레형 동네돌봄을 견고히 하는 해”

- 지역사회공헌 인정기업 승인 (보건복지부, 한국사회복지협의회)
- 대전 지역사회 통합돌봄 시범사업 추진 업무협약
- 지역주민 건강생활실천 및 건강증진 업무협약 (대덕구보건소, 대덕종합사회복지관)
- 당뇨병, 천식 적정성 평가 양호기관 선정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대전시 지역사회 통합 돌봄 체계내에서 공공 보건의료 연계 모델 개발 협약(충남대학교)
- 대덕구「사회적경제활성화사무」운영 위,수탁 협약 (대덕구청)
- 2021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고용노동부, 대덕구청)
- 병역명문가 업무협약(대전충남지방병무청)
- 금연치료 협력 우수기관 인증(국민건강보험공단)
-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 업무협약(대덕구청)

2022년

“민들레형 동네돌봄을 확장 하는 해”

- “주치의가 있는 주간보호센터 설립추진” 대의원,조합원 웨비나개최-01/20
- 통합23차 정기총회(18차 대의원총회)-02/26
- 민들레주간보호센터 설립 출자/기부 캠페인-4월~6월
- 건강반 55개 승인-4월
- 임원워크숍-04/24
- 대덕구공동체지원센터 “대덕구공동체한마당” 참여-05/21
- 제18, 18기 건강리더 수료-6월
- 민들레꽃나눔반 발족-06/17
- 주간보호센터건립조합원추진위원회 활동마무리 작은만찬-07/05
- 조합 창립20주년 조합원 설문조사-08/23
- 창립20주년 기념 떡나눔행사-08/24
- 건강UP행복UP 건강마을축제-10/20
- 대전시청 “여성친화기업” 협약-11/29
- 9기 대의원 선출-12월
- 민들레주간보호센터 개소-12/01
- 대덕구청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업무협약-12/01
- 민들레 송년축제 개최-12/08
- 산업통장자원부 사회적경제혁신성장사업“사회서비스 및 시제품개발 성과보고회”개최-12/09
- 민들레주간보호센터 개소식-12/16
- “경증치매어르신 웰라이프 헬스케어서비스” 보건복지부 우수상 수여-12/19
- 대덕구공동체지원센터 수탁 종료-12/31

주요 수상, 인증 내역

연 도	내 용	대 상 자
2011	우수 사회적기업 대전광역시 표창	민들레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2012	우수 사회적기업 대통령 표창	민들레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2013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전환 창립	민들레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2015	우수 협동조합 기획재정부장관 표창	민들레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2017	우수 사회적기업가 대통령 표창	민들레의료사회협 조세종 감사
2018	사회적경제 활성화 유공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표창	민들레의료사회협 나준식 이사장
2019	사회적경제 정부포상 고용노동부장관 감사패	민들레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2019	'장애인주치의 시범사업 기여' 공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표창	민들레의료사회협 나준식 이사장 민들레건강검진센터 허애령 원장
2019	여성가족부장관 '가족친화기업인증'	민들레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2020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여 대전광역시 표창	민들레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남은순 팀장
2020	'국민보건 향상 공헌'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	민들레지역사회의료센터 이경민 팀장
2020	'동네돌봄 활성화' 기여 대덕구청장 표창	민들레지역사회의료센터 박지영 센터장
2021	'사회서비스분야 사회적경제활성화' 기여 표창 보건복지부 장관	주민참여건강증진센터 국현정 센터장
2021	사회적경제 유공자 정부포상 산업포장 대통령	민들레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나준식 이사장
2021	'장애인주치의 시범사업 발전' 기여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지역사회의료센터 박지영 센터장

2022년도 수상, 지정 내역

일 자	내 용	대 상 자
2022.05.18	대전광역시 정신건강 마음이음 협력기관 지정	민들레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2022.11.29	여성친화기업 지정 대전광역시	민들레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2022.12.01	"민들레주간보호센터" 장기요양기관 지정 대덕구청	민들레의료사회협 민들레주간보호센터
2022.12.19	"경증치매어르신 웰라이프 헬스케어서비스" 우수상 보건복지부	민들레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2. 민들레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현황

1) 기본 현황

구 분	2022년	2021년	2020년
조합원(세대)	4,402	4,182	4,008
출자금(원) 출자예치금포함	1504100000	1,170,370,000	1,147,690,000
총 자산(원)	3325301945	2,333,025,867	2,032,456,718
직원(명)	47	40	44

2) 조직도 (2022.12 현재)



3) 9기 대의원 명단(총 110명)

유형	
<p>소비자조합원 (50명)</p>	<p>강미영 고달숙 공옥순 권인호 김경언 김경희 김복남 김순영 김영순 김윤영 김정호 김종민 김준형 김찬옥 김창원 김창일 김화정 남은순 박미앙 박영기 박주희 박지은 박천경 배은열 백옥현 서은영 석연희 설진숙 신철순 오민우 유승화 유인수 이경선 이미선 이선아 이원표 이원호 장은중 전인수 정복희 정연희 정운재 조 현 채계순 추경미 한경이 한선희 함보현 홍은영 황대관</p>
<p>직원조합원 (25명)</p>	<p>국현정 김은선 김혜원 나준식 문진식 박윤민 박종희 박현주 박혜란 신현정 양영미 윤미경 이경민 이미순 이연서 이옥희 이자우 이주현 이지명 이희경 임영신 장하림 최수이 한선영 허애령</p>
<p>자원봉사조합원 (25명)</p>	<p>김성욱 김연준 김태순 노복희 박명수 배선부 배현옥 봉미경 서화자 석희옥 송직근 오경예 유성현 이경옥 이근화 이정자 임남희 장은영 전성욱 전종훈 정용철 주웅식 천재경 최윤나 최진훈</p>
<p>후원자조합원 (10명)</p>	<p>권세현 김현나 박병철 신연순 신정은 신지혜 이기업 정종한 최윤정 홍재희</p>

4) 기부금 참여 현황 - 스스로조합비, 일반기부금 (2022.12.31.)

총액(원)	스스로조합비		일반기부금		비고
	회원수	금액	기부건수	금액	
69,721,204	263	36,870,000	66	32,851,204	

o 스스로 조합비(기부금) 참여자 명단

강명숙 강수환 강윤희 강종예 고광현 고명호 고미경 국현정 권경미 권기철 권미양 권성희
 권세현 권의경 권인호 권지명 권지연 권지훈 길인숙 김경선 김경화 김경희 김기운 김다미
 김다슬 김동석 김미선 김미성 김미영 김민희 김병조 김봉기 김선미 김성훈 김수경 김연아
 김연준 김영례 김영선 김영순 김영준 김옥순 김용환 김운섭 김이향 김일섭 김종갑 김종남
 김진호 김찬옥 김춘화 김현나 김현미 김현숙 김현영 김현조 김현주 김현주 김현태 김형근
 김형렬 김혜원 김화준 김효태 김희형 나성은 나준식 남은순 남해성 노미정 문진식 문희균
 박명구 박명연 박명화 박미양 박병철 박봉희 박영민 박영철 박유경 박유미 박재연 박정홍
 박종금 박종희 박종희 박준규 박지숙 박지영 박진희 박태일 박현주 박현희 박혜란 배은열
 백미순 백수홍 백양순 백유선 백종범 백희정 봉미경 서동애 서정빈 석연희 석은자 석필환
 선재규 성광진 손복희 손태희 송순옥 송애경 송영숙 송정희 송지현 송지혜 송직근 신경희
 신소연 신송균 신연순 신옥영 신원선 신원식 신정은 신지혜 신현정 심정희 안영섭 안혜영
 양봉석 양영미 엄기정 여인표 오민우 오완균 오정분 오현우 우광제 원종승 유선화 유수진
 유승민 유영희 유인수 유진석 윤대진 윤명숙 윤미경 윤선미 윤자윤 윤주현 이경민 이경선
 이규만 이기순 이기업 이내희 이덕희 이미순 이민영 이봉선 이상녀 이선아 이선화 이성현
 이성현 이 송 이연서 이영숙 이영은 이옥희 이용화 이우림 이원표 이은경 이은영 이자우
 이정례 이종원 이종현 이주선 이주현 이지명 이진미 이진숙 이현옥 이효숙 이효진 이희경
 임서연 임영신 임은경 임인선 임종윤 임효진 장기홍 장돈경 장병천 장윤희 장재민 장진호
 장하림 장현미 장현선 장희운 전성옥 전송희 전옥미 전홍주 정금분 정나현 정연희 정영숙
 정운재 정원미 정유진 정종한 정지희 조경수 조명민 조선기 조성희 조세종 조영국 조종만
 조혜연 조회중 주영배 주웅식 채유희 최기수 최미나 최소영 최수이 최순례 최승남 최윤정
 최은남 최채옥 최혜경 추경미 한선희 한영수 한혜진 허기명 허애령 허 연 허영란 홍미옥
 홍완기 홍윤경 홍은영 홍재희 홍종순 홍춘기 황근하 황선희 황신애 황 용 황정인 황정현
 (총 263명)

4) 일반기부금 납부실적

개인(56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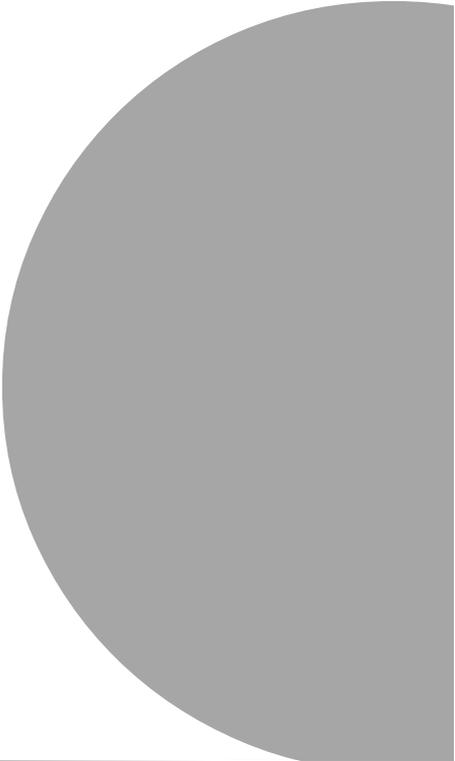
강한필 강혜진 고혜신 국현정 김병조 김선옥 김영민 김옥순 김운영 김은선 김종민 김찬옥
 김춘식 김현나 김현조 김혜원 나기성 나준식 남기은 남은순 남하영 노미정 박병철 박윤민
 박정숙 박혜란 박호연 서광민 서동원 서정주 서 희 석희옥 송지혜 심재완 양혜정 원유희
 유명덕 이광철 이규영 이명희 이미순 이영태 이용남 이우림 이주현 이효숙 인두석 임은경
 장하림 장현미 정상모 정성민 허애령 홍주리 홍현채 황신애

단체(10곳)

녹색병원 대전이주민센터 번영부동산 사단법인토닥토닥 신한은행(엑스포타워금융센터)
 안선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우정메디칼 조인케어매니저협동조합 (유)행복한밥상
 협동조합마음정원영성센터

5) 민들레상 시상

부 문	수 상 자	수 상 이 유
단체	민들레꽃 나눔반	민들레꽃 나눔반은 평소 서로를 살피고 나누며 건강반 활동으로 건강증진에 힘쓰고, 민들레주간보호센터 건립에 증자와 봉사로 참여하며 민들레 사랑을 마음과 실천으로 보여 주셔서 이상을 드립니다.
	건강해서남주나 건강반	건강해서남주나 건강반은 조합원 가입과 홍보로 민들레를 알리는 적극적인 활동과 건강리더 수료, 반찬나눔 봉사 및 건강마을 축제, 대의원 등 각종 조합 활동을 열심히 하셔서 이 상을 드립니다.
	경영지원실	경영지원실 총무회계팀은 눈썹을 휘날리며 조합 구석구석을 살뜰히 살피고 재고관리 시스템화, 회계업무절차 체계화로 비용을 절감하며 특히 민들레주간 보호센터 준비 과정과 개소까지 그 노력이 남달라 이 상을 드립니다.
개인	주웅식	주웅식 조합원은 민들레 대한 뜨거운 청년의 열정으로 주간보호센터 건립 조합원추진위원장으로 활동하시며 지역 경로당과 주민들에게 센터를 홍보 하는 등 모범을 보이며 조합원 참여를 이끌어 주심에 이 상을 드립니다.
	김성욱	김성욱 조합원은 민들레주간보호센터 건립 조합원추진위원으로 활동하며 센터 홍보에 앞장서 주민들에게 전단을 돌리고 홍보 영상에 딸역으로 열연하는 등 봉사로 조합을 빛내 주셔서 이 상을 드립니다.
	전성욱	전성욱 조합원은 대의원자치운영위 등 조합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건강리더협동조합 창업과 건강리더 일자리 연결 및 돌봄에 앞장서며 만성질환 건강반 운영으로 어르신들의 건강증진에 힘써 이상을 드립니다.
공로	홍은영	홍은영 조합원은 2019년 8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대덕구공동체 지원센터 센터장으로 공동체와 주민들의 자치력 향상을 위해 노력해 온 그간의 공로에 대한 고마운 마음으로 이 상을 드립니다.



민들레의료복지 사회적협동조합

1. 경과보고
 2. 전차 의사록
-

1. 통합24차 정기총회(대의원총회) 경과보고

2022.10.25	[이사회] 1) 9기 대의원 선거구 및 정수 확정 ○ 선거구: 소비자조합원, 자원봉사조합원, 후원자조합원, 직원조합원 ○ 정 수 - 소비자: 50명, 자원봉사자: 25명, 후원자: 10명, 직원 25명
2022.11.30	[선거관리위원회] 1) 9기 대의원 선거공고
2022.12.05	[선거관리위원회] 1) 9기 대의원 후보자등록기간(~12/11)
2022.12.12	[선거관리위원회] 1) 9기 대의원 후보자 자격심사 및 확정(~12/13)
2022.12.14	[선거관리위원회] 1) 9기 대의원 선거공보
2022.12.22	[선거관리위원회] 1) 9기 대의원 당선공고(총 110명 당선)
2022.12.27	[이사회] 1) 2023년 총회준비위원회 구성 승인
2023.01.09	[총회준비위원회 1차 회의] 1) 구성원: 송직근(위원장)외 9인 2) 안건 ○ 총회개최일 논의, 일정논의
2023.01.19	[총회준비위원회 2차 회의] 1) 안건 ○ 22년도 부서별 사업평가 및 23년도 사업계획 검토 ○ 포상 관련 논의
2023.02.02	[총회준비위원회 3차 회의] 1) 안건 ○ 사업기조 논의 ○ 조합원 / 직원 포상 관련 논의
2022.02.15	[총회준비위원회 4차 회의] 1) 안건 ○ 23년 부서별 사업계획 검토 ○ 23년 총회 상정의안 확정 [이사회] 1) 총회개최일 승인 ○ 일시: 2023년 02월 25일(토) 14:00 ○ 장소: 대전 대덕구 중리서로 83, 5층 조합원활동공간 2) 상정의안 승인

2. 전차 대의원총회 의사록

의사록은 아래와 같이 작성하여 서명날인의 확인을 마쳤습니다.
자료집의 가독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대체합니다.

원본대조필 : 의장 나준식, 의장 석연희

민들레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통합23차 정기총회(대의원총회) 의사록

1. 회 의 명 : 민들레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통합23차 정기총회(제18차 대의원총회)
2. 공고일시 : 2022년 2월 18일(금)
3. 개최일시 : 2022년 2월 26일(토) 오후 2시 ~ 오후 3시 5분
4. 개최장소 : 대전 대덕구 계족로 663번길 26(법동) 1층 민들레의원, 3층 회의실
대전 대덕구 계족로 663번길 22(법동) 2층 민들레건강검진센터
5. 정기총회 의장 : 나준식 이사장, 석연희 이사장

가. 성원 확인

의장이 기획재정부 협동조합과-108호 공문에 따라 임원선출 안이 있어 대면으로 총회를 개최하며, 방역수칙에 맞춰 분산해 의결하는 형태로 개최 가능하여 3곳으로 분산하여 진행한다고 설명하다. 의장이 성원보고를 요청하여 이자우 조합사업부장이 총원 102명 중, 참석 54명임을 보고하다. 이에 의장은 정관에 의거하여 대의원 과반이상 참석으로 본 회의가 정식으로 진행될 수 있음을 선포하다.

나. 개회선언

성원을 확인한 의장이 오후 2시 8분에 대의원총회 개회를 선언하다.

다. 의사록 서기 및 서명날인인 선임

의장이 참석 조합원의 추천을 받아 서기로는 남은순, 임영신 조합원을, 서명날인인으로 윤미경, 이자우, 전성욱 대의원을 선임하고, 참석 대의원에게 승인을 요청하다. 다수의 대의원들의 동의와 재청을 통해 서기와 서명날인인을 선임하다.

라. 경과보고

의장이 정관, 규약, 규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총회가 성사되기까지의 경과를 주문하다. 이에 정운재 총회준비위원회 위원장이 2021년 11월 이사회 승인으로 총회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총 4회차 회의를 진행한 경과를 보고하고, 의장이 오늘의 이 회의가 절차적으로 합당하게 개최됨을 선포하다.

마. 전차의사록 승인

의장이 지난 통합22차 정기총회 의사록을 승인해야 함을 설명하고 전차 의사록 낭독을 요청한다. 오민우 대의원이 낭독대신 자료집 24~32쪽 전자회의록 서면자료로 대체하자는 의견을 제시, 의장이 참석대의원의 의견을 묻고 이의없음을 확인하고, 원안대로 전차회의록을 승인한다.

바. 의사일정확정

의장이 공고와 자료집 33쪽에 상정된 의안 순서에 대한 처리 순서와 이외에 추가안건이 있는지 참석 대의원에게 확인한다. 원안대로 총회 의사일정을 다수의 대의원이 동의하고 재청한다. 의장이 다른 의견이 없는지 다시 확인하고 의사일정을 원안대로 확정한다.

사. 상정의안 심의

1) 제1호 의안 : 2021년 종합감사보고 승인의 건

조세종 감사가 자료집 35~39쪽을 참고하여 감사보고를 하다. 사업부문 감사에서는 코로나19와 함께 어려운 시기 속에서도 주치의료에 기반한 일차의료센터와 지역사회의료센터는 지역사회에 민들레의 사명을 구체적으로 잘 제시하면서 주민들로부터 많은 호응과 지지를 이끌어 내었음을 보고하다.

회계부분 감사에서는 2021년 경영성과로 예상치 못한 재해 중에 당기순이익 330,007,861원을 기록하며, 기타의견을 보고하다. 이현소 대의원의 동의와 참석대의원 다수의 재청에 따라 의장이 감사보고서를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하다.

2) 제2호 의안 : 2021년 탈퇴조합원에 대한 출자금 환급 승인의 건

의장이 자료집 41쪽~43쪽을 참고하여 설명하다. 의장이 참석대의원들의 의견을 묻고 이의 없음을 확인하며, 이현소 대의원의 동의 및 참석대의원 다수의 재청에 따라 2021년 탈퇴조합원 93명의 10,335,950원 환급이 승인되었음을 선포하다.

3) 제3호 의안 : 2021년 사업예산 변경 사후 승인의 건

의장이 2021년 사업예산 변경 사후 승인 사항을 자료집 45~49쪽을 보며 설명하다.

이현소 대의원의 동의 및 참석대의원의 이의 없음을 확인 후 2021년 사업예산 변경 사후 승인의 건이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하다.

4) 제4호 의안 : 2021년 사업보고 및 결산보고(안) 승인의 건

의장이 2021년 사업보고(안)을 이자우 조합사업부장, 결산보고(안)을 정운재 경영지원실장에게 요청하다. 윤미경 대의원이 사업 보고는 서면 자료로 대신할 것을 요청하다. 의장이 참석대의원에게 사업 보고를 서면 자료로 대신하는 것에 이의 없음을 확인하며, 결산보고만 경영지원실장에게 요청하는 것에 대해 묻고, 참석대의원의 동의를 얻다.

정운재 경영지원실장이 결산보고를 자료집 81쪽~92쪽을 토대로 설명하다.

결산 손익 330,007,861원으로 연속 흑자를 달성했으며 결손금이 5억원 아래로 내려갔음을 보고하다. 의장이 2021년 사업보고 및 결산보고(안)이 이현소 대의원의 동의 및 참석대의원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하다.

5) 제5호 의안 : 2021년 잉여금 처분(안) 승인의 건

의장이 자료집 111쪽~113쪽을 참고하여 설명하다. 2021년 당기 순이익 330,007,861원이 발생하였고, 발생한 잉여금은 정관에 따라 누적 손실금 785,267,821원에 보전할 것을 설명하다. 본 의안에 대해 조합의 대출금 상환에 대한 의견에 법 및 정관상 누적손실금으로 해야함을 설명하고, 참석대의원의 이의 없음을 확인하고, 2021년 당기 순이익 330,007,861원은 기존의 손실금 785,267,821원에 보전하는 것으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하다.

6) 제6호 의안 : 임원(이사, 감사) 선출의 건

의장이 임원(이사, 감사) 선출을 위하여 조세종 선거관리위원장에게 의장직을 위임하고, 의사 진행을 요청하다. 선거관리위원장이 자료집 115~121쪽을 참고하여 선거를 진행하기까지의 경과보고 및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공고하고 입후보하였음을 설명하다.

선거관리위원장이 임원 정족수 이사 13명, 감사 2명에 대하여 정족수에 대로 입후보되었음을 설명하고, 임원 후보자들은 앞으로 나와 자기소개를 요청하며,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한 이사 후보자들은 자료로 대체하다.

선거관리위원장이 다시 정족수에 맞게 입후보되었음을 안내하며 선거관리규정에 따라 임원정수와 입후보자가 같아 총회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당선인을 정할 수 있다고 설명하다.

송민호 대의원이 임원정수와 후보자가 같으니 등록된 후보를 선출할 것을 제안하다. 선거관리위원장이 참석대의원 다수의 재청과 전원 이의 없음을 확인 후, 임원 입후보자 전원 선출되었음을 선포하다.

선거관리위원장이 선출된 이사 중 호선으로 이사장을 선출됨을 설명하고, 이를 위해 정회를 선언하다. 임시 이사회 결과를 받은 선거관리위원장이 총회 속개를 선언하고 석연희 이사가 이사장으로 호선되어 당선되었음을 선포하다. 위원장이 참석대의원의 이의 없음을 확인하고, 당선된 석연희 이사장에게 의장을 위임하다.

<임원 선출 결과>

구 분	인원수	당 선 인
이사장	1인	석 연 희
이사	12명	김동중, 김찬옥, 노병일, 박명화, 박혜란, 봉미경, 송직근, 신경희, 이경민, 이자우, 정운재, 허애령
감사	2명	김정호, 박봉희
계		15명

7) 제7호 의안 : 2022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의 건

의장이 자료집 123쪽~154쪽 내용에 대하여 2022년도 사업기조 및 중점 사업 계획 설명을 이자우 조합사업부장에게 요청하다. 민들레형 동네돌봄을 확장하는 해로 건강반의 관계의 힘을 중심에 두고 건강증진과 예방활동을 통한 건강자치력강화, 조합원 참여 영양주치의사업, 재택 의료를 통해 조합원 참여 통로 확장과 조합원이 중심이 되어 나이가 들어서도 관계와 네트워크 체계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사업기조를 설명하다. 이현소 대의원이 서면으로 자료집으

로 대신하는 의견을 제시하다.

의장이 2022년도 예산안 설명을 정운재 경영지원실장에게 요청하다. 총 수지예산은 6,000만원 흑자 편성을 했고, 주야간보호센터는 총회 의결 후 별도 예산편성 계획을 설명하다.

이현소 대의원이 동의한 후 오민우 대의원이 제청하다. 의장이 참석대의원의 이의 없음을 확인하고 2022년도 사업계획안 및 예산안이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하다.

8) 제8호 의안 : 차입금 한도 승인의 건

의장이 자료집 155쪽의 차입금 한도를 20억원 이내로 하는 안건 설명을 정운재 경영지원실장에게 요청하다. 경영지원실장이 매년 차입금을 줄이고 있지만, 올해 주야간보호센터 설립을 고려하여 작년과 같게 20억원 이내로 하는 것에 대하여 설명하며, 조합원님들의 출자금증자를 요청하다. 이현소 대의원의 동의와 의장이 참석대의원의 이의 없음을 확인 후 2022년도 차입금 최고 한도를 현재의 차입금 1,374,746,106원을 포함한 총 합계액 기준 20억원 이내로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하다.

11) 특별 결의 : 주(야)간보호센터 설립 특별 결의

의장이 추진위원장인 주웅식 대의원의 진행사항 설명을 요청하다. 주야간보호센터 건립에 조합원님들의 참여와 증자, 후원 활동의 특별결의를 요청하다.

아. 폐회선언

의장이 이외의 여타 의안이 있는지를 대의원에게 묻고, 없음을 확인하여 오후 3시 5분에 민들레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통합23차 정기총회 폐회를 선언하다.

자. 의사록 서명 날인

위 결의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민들레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통합23차 정기총회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서명날인인을 포함하여, 절차와 과정에 대하여 감사를 포함한 전원이 기명날인하다.

차. 참석 대의원 명단(54명)

강경숙	국현정	김계숙	김동중	김문경	김연준	김영순	김옥순
김준형	김창근	김창원	김현나	김혜원	나준식	박미리	박미양
박미자	박병철	박정희	박종례	박지숙	박지훈	박현주	봉미경
석연희	송민호	신연순	양영미	여인표	오민우	유난형	유병규
유승화	유인수	윤미경	윤자윤	이경민	이기업	이선아	이은영
이은주	이자우	이지명	이현소	임영신	장현미	전성옥	정운재
정춘택	조세종	조영숙	주웅식	최수이	최윤나		

이상 54명

2022. 02. 26.

민들레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인감)

윤 미 경 (인감)

서명
날인인

이 자 우 (인감)

의 장 나 준 식 (인감)

전 성 옥 (인감)

의 장 석 연 희 (인감)

민들레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민들레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은 법무부 고시 제2015-0358호(2015.12.22. 340. 민들레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에 따른 의사록 공증 제외대상 법인임.

통합24차 정기총회(제19차 대의원총회) 상정의안

제1호 의안	2022년 종합감사보고 승인의 건
제2호 의안	2022년 탈퇴조합원에 대한 출자금 환급 승인의 건
제3호 의안	2022년 사업예산 변경 사후 승인의 건
제4호 의안	2022년 사업보고 및 결산보고(안) 승인의 건
제5호 의안	2022년 잉여금 처분(안) 승인의 건
제6호 의안	2023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의 건
제7호 의안	차입금 한도 승인의 건
기타	

제1호 의안 2022년 종합감사보고 승인의 건

- 의결주문: 2022년도 종합감사보고서를 승인하여 주십시오.
- 관계조항: 정관 제33조 제6호, 제53조 제1항

※ 제33조(총회의 의결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6. 감사보고서의 승인

※ 제53조(감사의 직무)

①감사는 연2회 이상 조합의 업무진행 상황, 재산상태, 장부 및 서류 등을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반기별 감사보고서는 이사회에, 반기별 감사보고서를 종합한 종합감사보고서는 정기총회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 2022년 종합감사보고서

감사는 정관 제53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2022년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합니다.

- 아 래 -

1. 감사 일시

- 회계부문 : 2023년 08월 23일 (상반기)
2023년 02월 17일 (2022년 상·하반기 종합)
- 사업부문 : 2022년 08월 26일 (상반기)
2023년 02월 07일 (2022년 상·하반기 종합)

2. 감사 범위 : 2021년 1월 1일부터 동년 12월 31일까지의 사업, 회계 부문

3. 감사 결과 보고

1) 회계 부문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

민들레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조합원 및 이사장 귀하

2023년 02월 17일

본 감사인은 민들레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의 2022년 12월 31일자 현재의 재무상태표와 동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등 재무제표를 감사하였습니다. 이 재무제표를 작성할 책임은 민들레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경영자에게 있으며 본 감사인의 책임은 동 재무제표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이를 근거로 이 재무제표에 대하여 의견을 표명하는데 있습니다.

본 감사인은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 기준은 본 감사인이 재무제표가 중요하게 왜곡 표시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합리적으로 확신하도록 감사를 계획하고 실시할 것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재무제표상의 금액과 공시내용의 근거가 되는 증거를 시상의 방법을 적용하여 검증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는 재무제표의 전반적인 표시내용에 대한 평가뿐만 아니라 재무제표 작성을 위해 경영자가 적용한 회계원칙과 유의적 회계추정에 대한 평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본 감사인이 실시한 감사가 감사의견 표명을 위한 합리적인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고 본 감사인은 믿습니다.

본 감사인의 감사결과 민들레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의 재무제표가 “대한민국의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적정하게 작성되었습니다.

귀 민들레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의 2022년 경영성과는 코로나19 등의 재해 중에 당기순이익 198,248,294 원을 기록하였습니다.

이외에 기타의견으로 보고드릴 사항으로는

1. 장기선급금의 회수 권고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회수 불가능시 대손처리 권고
2. 장기 미수수익의 대손처리 권고가 있습니다.

코로나 19 및 금리인상 등에 따른 경기 침체속에서도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하며 수고하시는 조합원 및 경영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민들레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감사 김 정 호 (인)



2) 사업 부문

2023년 감사 보고서

- 감사일 : 2023년 2월 7일
- 장 소 : 민들레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교육실
- 감사기간 : 2022년 1월~12월
- 감사범위 : 2022년 1월~12월 사업
- 감사자 : 박봉희
- 참석자 : 이자우 (조합사업부) / 이연서, 백종범 (경영지원실)
- 감사근거 : 정관 제 53조에 의함

사업부문

2022년은 민들레의료사협 창립 20주년을 맞이하는 해였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우리 사회가 돌봄에 얼마나 취약한지 여실히 드러났고, 서로 돌보는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이 분명해졌습니다. 민들레의료사협 20주년을 맞이하여 ‘주치의가 있는 주간보호센터’ 설립 목표로 세우고, 조합원 증가와 기부(조합원 280여명 참여, 3억원) 참여로 12월 개소하는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조합원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민들레꽃나눔반 증자기부 등 주간보호센터를 만들어가는 조합원 의견수렴 참여 구조를 만든 점이 돋보입니다. 이로 인한 조합원 증가와 출자금 증대 등 5대 지표 달성으로 이어졌고, 지역사회의료센터 활약으로 대전에서 유일한 재택의료센터 기관으로 지정받은 성과도 이뤄냈습니다.

이러한 사업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균형적 성장을 위해 몇 가지 보완과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1. 역사는 미래학입니다. 민들레 20주년의 성과와 한계를 지금 시점에 정리하는 것은 차세대와 먼 미래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전략팀을 구성하여 민들레의료사협의 지나온 20년 역사를 기록하고 이후 새로운 10년을 준비하기 위한 전략을 이사회에서 점검해주시기 바랍니다.

2. 통합돌봄 사업본부는 성공적인 주간보호센터 설립에 이어 안정적인 운영

을 위한 제반 구조를 치밀하게 점검하여 준비하시기를 권고합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이 일상적으로 점검되기 위한 정기 회의 구조와 더불어 주간 보호센터 대상자 확대와 돌봄의 질 관리(예, 안산 꿈꾸는 집요양원 대상자 가족 위원회 구성)를 위한 조합원 자원 활동(대의원, 건강리더)과 연계방안도 검토해 보실 것을 제안합니다.

3.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조직구조와 단계별 자기성장계획이 있어야 합니다. 코로나 상황이라는 비상 시국의 한계가 있었으나, 직원과 대의원, 임원의 교육과정이 사업전반에 있어 빠져 있습니다. 2023년에는 이에 대한 세부적인 교육 계획이 필요합니다.

4. ‘민들레 기본조직 경험을 토대로 이사를 선출한다’ 대의원, 위원회, 건강반 참여를 통해 민들레 조직 경험을 한 사람이 민들레 이사가 되도록 하는 구조와 절차를 (외부 전문이사는 예외규정) 정비하여 미래 리더를 준비하는 세부전략이 필요해보입니다. 조합사업의 큰 방향을 잡고 거시적 전략을 세울 수 있도록 총괄 사업의 책임자 선임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5. 스스로 조합비 제도는 민들레조합원의 건강자치력 향상을 위한 좋은 시스템이고, 일정정도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그동안 양성해온 건강 리더의 재조직화가 필요해보이며, 의료사협연합회 차원에서 진행되는 노인건강돌봄지도사 민간자격과 사회서비스형 시니어 일자리 사업과 연계 방안 또한 적극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민들레의료사협 통합돌봄 시스템의 한 축으로 이러한 자원준비가 틈새 돌봄의 역할을 수행하며 초 고령사회 대비 커뮤니티 케어 시스템을 완성해갈 것입니다.

조합 전체를 총괄하는 실무책임자가 공식인 상황에서도 주간보호센터 개소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점검하는 이사회와 일선에서 최선을 다하는 직원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2023. 2. 15

감 사

박 봉 희

(인감)



제2호 의안 2022년 탈퇴조합원에 대한 출자금 환급 승인의 건

- 의결주문: 2022년도 탈퇴 조합원 83명의 출자금 15,266,000원 환급을 승인하여 주십시오.
- 관계조항: 정관 제16조 제1항 제4항, 제33조 제9호, 제35조 제4호

※ 제16조(탈퇴·제명조합원의 출자금 환급청구권) ① 조합을 탈퇴하거나 조합으로부터 제명된 조합원은 출자금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환급은 탈퇴하거나 제명된 당시의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의 총회 승인에 따라 반환한다.

※ 제33조(총회의 의결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9. 탈퇴조합원(제명된 조합원을 포함한다)에 대한 출자금 환급

※ 제35조(합병·분할 및 해산 등의 의결)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탈퇴조합원(제명된 조합원을 포함한다)에 대한 출자금 환급

1. 2022년도 탈퇴 신청 조합원 현황

(단위 : 원)

조합원 명	환급출자금	조합원 명	환급출자금	조합원 명	환급출자금
강■철	50,000	강■운	52,500	강■서	50,000
김■희	50,000	김■희	261,000	김■남	150,000
김■해	50,000	김■아	50,000	김■희	50,000
김■산	50,000	김■실	250,000	김■주	100,000
김■경	80,000	김■균	200,000	김■순	50,000
김■기	50,000	김■호	50,000	김■희	60,000
김■인	150,000	김■홍	60,000	김■자	60,000
김■수	50,000	나■숙	100,000	박■화	100,000
박■미	70,000	박■임	50,000	박■인	575,000
박■용	50,000	박■혜	50,000	박■숙	50,000
박■옥	50,000	박■숙	100,000	배■억	1,300,000
백■상	820,000	변■명	772,500	변■현	50,000
서■철	320,000	서■희	74,500	서■주	50,000
성■숙	54,000	성■경	120,000	손■순	50,000
송■덕	50,000	송■경	50,000	송■규	50,000
송■경	50,000	안■돌	100,000	안■은	100,000
안■혜	100,000	엄■애	139,500	오■숙	1,420,000
오■순	75,000	오■연	95,000	유■숙	77,500
유 ■	50,000	유■영	91,000	윤■국	70,000
이■희	50,000	이■자	50,000	이■자	50,000
이■배	50,000	이■모	50,000	이■영	50,000
이■주	50,000	이■슬	50,000	이■연	50,000
이■호	50,000	이■순	3,785,000	임■순	51,500
임■연	50,000	정■연	60,000	장■희	150,000
정■희	110,000	정■선	50,000	조■연	515,000
진■희	1,000,000	차■수	50,000	최■호	100,000
최■희	100,000	한■숙	50,000	허■훈	250,000
홍■의	78,000	황■희	50,000		
총 83명					15,266,000

제3호 의안 2022년 사업예산 변경 사후 승인의 건

- 의결주문: 2022년에 이사회 승인을 득한 변경된 사업예산을 승인해 주십시오.
- 관계조항: 정관 제63조 제3항

※ 제63조(사업계획과 수지예산)

③ 이사회가 총회에서 확정된 사업계획과 예산을 변경한 때에는 차기 총회에서 사후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1. 2022년 사업예산 전용/변경 이사회 승인 내역

1) 요약

- 2022년도 총회에서 승인된 사업(자산)예산을 적시된 사유로 일부 변경하여 집행하였고,
- 이사회 승인 후 정관 제63조 제3항에 따라 자산 취득 변경 건을 총회에 사후 승인 요청함.

2) 총회 승인 예산 변경 현황

구분	최초 승인 예산	원안 집행	미수립 예산 집행(전용)	미집행	계
건수	4	1	29	3	33
금액 (원)	45,000,000	1,302,600	1,058,869,707	-	1,060,172,307

3) 예산 변경 세부내역

(단위: 원)

구분	기 관	품 명	'22 수립 예산	취득일	집행 결과	이사회 승인일	사 유
토지	주간 보호	주간보호센터(럭키스포츠) 토지 매입		'22.05.27	131,111,522	'22.06.27	
	토지 소계				131,111,522		
건물	주간 보호	주간보호센터(럭키스포츠) 건물 매입		'22.05.27	384,055,215	'22.06.27	
	건물 소계				384,055,215		
의료기기	의원	원심분리기		'22.05.04	385,000		
	치과	파노라마 (전산화 단층촬영장치)		'22.09.30	27,000,000	'22.09.27	
		진료실 체어 3대		'22.10.05	20,790,000	'22.09.27	
	의료기기 소계				48,175,000		
시설장치	치과	파우더룸 리모델링		'22.10.24	1,045,000	'22.11.29	
	주간 보호	주방설치		'22.12.25	5,940,000	'22.12.27	
		실내사인물		'22.12.30	5,830,000	'23.01.31	
	참선	럭키스포츠센터 5층 칸막이 및 전기공사		'22.11.18	10,780,000	'22.12.27	
	경영 지원	주간보호센터 인테리어 설계		'22.12.31	11,880,000	'22.06.27	
	실	주간보호센터 리모델링		'22.12.01	350,000,000	'22.06.27	

구분	기관	품명	'22 수립 예산	취득일	집행 결과	이사회 승인일	사유	
		주간보호센터 케이블포설 및 계량기설치		'22.10.06	9,873,600	'22.12.27		
		주간보호센터 정보통신 설치		'22.10.17	6,270,000	'22.12.27		
		주간보호센터 도시가스 시공		'22.10.31	2,200,000	'22.12.27		
				'22.11.02	6,578,000	'22.12.27		
시설장치 소계					410,396,600			
비품	참선	의자 30개		'22.06.16	1,782,000	'22.12.27		
		바닥매트		'22.11.28	2,475,000	'22.12.27		
		냉난방기(스탠드1,벽걸이3)		'22.11.30	4,455,600	'22.12.27		
		책장,온풍기,냉장고		'22.12.26	1,366,030	'22.12.27		
	주간 보호	알렉시아 근력운동기구 12대		'22.12.25	20,550,000	'22.12.27		
		원적외선 편백사우나		'22.12.25	8,635,000	'22.12.27		
		후레쉬덴트(틀니살균세척기)		'22.12.25	3,278,000	'23.01.31		
		S-풀링 15대		'22.12.25	20,000,000	'22.12.27		
		사무용가구		'22.12.25	2,200,000	'22.12.27		
		활동 테이블, 의자		'22.12.25	7,997,000	'22.12.27		
		주방 집기		'22.12.25	4,912,820	'22.12.27		
	경영 지원 실	주간보호센터 가전, 노래방기계		'22.11.30	1,509,490	'22.12.27		
		주간보호센터 세탁기, 건조기		'22.11.30	1,855,940	'22.12.27		
		주간보호센터 컴퓨터일체		'22.12.01	2,014,490	'22.12.27		
		네트워크서버장비	2,000,000	'22.12.13	1,302,600	'23.01.31	원안 집행	
		주간보호센터 두타매트		'22.12.20	2,100,000	'22.12.27		
	비품 소계			2,000,000		86,433,970		
	소프트 웨어	경영 지원 실	회계/재고관리 프로그램	8,000,000				미집행
			조합원관리 프로그램	20,000,000				미집행
			POS 업그레이드	15,000,000				미집행
소프트웨어 소계			43,000,000					
총 계			45,000,000		1,060,172,307			

제4호 의안 2022년 사업보고 및 결산(안) 승인의 건

- 의결주문: 2022년 사업보고 및 결산(안)을 승인하여 주십시오.
- 관계조항: 정관 제33조 제5호

※ 제33조(총회의 의결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5. 대차대조표, 수지계산서, 결산보고서의 승인과 잉여금의 처분 및 손실금의 처리

1. 사업 보고 총평

2022년은 조합 창립 20주년의 뜻깊은 해입니다.

20주년을 맞이하는 조합 사업의 기초는 민들레형 동네돌봄을 확장하는 해로 민들레 통합돌봄은 1)건강반의 관계의 힘을 중심에 두고 건강증진과 예방활동을 통한 건강자치력 강화 2)조합원 참여 요양주치의 사업 3)재택의료를 통해 조합원 참여 통로 확장과 조합원이 중심이 되어 나이가 들어서도 관계와 네트워크 체계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일관된 방향으로 사업을 진행한 결과 많은 성과들이 있었습니다.

조합원 증가와 출자금 증대 등 5대 지표의 무난한 달성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스스로조합비 조합원의 감소는 현 경기 어려움을 반영하는 듯 많이 중단되어 어려울 때일수록 도움이 필요한 곳에 적절히 쓰일 수 있도록 조합원들의 참여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스스로 만들고 운영하며 건강증진과 예방을 위한 대표적인 조합원 활동 건강반과 건강리더교육은 문의와 관심이 많아 앞으로도 참여가 확장될 것으로 보입니다.

통합돌봄본부를 선두로 의료·건강·돌봄의 영역이 유기적으로 연결, 조합원의 가족 돌봄·건강 관리가 어려울 때 가정을 방문하여 지속적으로 포괄 관리를 해드린 요양주치의사업은 새로운 시도로 고령화 시대 조합원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적절하게 제공하였습니다.

일차의료센터와 협력한 팀기반 방문의료의 수요는 계속 증가하여 지역사회에 수준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며 통합돌봄의 주요한 영역으로 자리잡고 매출 또한 날로 신장되고 있습니다. 하반기 장기요양재택의료센터 기관 지정은 그동안 활동의 성과이며 고령화로 인한 요구와 필요의 통합돌봄이 조합원과 지역에 꼭 필요한 과업임을 말해줍니다. 만성질환 관리 외 다양한 측면 지원과 지지로 지역사회 장애인들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하는 장애인주치의 사업은 장애인들의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2년은 그동안 동네돌봄 실현을 위하여 준비해온 경험과 성과를 기반으로 20주년 맞이 주치의가 있는 '주간보호센터'를 조합원들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3억원의 출자와 기부로 12월 개소하고 현재 어르신들을 잘 살피 드리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 조합원추진위원회와 민들레꽃나눔반은 증자·기부, 봉사활동으로 조합원들의 큰 애정의 깊이를 눈부시게 보여주었습니다.

이 모든 일에 조합원과 임·직원 여러분들의 정성과 손길이 함께 해주셔서 가능하였습니다. 깊이 감사드립니다.

2. 재정보고 총평

위에 서술한 민들레창립 20주년을 맞이하여 주간보호센터 개설을 준비하면서 3월부터 6월까지 조합원들의 십시일반으로 3억원여라는 큰 출자금을 모았고, 목표했던 증감계 3천만원의 11배에 달하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주간보호센터 설립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원자재 가격상승 및 공사 지연, 변수상황으로 예상지출 대비 약 3억원 비용이 상승하였습니다.

의료기관 운영이 있어서 한의원의 경우, 신임 원장부임(2022.07.01.)으로 하반기에는 전년대비 환자수 증가 및 경비 절감 등으로 경영이 안정화 되었습니다. 검진센터의 경우 수검자 증가 대비 목표매출에 미치지 못하여 부진한 원인과 대책을 찾아 보완이 요구된다

가결산 예상으로 손익 자산 보유 현황이 약 1억 7천만원으로 수지는 양호해 보이지만 현금보유 자산은 건축재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신사업 주간보호센터의 운영 안정화에 따라 재정 안정화도 빠르게 회복될 전망으로 모든 조합원들과 임직원들의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

Ⅱ 사업 실적

1. 설립이념 따른 2022년도 사업 실적

설 립 이 념

1. 지역사회 주민이 참여하는 **협동조합**으로서 생명과 평화, **공동체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한다.
2. 환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치료과정에 함께 참여하며 인권을 존중하는 **의료, 복지, 노인건강사업**을 펼쳐나간다.
3. 자신과 가정, 직장, 마을에서 좋은 생활습관과 환경을 만들어 **질병을 사전에 예방**하는 **보건의료**를 실천한다.
4. 주민의 자치와 참여, 협동을 통해 지역의 마을마다 **건강한 생활공동체**를 만들어간다.

1) 지역사회 주민이 참여하는 **협동조합**으로서 생명과 평화, **공동체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한다.

- 조합의 존립과 지속 발전
 - 조합원 수 : 4,402세대
 - 출자 금액 : 1,510,182,095원
- 협동조합으로 운영
 - 총회(대의원) : 매년 개최
 - 이사회 : 매월 개최(정기이사회 12회 개최)
- 건강 자치력 향상 및 동네돌봄 활동
 - 건강반 활동, 건강리더 교육 및 취약계층 돌봄 활동
- 스스로조합비(기부금) 모금을 통한 재분배
 -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 건강반 활동비 지원 등
- 연대활동 참여
 - 여타 단체(여성장애인연대, 발달장애인부모연대, 대전충남보건의료연대회의, 사회적의료기관 연합회, 대전시민건강포럼, 노인장애인보조기기개발을 위한 열린플랫폼,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리빙랩 네트워크) 및 협동조합 등에 출자, 회비 납부, 운영 참여 등

2) 환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치료과정에 함께 참여하며 인권을 존중하는 의료, 복지, 노인건강사업을 펼쳐나간다.

- 환자권리장전을 준수하는 의료기관 운영
 - 의원, 한의원, 치과의원, 검진센터 등
-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
- 찾아가는 보건의료서비스 지역사회의료센터 운영
 - 방문진료, 가정간호, 방문간호, 방문작업치료 및 지역사회재활서비스 제공
- 취약계층 의료 접근성 개선
 - 장애인주치의사업, 방문진료시범사업(의사,한의사), 가정간호사업, 만성질환관리사업, 등
- 동네돌봄 사업 전개
 - 퇴원환자 통합돌봄사업(재가서비스, 방문의료, 영양, 심리지원, 일시보호 등)
 - 경증치매어르신 헬스케어서비스 사업(ICT활용 건강관리, 일상생활교육, 영양지원 등)
 - 재가의료시범사업(의료수급자가 장기입원시 퇴원 후 지역사회정착 지원)
 - 대덕구 동네돌봄 시스템 및 체계 구축(협의회 및 실행단 참여)
- 조합원 및 지역사회 건강 및 돌봄 상담
 - 돌봄상담창구 운영
 - 요양주치의사업 운영(조합원의 포괄적 건강관리)
 - 민들레꽃나눔반 운영(조합원 어르신들의 서로돌봄 활동)
- 사회적경제 활성화
 - 산업통상자원부 사회적경제혁신성장사업(사회적경제기업 사회서비스개발지원)

3) 자신과 가정, 직장, 마을에서 좋은 생활습관과 환경을 만들어 질병을 사전에 예방하는 보건의료를 실천한다.

- 건강자치력 향상 활동
 - 건강반 활동 지원 및 건강리더 교육
 - 건강화폐 운영 : 조각통장 발행 및 조각 지급
- 맞춤형 건강교육
 - 장애인 체력측정 및 운동교육 진행(장애인체육회와 협력)
- 국가건강검진과 연계한 질병의 조기발견 및 치료
 - 의사소통이 어려운 청각, 언어, 시각, 지적, 발달장애인의 건강검진 및 치과 진료 실시
 - 거동이 불편한 중증장애인의 건강검진 지원(신체적 보조 또는 타 기관 정보 제공)
 - 돌봄종사자 및 보호자를 위한 건강검진 안내
- 지역사회연계 보건예방활동
 - 금연상담(대전·세종금연지원센터 협력), 행복상담소 건강상담
 - 장애인건강반 (건강의 달인, 체육의 달인)
- 취약계층 건강반 운영
 - 노인 및 장애인을 대상으로 체력증진 건강반 운영
 - 조각지급 및 건강수첩 작성

4) 주민의 자치와 참여, 협동을 통해 지역의 마을마다 **건강한 생활공동체**를 만들어간다.

- 주민 자치, 협동을 위한 민관협치 참여
 - 법1동 주민자치회(안전환경분과, 자치교육분과)
 - 대덕구 지역사회통합돌봄 협의회, 실행단 참여
 - 대전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 공동체분과 참여(최중증발달장애인 예산 등)
 - 대덕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장애인분과, 건강 및 민관협력분과 참여
 - 대덕구 및 유성구 보건소 지역사회재활협의체 참여
 - 대전광역시 장애인보건의료센터 위원회 활동 참여
- 지역거주 장애인 상생공동체- 수어모임(밥한끼해요). 운동/산책 활동, 자원 활동
- 돌봄쿵 인큐베이팅
 - 건강리더협동조합 지역사회통합돌봄사업 연계
 - 조인케어매니저협동조합 지역재가어르신 돌봄상담 연계
- 한발레츠 지역화페 '두루' 통용

2. 정관에 따른 2022년도 사업 실적

1) 2021년도 전체 사업량 대비 주사업 비율 실적

<정관 제61조 제1항 내지 제4항>

제61조(사업의 종류) ① 이 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 중 하나 이상을 주 사업으로 하여야 하고, 주 사업은 협동조합 전체 사업량의 100분의 40이상이어야 한다.

④ 이 조합은 주 사업의 목적 및 판단기준을 적용하기 위하여 수행할 사업유형은 지역사업형으로서 '수입·지출 예산서상 전체 사업비의 100분의 40 이상을 주 사업 목적으로 지출할 것(또는 사업계획서상 주 사업에 해당하는 서비스 대상인원, 시간, 횟수 등이 전체 서비스의 100분의 40 이상일 것)'으로 한다.

구분			사업비(단위: 원)	
			해당연도 예산	해당연도 결산
총계(A)			3,686,141,282	3,854,601,949
주 사 업	지역주민사회서비스 제공사업	의원·검진	2,170,918,865	2,188,593,151
		한의원	238,283,716	261,191,170
		치과	580,000,000	486,308,810
		지역사회의료센터	450,000,000	655,987,200
		계	3,439,202,581	3,592,080,331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한 사업	주민참여 건강증진센터 (산업통상자원부)	222,051,701	228,142,980
		계	222,051,701	228,142,980
	소계(B)			3,661,254,282
기 타 사 업	조합원 직원에 대한 상담, 교육훈련 및 정보제공사업	교육훈련비	9,805,000	16,347,795
	협동조합간 협동을 위한 사업	연대활동비	7,400,000	6,317,000
	조합 홍보 및 지역 사회를 위한 사업	홍보활동비	7,682,000	11,713,843
	소계		24,887,000	34,378,638
주사업 비율 (C=B/A)			99%	99%

2) 2022년도 주사업 실적

① 지역주민의 건강과 권익과 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해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실적

가. 의료시설 운영	○ 주치의료기반 의원, 건강검진센터, 치과의원, 한의원 운영
나. 생활습관 및 생활환경 개선사업	○ 건강 자치력 향상 활동 - 건강반 활동 지원 및 건강리더 교육 - 건강화폐 운영 : '조각'통장 발행
다. 취약계층과 조합원 및 지역주민에 대한 건강지원 사업	○ 주민참여건강증진센터 운영 - 돌봄 상담창구 운영 - 영양주치의사업(조합원 포괄적 건강관리) - 통합돌봄사업(경증치매어르신, 퇴원환자 통합돌봄) ○ 재가의료팀(지역사회의료센터) 운영 -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제공 :방문진료,가정간호,방문간호,방문 작업치료 - 장애인건강인주치의 서비스 - 장애인 건강반 운영 ○ 취약계층 등 의료비 지원 ○ 비보험 진료비 5% 조합원 출자 적립 ○ 지역품앗이 한발레츠 지역화폐 '두루' 거래 ○ 법동지역 '건강 up - 행복 up 건강마을' 축제 개최
라. 질병예방 및 보건예방 교육사업	○ 지역사회연계 보건예방활동 - 금연상담, 행복상담소 건강상담, 바퀴벌레 소독 등 ○ 어르신 건강반 운영 ○ 건강리더 양성과정: 34명 수료
마. 지역내 의료인과 연대 및 협조사업	○ 대전충남보건의료연대회의 활동 ○ 사회적의료기관협의회 활동 참여 ○ 오티드림사회적협동조합과 함께 하는 대덕구공동체지원 사업 "바퀴벌레 없는 건강한 마을만들기" ○ 일차의료학회 참여(6월 민들레 견학 및 교류) ○ 대전보건대 작업치료학과 현장실습 (4명*2회차)
바. 지역통화 운동 등 협동경제를 구축하고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지원하는 사업	○ 지역품앗이 한발레츠 지역화폐 '두루' 거래 ○ 민들레의료사협 건강화폐 '조각' 발행 ○ 지역화폐협동조합 지역화폐 한발페이 '드림' 사용처 ○ 주민참여건강증진센터 정부사업 수행 - 산업통상자원부 사회적경제혁신성장사업 비R&D -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분야 사회적경제육성사업
사. 조합원의 운동 및 생활습관개선을 위한 시설	○ 조합원 및 단체의 활동 공간 제공 - 3층 회의실 및 지하 공간 개방

3) 2022년도 기타사업 실적

① 조합원과 직원에 대한 상담·교육·훈련 및 정보제공 사업

- 조합원 및 직원 교육
 - 조합원 교육
 - 직원법정교육
 - 건강리더교육 진행

② 협동조합간 협동을 위한 사업

- 우리조합에 출자한 법인(협동조합)
 - 한살림대전생활협동조합 등 6개 단체
 - 총 출자금액 52,000,00원
- 우리조합이 외부 법인(협동조합)에 출자
 -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등 14개 단체
 - 총 출자금액 65,728,052원
- 회비납부 단체
 -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등 4개 단체
 - 총 회비납부 15,448,600원
- 활동 참여 단체
 - 지역화폐협동조합, 건강리더협동조합 등

③ 조합의 홍보 및 지역사회를 위한 사업

- 조합 정기간행물 발행
 - 모바일 소식지 : 총 4회 발행
 - 웹, 카드뉴스 : 총 44종 웹자보 및 카드뉴스, 영상제작(홈페이지, 카카오톡채널 등) 게시
 - 민들레 소개, 의료기관 안내문 등 : 상시 홍보물 제작
- 홍보 채널 관리
 - 카카오톡채널 가입자 59명 증가(누적가입자 488명)
- 주간보호센터 설립 홍보활동
 - 대의원, 조합원 웨비나 개최(2022.01.20.)
 - 주간보호센터 홍보 드라마 촬영 / 지역 내 현수막 게시 및 홍보리플렛 제작, 배포
 - 개소식 진행(지역내 유관기관 및 조합원 등 참석)
- 지역사회 협력
 - 대덕구청(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업무 협약) 등 6개 업무협약
-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
 - 이주민 등 의료비 지원 및 녹색병원 자원 연계
 - 총 118건 13,567,190원 지원

④ 임대사업

- 옥상 증계기 임대(KT, SKT) : 4,290,000원
- 타 단체 공간 임대
 - 건강리더협동조합

3. 2022년도 사업계획에 따른 실적

1) <일차의료센터> 사업평가

■ 일차의료센터 부서별 총평

○ 의원

원장님들의 다양한 업무 영역으로 의원 진료와 진료 서비스 질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일차의료센터장의 적절한 역할 수행이 있었습니다. 원장님들 진료시간 조절로 내원 환자의 혼란과 감소가 예상되고 대기공간 부족에 대한 대안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신입직원에 대한 교육과 간호팀 중심의 환자 관리와 서비스 개선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 건강검진센터

상반기 검진시 부가서비스 진행으로 연말 집중 현상을 감소 시키고, 조합원과 지역주민에게 선도적 역할과 수준 높은 서비스, 질관리 등 역할을 잘 수행하였으며 의료장비 확대에 따른 적극적인 효율과 능률적 운영, 인력 충원으로 업무 효과 상승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검진센터는 다른 의료기관과 내·외부를 연결하는 허브 기능의 역할로 자리를 잡아갈 것입니다

○ 한의원

지난 6개월 동안 운영상 다사다난 했으나 환자들의 치료와 편의를 최우선에 두고 최선을 다했으며 직원들과의 협심으로 한의원이 많이 안정되었다고 생각합니다.

○ 치과의원

부족한 22년이었지만 새로운 해를 맞이하는 초석으로 삼고 발전하는 치과가 되도록 힘을 모아보겠습니다.

(1) 의원

	분류	목표	실행계획	평가
의료서비스사업목표	의료기기 관리	- 검사의 정확성과 신뢰도 향상	- 의료장비 담당자 지정 및 체크리스트로 관리하기 - 검사 결과 문자 전화 상담으로 관리 - 검사 결과 수치의 이상 유무의 정확한 확인으로 신뢰감 증대	- 의료장비(산소통, 산소포화도, 응급키트) 담당자 지정 관리 - 체크리스트 작성 양호 - 검사 결과 문자 및 전화 피드백 - 정확도를 위하여 소변 스틱 비치하여 필요 시 사용
	진료환자 관리	- 대기환자들의 불만 해소 - 진료대기시간의 효율적인 관리 - 건의함 만들기	- 대기시간 중 고혈압, 당뇨 등 만성 질환 관련 집에서 할 수 있는 식습관 관리, 운동요법 등을 영상 시청 가능하게 함 - 교육 자료 비치 - 건의함 설치로 이용자들의 건의사항 확인 후 환자 만족도 개선	- 영상 시청을 권유하고 있으나 교육 자료가 부족하여 영상 업데이트 및 다양한 교육 자료 준비로 흥미와 관심 유발이 필요함
	수익 창출 관리	- 매출목표 3% 상승	- 일차 만성질환 시범사업 참여자 관리(동영상 시청, 진료실 교육 등 체계적 관리) - 매월 목표 달성 실행 평가하기 (회의, 2명/일 40명/월) - 성인 예방접종 시 사전 문자/전화로 누락 관리	- 일차 만성 질환 시범사업 참여자 중 재등록이 필요하신 분들은 적극 재등록 권유 - 성인 예방 접종 대상자들에게 사전 안내를 제때 잘 하고 있음
	조합원 관리	- 조합원가입(12명) 스스로조합가입(4명)	- 안내 시 조합원 이름 부르기 - 조합원 대상으로 연1회 비타민D 주사 서비스 (진료 시 원장님 판단 하에 시행)	- 환자 접수 상태에서 조합원 유무를 확인하기 어려운 시스템으로 보완이 필요한 부분임 - 대의원 총회 참석자에게 발행한 비타민D 주사권 23명 실시

(2) 검진센터

	분류	목표	실행계획	평가
의료 서비스 사업 목표	의료 기기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검사회전을 증대 - 소모품, 검사비용 감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장비담당자와 체크리스트로 관리하기 - 혈액채취검사기 구입 (바쁜 연말 검사 시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장비 담당자와 체크리스트로 장부 기록하며 관리함 - 혈액채취 검사기 도입으로 채혈 속도가 빨라짐 - 검진이 집중되는 연말엔 계측실, 내시경실 환자 회전 속도 부족 보완 필요(계측실 12월 2주 아르바이트 채용)
	검진 환자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기시간 단축 - 검사만족도 상승 - 조기검사/추적관리로 질환 이행률 감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찍 오는 검진자에게 출근 시 인사하고 대기상황 안내하기 - 대장내시경 예약현황 보고 남/녀 시간 조정하기 - 정기적인 검진 받도록 안내(문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찍오는 수검자들을 위해 대기실 사전 점검 및 준비 - 대장내시경 예약 철저한 관리실행 - 조기 검진 안내를 위한 서비스 검사 3차례 문자 발송. 전체적인 검진 분산 유도
	수익 창출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매출목표 7% 상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반기 코로나 상황 감안 / 신규 아파트 홍보 - 정기적으로 추적 관리 환자에게 문자, 전화로 안내하기 (위, 대장내시경, 초음파검사자/고혈압, 당뇨확진자/종검자관리) - 매월 목표 달성 실행 평가하기 (매일 위내시경 6건/ 대장내시경 2건씩 하기) - 심비대 질환자 심장초음파 검사 결과 전화 안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내시경, 초음파 건수 감소로 매출목표 5% 달성 - 검진 후 추적 관리가 양호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 코로나 상황 지속으로 검진 인원 조절을 위한 신규 아파트 홍보 미 실시 - 매월 내시경 목표 달성 미흡 (매월 3주차 월요일 전체 회의때 건수 파악 및 보고로 부족한 목표 채우기)
	조합원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합원 검진을 증대 - 친밀감 형성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8월까지 검진할 경우의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합원이 검진시 1차+위암 검진 시 =>(스트레스/혈관노화도 검사 중 선택) • 조합원이 대장내시경 검사시 => 간 영양제 수액주사 - 조합원가입 60명/스조가입 6명 - 조합원 이름 넣어서 부르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검진 비수기에 적절한 서비스 제공으로 조합원검진 분산 및 검진 증가에 기여 - 조합원 가입률 목표 달성 - 000 조합원님 호칭 전반적인 실행 부족

(3) 한의원

	분류	목표	실행계획	평가
의료 서비스 사업 목표	환자의 알권리 존중	치료 방식, 비용에 대한 불만 줄이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진 시 충분한 상담하기/약침 등 비보험비용 발생 시 설명하기 - 초진 시 진료시간, 휴진일 안내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진 환자 내원 시 충분한 상담과 상세한 안내 - 재진 환자는 3개월 경과 후 재진 상담 진행함 - 65세 이상 시 주말 및 야간 진료비 사전 설명을 충분히 하여 진료비 청구
	지역 사회 연대	방문진료 확대 (현재 1~명->2~3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선, 지센과 연계해서 대상자 발굴 - 요청 시 방문 전 사전 안내 전화 사전 약속 잡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영 과정 중 의료진 교체 상황 등으로 진행 안됨
	수익 창출 관리 (매출 목표 달성/지출 관리)	2,000만원/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달 필요량만큼 의약품, 의료소모품 구매 - 냉·난방 적정온도 유지하기 (냉난방 25도 유지) - 퇴근 시 소등 점검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2년 7월부터 매출 목표 달성 - 점심시간, 퇴근 시 적절한 에너지 유지를 위한 점검 강화
	조합원 관리	조합원가입 6명 스스로조합 가입2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자에게 조합 관련 정보공유로 궁금증 유발 - 접수 시 조합원가입 여부 확인하고 안내해 드리기 - 비보험 상담시 조합가입을 권유하기 - 라포형성이 잘되신 분께 스조 가입 권유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입 직원들로 조합 관련 안내에 부족함이 있지만 성장이 기대되며 내원 환자들과 접점을 많이 만들어 가고 있음 - 접수와 비급여 결제 시 조합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라포 형성 후 조합 안내함 환자 대기 시 조합 홍보 리플렛으로 조합 홍보 효과 상승

(4) 치과의원

	분류	목표	실행계획	평가
의료 서비스 사업 목표	의료 기기 관리	- 노후화된 의료 장비교체 - 진료 환경 개선	- 진료실체어 - 파노라마 - 컴퓨터 - 자외선소독기 교체 - 리모델링 등 진료 환경 개선	- 진료실 체어와 파노라마+CT 교체, 파우더룸 보수공사/바닥코팅으로 전반적인 진료환경 개선 - 노후화된 의료장비 시설 교체 필요 * 자외선살균건조기(100만원정도) * 석선장비(130만원정도) * 컴퓨터교체
	진료 환자 관리	- 정기적 치주관리를 통한 잇몸질환 예방 - 스케일링&RP: 100건/월	- 정기검진/리콜 문자 보내기 - 스케일링 후 잇몸 치료와 예방관리 교육	- 스케일링&RP: 월 110건으로 목표달성 - 스케일링(월평균70건) - RP(월평균40건) 1월(47/30) 7월(81/56) 2월(53/55) 8월(79/26) 3월(80/28) 9월(65/41) 4월(71/36) 10월(65/27) 5월(67/43) 11월(57/46) 6월(78/36) 12월(97/49) *정기검진은 6개월마다 예약문자 전송하고 있으며 리콜 주기에 따라 예약 문자 전송하고 있음
	수익 창출 관리	- 월수입 4,700만원 [년 수입 65,400만원] - 구강검진 챙기기 [연 300건]	- 진료 시 구강검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 구강검진 환자 진료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기	- 국가지원금 감소와 내원 환자 감소로 목표액에는 약간 못 미침 - 성인 구강검진 해당 환자 확인 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연 410건으로 목표치 달성
	조합원 관리	- 조합원가입: 10명 - 스스로조합원 가입:2명 - 진료실 안쪽 죽은공간 살리기	* 조합원 서비스 - 위아래 틀니 시 틀니세정제 1박스 증정 - 임플란트 2개 이상 식립 시 비급여 스케일링 1회	- 신규 조합원 가입 9명, 스스로조합원 가입 1명으로 적극적 가입 노력 필요 - 조합원 컴플레인 사항 좀 더 신경 써서 해결하기 - 스케일링 시 담당자와 환자의 구강 상태를 자세히 기록하여 컴플레인 시 또는 다음 내원 시 환자 응대를 위해 대비 - 일부 보수와 장비 교체로 전반적인 환경 위생 개선

2) <지역사회의료센터> 사업평가

사업명	위탁기관/자체	수행기간
2022년 방문의료	국민건강보험공단, 자체	2022. 01. ~ 2022. 12.

사업개요

o 목적

- 지역사회와 연대하고 건강약자를 배려하는 따뜻하고 신뢰받는 방문의료 서비스 제공 및 의료시스템 만들기

o 주요사업내용

- 대상: 재가 및 시설의 거동 불편자 (장애인, 어르신, 수술 후 퇴원환자, 기타 의료서비스가 필요하나 병원 내원이 힘든 환자), 지역사회 의뢰 대상
- 내용: 의료접근이 불편한 취약계층 및 지역사회에서 의뢰받은 대상에게 다학제 팀기반 의료 서비스 제공
- 목표수익: 2억 9천

o 추진목표

구분	목표	성과목표
방문진료	왕진, 가정간호 및 작업치료 서비스를 팀접근 방식으로 진행하여 의료의 접근성을 높인다.	연 150건
가정간호(가정)		연 2,000건
가정간호(시설)		연 1,500건
방문작업치료 (민간넷포함)		연 150건

o 추진전략

- 1) 재택의료센터 지정
- 2) NECA 환자 중심 방문의료 연구 사업
- 3) 호스피스 및 가정임종을 위한 팀원 교육
- 4) 복약관리, 발관리 등 민들레 특화 방문의료서비스 제공
- 5) 마이차트 자체시범사업 시행 (환자, 보호자, 돌봄제공자 및 의료진들의 소통과 협력을 위한 차트)

사업총평

구분	2022년 성과	o 매출성과: 444,253,550원 (방문진료 ₩20,787,020 가정간호 ₩423,466,530)
방문진료	202건	- 지역사회의료센터(센터장, 박지영원장)는 가정전문간호사 4명, 방문간호사 1명, 작업치료사 1명으로 구성되어 있음. - 지역사회의료센터의 서비스는 민들레의원 원장단 전원을 기본으로, 의원과 협력하여, 의료적인 요구도가 높은 환자와 가족들이 지역사회에서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방문의료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제공했고, 재택의료센터 지정을 위한 준비와 노력을 꾸준히 했음. 그 노력이 인정받아 12월부터는 대전에서 유일한 재택의료센터 기관으로 지정받았음.
가정간호(가정)	2989건	
가정간호(시설)	1517건	
방문작업치료	50건	
재택의료센터	5명건 등록 (12월)	

- 지자체에서 통합사례관리사 근무 경력이 있는 가정간호사도 1인 추가 구인해서 동구, 중구 등 방문의료서비스 지역을 더 확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됨.
- 대덕구와 협력한 통합돌봄사업(예, 퇴원환자 방문의료)의 일환으로 방문진료, 가정간호서비스는 양적, 질적으로 성장함. 특히 가정간호서비스는 직접 가정으로 찾아가는 비중이 높여 지역사회 가정간호로 자리매김하고 있음.
- 2023년에도 대전시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통합돌봄사업에 대한 서비스 요구도는 더 증가할 것으로 보임.-
- 2022년 방문작업치료는 대덕구와 진행한 퇴원환자 방문의료 서비스 등 통합돌봄 사업에서 제외되어, 건수나 수익이 2021년에 비해 줄었으나, 2023년 1월부터 방문진료 시범사업수가에 팀 방문(간호사, 작업치료사, 물리치료사)에 대한 가산이 생겨서, 작업치료사의 동행 방문을 통한 재정적 이익이 개선될 것으로 보임.

활동 모습



2022년 지역사회의료센터 구성원들



방문진료 (신현정 원장님) 가정간호 (이미순 간호사)



방문진료 (나준식 원장님)



방문진료 (송지혜 원장님)

사업명	위탁기관/자체	수행기간
2022년 장애인건강주치의시범사업 (+지역사회재활)	국민건강보험공단, 자체	2022. 01. ~ 2022. 12.

사업개요

- 목적
 - 장애인의 질병예방 및 치료, 활동과 참여를 통한 건강 및 삶의 질 개선
- 주요사업내용
 - 대상: 중증 장애인
 - 내용: 주치의 팀 기반으로 중증장애인의 의료접근성을 높여 만성질환 또는 장애 등에 대해 지속적, 포괄적인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방문 및 내원, 검진, 전화나 SNS 상담, 건강반 활동, 기타 서비스 연계 등을 통해서 중증 장애인의 건강관리)
 - 목표수익: 1.2억
- 추진추진목표 (등록장애인 200명 건강관리 목표)
- 추진전략

1) 장애인 건강검진, 치과 검진 및 스케일링 지속 독려 및 연계	2) 예방접종 지원
3) 만성질환 교육 등록 및 시행 (정신장애인 중 비만관리 그룹)	4) 복약 관리 (약달력 활용)
5) 발 관리 서비스에 대한 평가 시행	6) 평생교육, 스포츠, 취업 연계
7) 장애인에게 듣는 조합원 및 직원 교육 기회	8) 우울증 관리 필요 (PHQ-9 시행 고려)

사업총평

- 시범사업에서 정한 고혈압, 당뇨 등의 만성질환관리를 기본적으로 실시할 뿐 아니라 국가건강검진을 하기 힘든 중증장애인들이 내원하여 건강검진, 치과검진 등을 받도록 지원하였고, 수급자 독감이나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위한 지원을 했음.
- “민들레 예쁜 발 프로젝트”를 통해 스스로 발 관리가 어려운 뇌졸중, 당뇨, 신장투석, 시각장애인등의 피부무좀, 발톱무좀, 발 상처 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했음.
- 대전장애인체육회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서 장애인건강반을 직접 운영하면서 코로나 상황에서 운동하고 사회적 교류를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함. 올해의 장애인건강반은 스포츠바우처, 살림복지바우처를 활용하여, 매주 태권도를 배우고, 여름과 겨울 대전숲체원 1박2일 여행하기도 하는 등 사회참여의 기회를 확대하였음.

- 등록장애인(2022년말 현재 누계등록인원 272명)
- 성과수익: 1.6억 (2022년 ₩162,628,100)

구분	목표	2022년 성과
방문진료	중증장애인의 건강 유지 및 향상	523건
방문간호		866건
방문작업치료		754건
장애인건강반		주1회 이상
장애인체력인증		연 2회
장애인스포츠바우처		행복올타리 지역장애인(2명, 참여 4명)
산림복지바우처 (1박 2일 여행)		1차 장애인7명 등 총 12명(8/7-8) 2차 장애인 5명 등 총 6명 (11/13-14)

활동 모습



장애인건강주치의 팀방문의료



예쁜손발프로젝트 (편마비와 당뇨가 있는 분 손발톱관리)



청각장애인 부부를 위한 질병상담 및 교육 (자막앱 활용)



건강의 달인 (건달모임- 매주 수요일 10시 민들레 3층)



대전 숲체원 1박 2일 (산림복지바우처)



건강마을 축제 기획 참여 (수어공연)

사 업 명	위탁기관/자체	수행기간
2022년 가치기반 지역사회 연대활동	자체	2022. 01. ~ 2022. 12.

사 업 개 요

- 목적
 -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지역 건강자원들을 발굴하고 지속적으로 소통 연대하고자 함
- 주요사업내용
 - 내 용: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네트워크 및 연대활동, 지역에서 일할 수 있는 보건의료전문가 양성을 위한 실습지도, 공동체학습, 시민참여 등을 기획 진행.
- 추진전략
 - 1) 스스로 학습하고 함께 성장하며, 지역사회 공유
 - 사전연명의료제도, 발달장애 커뮤니티케어, 치매서포터즈, 공공의료 및 공공병원 건립과 관련한 학습
 - 2) 지역사회 유관기관과 지역사회 문제를 발견하고 협력하여 해결
 - 행복상담소, 지역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리빙랩, 보조기기 열린 플랫폼 참여
 - 최중증발달장애인지원, 공공보건疫료를 위한 네트워크 활동
 - 3) 학습하고 경험한 것을 나누는 활동
 - 작업치료 전공학생, 노인전문간호사 실습지도
 - 외부 강의, 발표, 방문疫료 저서 공동 집필

사 업 총 평

- 사전연명의료제도, 발달장애 커뮤니티케어, 공공의료 및 공공병원 건립과 관련한 학습을 개별적으로 학습하고, 지역사회疫료센터 팀, 민들레 직원, 유관기관과 공유하고자 하였음.
- 가정의학회 및 의료사협 연합회 등과 함께 의사, 의대생을 위한 강의, 작업치료 및 간호학 전공 학생을 위한 실습 교육 등을 함으로써 지역사회 疫료의 중요성을 알리는 노력을 해왔음.
- 방문疫료 공동저서 집필 출간 (방문疫료, 찾아가는 사람들)하고, 의료사협연합회, 국민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의 유튜브 브로 진행된 온라인 북토크 참여하여 방문疫료의 중요성 알리는 계기를 마련함.
- 올해도 지역사회 유관기관과 지역사회 문제를 발견하고 협력하여 해결하고자 하였는데, 특히 2022년에는 집에 바퀴벌레가 많은 장애인건강주치의 참여자들을 중심으로 스스로 위생적인 주거환경을 만드는 방법을 학습하고, 이웃의 주거환경을 소독하는 활동을 공동체지원활동으로 실시함(바퀴벌레 없는 건강한 마을 만들기 사업)
- 2022년 지원금 및 실습지도비: 4,180,000원
(카카오같이가치 ₩500,000원, 씨앗방문疫료지원금 ₩2,400,000 작업치료 실습지도비 ₩1,280,000)

구분	목표	성과	비고
1. 행복상담소	6회	- 6회 건강 상담 진행 - 지역사회 유관기관과 협력적인 네트워크 구축 (특히 대덕구청신건강복지센터와는 마음이음사업도 함께 하게 됨)	
2. 지역사회 문제해결 리빙랩 네트워크 구축	-	- 어르신 보행보조차(등글게차) - 맞춤형 보조기 제작지원	민들레疫료사협/대덕구 자원봉사센터/ 대덕구 노인종합복지관 등 3개 기관

구분	목표	성과	비고
3. 노인 장애인 보조기기 분야 "열린플랫폼"	-	- 노인, 장애인의 일상생활 어려움 해결 및 자립 증진을 위한 보조기기 분야 학술대회 및 전시회 참석 - 3D프린터로 제작한 장애인보조기를 지원 받음	
4. 대전 장애인보건의료/복지를 위한 민관협력 및 연대활동	-	- 대전장애인보건의료센터 - 보건소지역사회재활(대덕구/유성구) - 동구, 대덕구 민관협력: 통합사례, 장애인복지위원회 회의 참석 - 대전광역시 주민참여예산 위원활동	*장애인건강주치의 회의 *대덕구 보건소/구청 회의
5. 대덕구 공동체지원센터	-	- 오티드림사회적협동조합과 함께 "바퀴벌레 없는 건강한 마을 만들기 첫걸음"이라는 공동체활동 기획 진행함 - 대덕구 공동체한마당 기획 진행 참여 (5/21 토, 10/20 목, 12/1 목)	- 대덕구공동체 한마당 2회 - 마을건강축제 1회 - 바퀴벌레소독활동 5개월
6. 대전충남보건의료연대회의	12회	- 연대포럼 및 워크숍 기획 참여 (대전시민건강을 말한다 등) - 공공보건의료, 공공병원설립 등 보건의료 관련 이슈에 공동대처하기 위한 연대협력 12회 운영회의	
7. 사회적의료기관연합 (사이련)	-	- 일본민의료방문의료: 방문의료가 답이다(11/4) - 제4회 한국사회적의료기관연합회 학술대회 참가 (2명)	
8. 한국의료사협연합회 보건의료위원회	-	- 2022.2.12. 토 총회 zoom - 환자를 찾아가는 사람들 책 출간(방문의료) - 4.3. 토의/ 4.30. 토 북도크 심평원이 묻고 방문의료연구회가 답하다(유튜브) - 일차의료 의대생 교육활동 (의료사협+국립중앙의료원) - 환자중심 다학제 재택의료팀 강화를 위한 포럼 (국립중앙의료원+연합회 4/13, 4/30) - 재택의료센터 설명회(5/12 김창오원장) - 상반기 보건의료인연수회: 의료사협과 지역통합돌봄운동(7/23) - 한일WEB심포지엄 지역사회통합돌봄 실천한일교류심포지엄(8/25) - 청년의료봉사포럼:지역주민과의 대화 (12/3)	
9. 지역사회보건의료인력 양성-실습, 견학	-	- 대전보건대 작업치료전공자 8명 - 상명대 간호학과 실습 지도	
10. 외부 강의/발표	-	- 가정의학과 학술대회: 가정의학과 방문진료의 실제(4/15 박지영원장) - 예비의료인 세미나: 방문의료와 의료사협 (9/21 박지영원장) - 의학전문채널 의대도서관 유튜브강의(재택의료	

구분	목표	성과	비고
		현장을 가다 박지영원장) - 상반기 보건의료인연수회: 지역사회돌봄과 의료 사협의 역할 (7/23 나준식원장) - 대전장애인보건의료센터 장애인건강주치의 연수 (12/13 나준식 원장 및 장주사팀) - 대한작업치료사협회 온라인보수교육 (이경민 작업치료사) - 자연드림 씨앗재단 지원 방문의료코디네이터 워 크숍 사례발표 (12/6 이경민 작업치료사)	
11. 장애인단체 연대 및 후원	-	- 여성장애인연대 - 대덕구 장애인복지위원회 - 유성구 보건소 지역사회재활 자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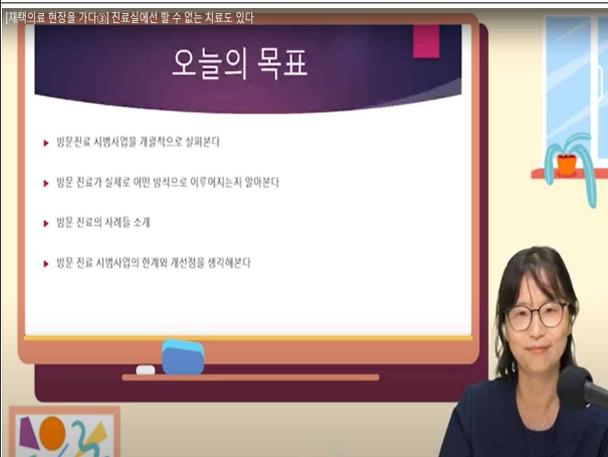
활동 모습



대전충남보건의료연대회의 포럼 (22.1.14. 금)
“대전시민 건강을 말한다”



“바퀴벌레 없는 건강한 마을 만들기 첫걸음”



의학전문채널 의대도서관 유튜브강의
(재택의료현장을 가다 박지영원장)



장애 당사자, 실습생과 함께 하는 건강리더 교육 수료식

3) 통합돌봄사업본부

(1) <조합사업부> 사업평가

사 업 명	위탁기관/자체	수행기간						
기초조직강화사업	자체	2022. 01 ~ 2022. 12						
사 업 개 요								
<p>o 목적 조합원은 민들레의 근간이며 뿌리로 조합원의 성장과 참여로 조합 발전과 지역 활동 확장을 도모</p> <p>o 계획</p> <table border="1"> <thead> <tr> <th>구 분</th> <th>계 획</th> </tr> </thead> <tbody> <tr> <td>조합원</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o 신입조합원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오프 소식지 활용 - 대면·비대면 혼합 방식 - 홈페이지 활용 - 건강반 활동시 조합 교육 - 건강리더양성과정안에 조합 교육 o 임원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 1회, 조합 임원 대상 </td> </tr> <tr> <td>대의원</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o 월 1회 자치운영위를 통한 조합원 욕구를 반영한 활동 논의 o 대의원 영상교육 자료 활용 </td> </tr> </tbody> </table>			구 분	계 획	조합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o 신입조합원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오프 소식지 활용 - 대면·비대면 혼합 방식 - 홈페이지 활용 - 건강반 활동시 조합 교육 - 건강리더양성과정안에 조합 교육 o 임원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 1회, 조합 임원 대상 	대의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o 월 1회 자치운영위를 통한 조합원 욕구를 반영한 활동 논의 o 대의원 영상교육 자료 활용
구 분	계 획							
조합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o 신입조합원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오프 소식지 활용 - 대면·비대면 혼합 방식 - 홈페이지 활용 - 건강반 활동시 조합 교육 - 건강리더양성과정안에 조합 교육 o 임원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 1회, 조합 임원 대상 							
대의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o 월 1회 자치운영위를 통한 조합원 욕구를 반영한 활동 논의 o 대의원 영상교육 자료 활용 							
사 업 총 평								
<p>o 조합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년도 대비 조합원 증가 목표 4,300 세대(증감계 118)를 총 4,404 세대(증감계 222) 달성하였으며 주간보호센터 건립 기회로 많은 조합원이 증가하였음 - 비대면 온라인 교육 증가 상황으로 대면, 집합교육 보다 홈페이지 및 소규모 조합원 활동을 활용하여 교육하고, 오프라인 소식지 미발간에 따라 다양한 sns를 이용한 조합 정보 전달 및 교육으로 방향이 전환되고 있음 - 조합원 대면과 신규 조합원 가입 시 상세한 일차의료센터 이용과 조합 사업 안내를 강화하고, 건강반 활동(50개 반, 300여 명), 건강반장 교육, 건강리더교육(34명 수료) 등 그룹별 집중 교육을 실시함 - 조합 창립 20주년을 맞이하여 '주간보호센터' 건립을 위한 특별증자와 기부에 많은 조합원이 참여하며 자연스럽게 조합 사업에 관심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되었음(280여명, 3억원) - 특히 조합원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조합원들의 의견 수렴을 이끌고 초기 사업 진행의 주요한 동력이 되었으며, 3,000만원 종차돈 마련을 결의하는 선도적 역할로 대의원 총회 시 많은 조합원의 호응을 만들어 냄 - 2022년 새롭게 구성된 임원진이 센터 건립에 집중하여 참여하고, 임원학교를 개최하여 조합의 역사 공부와 임원의 역할을 찾아 비전을 공유함 <p>o 대의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치운영위 1회 운영 - 대의원 조직의 총회 참석 기능 외 역할 확장 도모를 위한 논의 필요 - 2022년 12월 9기 대의원(110명) 선출 - 대의원 활동 공약 조합원 투표를 시행하여 우선순위를 선정하고 차기 사업 계획에 반영 예정임 								

활동 모습



임원학교



조합원추진위원회 출자/기부



조합원추진위원회 주간보호센터 설립 스터디



건강반 설명회

사 업 명	위탁기관/자체	수행기간
건강리더양성과정	자체	2022. 05 ~ 2022. 06

사 업 개 요

o 목적

스스로 자기 건강을 돌보며 이웃과 함께 건강 관련 문제를 해결하고자 역할과 관계를 촉진하는 사람으로 건강반을 운영하며 지역사회 건강자치력 향상

o 주요사업 내용

- 총사업비: 200만원
- 목표: 수료 30명
- 대상: 조합원
- 내용
 - ▶건강마을 이해
 - ▶민들레 역사
 - ▶건강반 현장 이야기
 - ▶만성질환, 정신건강, 기후위기 등 다양한 주제 진행
 - ▶수료

사 업 총 평

- 조합원만 참여 가능한 교육으로 오전과 저녁반 2회 진행하여 참가 선택폭을 넓혔으며 46명 접수 진행, 수료 34명 (교육 이수 80% 이상 수료 기준)
- 조합 홍보와 조합원 가입 기회가 되며, 나에게만 머무르지 않고 서로의 건강에 관심을 갖게 되는 주요한 교육 기회로 새롭게 건강을 생각하고 건강생활공동체에 대한 고찰을 하게 됨
- 건강반 참여가 주를 이루며 반 활동에 대한 이해 증가로 반 운영에 활력을 제공하고, 다양한 교육 내용에 만족도가 높으며 조합원들의 건강자치력 향상의 기본 토대를 형성함
- 장애가 있는 지역 주민들의(청각·지적) 참여 기회 확장으로 함께 공부하며, 다른 참가자들의 장애에 대한 인식 개선과 의사소통 방법에 대한 학습 기회를 제공함
- 수료 시 '조각' 발급으로 수료 의지를 고취 시킴
- 다양한 조합원 참여를 위한 교육 안내가 필요함

활 동 모 습



건강리더 교육 수료식



건강리더 교육 시간 청각장애인 소통모습

사업명	위탁기관/자체	수행기간
건강반	자체	2022. 05 ~ 2022. 11

사업개요

o 목적

조합원 및 지역사회 주민들의 건강관계망을 통해 서로 지지하고 나누며, 건강증진과 질병예방을 위해 스스로 만들고 운영하여 나와 이웃과 마을의 건강자치력 향상

o 주요사업 내용

- 총사업비: 2,500만원
- 목표: 40개반, 250명(조합원 비율 70%)
- 대상: 민들레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조합원 및 지역 주민
- 내용: 조합원 및 지역주민 5인 이상이 한 반으로 등록하여 건강 목표와 활동 계획을 세우고 월 2회 이상 건강증진과 예방 활동 진행(조합원 50%이상 구성)
- 활동비 지원: ▶ 조합원 3인반(35만원), ▶ 조합원 4인반(40만원), ▶ 조합원 5인이상반(45만원)
- 활동비 추가지원: 5월~6월 사이 신규 조합원 및 스스로조합비 가입 시 최대 2인까지 인당 5만원 추가 지원

o 일정



사업총평

- 활동비 지급 2,150만원, 50개반 300여명 활동(조합원 비율 86.2%)
- 건강반 활동은 대표적인 조합원 활동으로 조합원 가입 확대와 홍보 효과를 가져오며, 긴밀한 반 촉진 과정은 조합 사업과 일차의료센터 홍보와 이용으로 연결되는 효과가 매우 큰 사업임
- 조합원들과 지역주민들의 관계증진과 건강증진에 기여하여 건강자치력 향상을 위한 기초 조직으로 다양한 활동을 진행함
- 건강반과 건강마을 축제를 진행하여 나와 이웃과 마을의 '건강'에 관심을 갖고 인식을 확산하는 계기를 마련함

활동모습



건강반활동



건강마을축제

사업명	위탁기관/자체	수행기간
건강화폐 '조각'	자체	2022. 01 ~ 2022. 12

사업개요

o 목적

건강화폐 '조각'을 활용하여 건강자치력 향상을 위한 건강증진과 질병예방 활동을 촉진하고 활동 참여 동기 부여와 촉진을 강화하기 위함

o 주요사업 내용

- 총사업비: 400만원(스스로조합비)
- 대상: 민들레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조합원 및 지역 주민
- 내용: 부서별 지급 기준에 따라 건강화폐를 발행하여 참여자들의 활동을 촉진함
- 지급방법: '조각' 통장 수기 기록
- 사용처: 민들레의료사회 일차의료센터, 두레약국, (주)좋은이웃(확대 예정)
- 사용기한: 2023. 12. 30.

o 발행부서

- 조합사업부
- 주민참여건강증진센터
- 지역사회의료센터

사업총평

- 160명에게 총 491만 6천원을 제공함
- 건강증진과 질병예방, 자원봉사 활동에 큰 동기를 부여하는 촉진 효과를 보임
- 건강반장들에게 '조각' 인센티브 제공으로 건강화폐를 알리고, 조합 의료기관 사용처로 일차의료센터와 연결되는 이용 기회를 제공함
- 특히 지역 주민들의 관심이 많아 '조각' 적립을 위해 활동에 열심히 참여함으로써 성취감을 고취 시키고, '조각'의 비보험 진료비 대체로 만족감을 주고 있음
- 조합원 활동 참여 촉진으로 발행액 증가가 요구됨

활동모습



한 '조각' 한 '조각'이 만난 협동의 조각보

조각은

건강자치력 향상을 위한
건강증진과 질병 예방 활동을 촉진하고,
활동 참여 동기 부여를 위해 응원의 마음을 담아
드리는 민들레의료사협의 '건강화폐'입니다

사 업 명	위탁기관/자체	수행기간
민들레봉사단	자체	2022. 01 ~ 2022. 12
사 업 개 요		
<p>o 목적 조합원과 조합의 봉사 욕구를 충족하며 활동의 즐거움과 나눔을 펼침</p> <p>o 주요사업 내용 - 총사업비: 500만원 - 목표 : 연 3회 활동, 10여명 내외 - 대상: 민들레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조합원 - 내용 ▶ 민들레 주야간보호센터 봉사 활동 ▶ 연 2회 건강취약계층 반찬 나눔 활동</p> <p>o 향후 방향 초기 봉사단 기초 구성 단계로 주야간보호센터를 중심으로 봉사 내용을 구체화 시켜 가고 이후 봉사 욕구가 있는 조합원 발굴 및 참여로 분야 확장</p>		
사 업 총 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반기 주간보호센터 개소 후 구체적이고 집중된 봉사활동으로 변경 진행 - 주관 부서 : 주민참여건강증진센터 -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살림대전과 함께하는 한고랑활동(충북남부생산자연협회에서 기증하는 잉여농산물을 활용하여 음식을 만들어 이웃과 나눔) ▶ 민들레주간보호센터 봉사활동(어르신 송영안내, 식사도움, 활동도움, 이동시 부축 등) ▶ 지역사회를 건강하게 하는 활동(사회참여 및 이웃 안부활동) - 건강반에 참여하시는 총77명의 어르신들 중, 다양한 나눔 활동을 통해 서로 돌봄을 실천하고자 '민들레꽃 나눔반'을 만들고 53명의 어르신들 참여함 - 어르신들의 의견에 따라 나눔반은 조합원 가입과 주간보호센터 설립 증자 10만원 이상으로 결의하고, '민들레꽃 나눔반' 발대식과 나눔반원 임명장 수여 및 반장 1명, 부반장 4명을 선출함 - 나눔반 활동 기획 회의를 통해 대전한살림에서 기증하는 잉여물품 활용 방안을 논의, 만두빚기· 토마토청· 복숭아청· 포도청을 만들어 이웃과 나누는 한고랑 활동을 총 5회 진행하였으며, 케어매니지먼트를 진행하면서 안부 확인과 함께 장보러 가는 도움 등 살핌이 필요한 분이 있으면 나눔반 어르신들이 도움을 주었음 - 주간보호센터 개소와 함께 운영에 필요한 물품과 기부, 송영 안내, 식사도움, 프로그램 운영 시 활동 도움 등을 총 17명의 어르신들이 시간과 마음을 내어 현재까지 꾸준히 봉사를 하고 있음 - 2023년에는 나눔반 활동을 주간보호센터 봉사활동을 중심으로 어르신들과 함께 논의하여 확대 진행 예정임 		

활동 모습



민들레꽃 나눔반 발대식



자원봉사

(2) <주민참여건강증진센터> 사업평가

사업명	위탁기관/자체	수행기간
2022 사회적경제혁신성장사업 NON R&D	산업통상자원부	2022. 04. ~ 2022. 12.
사업개요		
<p>○ 목적 지역공동체기반의 호혜시장 플랫폼의 구축과 커뮤니티케어 정착</p> <p>○ 주요사업내용 -총사업비 : 1억5천만원 -서비스대상 : 대전지역 사회적경제기업 50여개 -내 용 : 대전지역 사회적경제기업의 커뮤니티케어 돌봄경제 활성화를 위한 서비스개발지원</p> <div data-bbox="475 824 1082 1326" style="text-align: center;"> </div>		
사업총평		
<p>-사회적경제혁신성장사업을 통해 대전지역의 사회적경제기업 돌봄경제 활성화를 위한 서비스 개발 지원을 수행함. 기술지원으로 7개소 지원과 7개 서비스개발 목표였으나 10개소 지원 및 8개 서비스개발로 성과 초과달성 하였으며, 서비스 개발에 필요한 전문가 솔루션집단을 구성하여 기업별 1:1 매칭을 통해 전문가 솔루션을 통한 사회서비스 영역별 개발과 경영 컨설팅을 제공함. 보건의료(치매), 돌봄(상담, 영양), 복지서비스(발달장애), 상담심리, 여행 등 다양한 영역에서의 서비스를 개발하여 총260여명의 지역주민에게 서비스를 소개하고 실증하여 94점 이상의 이용만족도 평가를 받았음.</p> <p>또한 사업에 참여한 기업의 역량강화를 위한 통합돌봄 및 사회서비스 개발 교육을 진행하고, 융복합서비스개발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하는 등 사회적기업별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대전시 통합돌봄사업 참여 준비를 지원하였음. 기업들의 판로개척을 위한 온/오프라인 플랫폼에 서비스를 소개할 수 있도록 연계 지원하여 매출증대 효과를 봄.</p> <p>이 사업을 통해 민들레는 인건비 3명을 지원 받았으며, 건강리더협동조합이 사업에 참여하여 기업만의 특화된 서비스 개발과 건강리더 운동방법 교육 및 경증치매어르신 활동 워크북을 제작하여 역량강화 지원을 받음.</p>		

활동 모습



사회적경제기업 서비스개발 아이디어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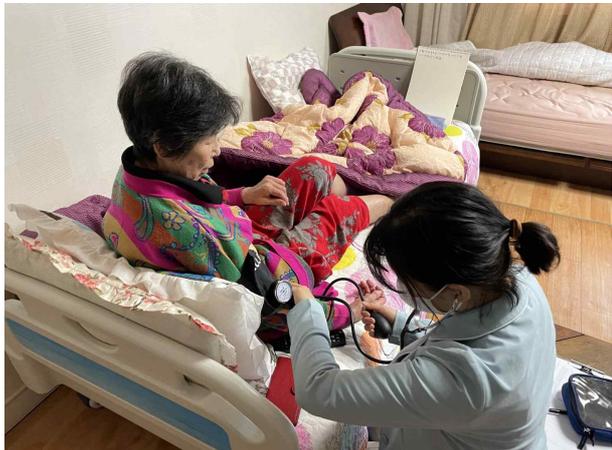
사회서비스개발 모니터링



사회적경제기업 판로개척 '가치가게' 운영 모니터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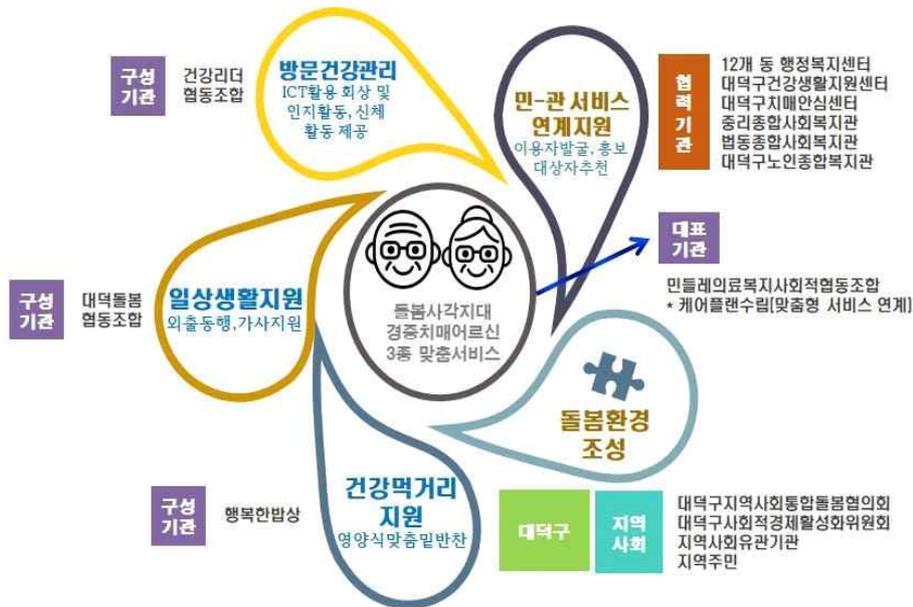
사회적경제기업 사회서비스 및 시제품개발 '성과보고회'

사 업 명	위탁기관/자체	수행기간
2022 대전시 지역사회통합돌봄시범사업 -퇴원환자 돌봄서비스	대전광역시, 대덕구	2022. 03. ~ 2022. 12.
사 업 개 요		
<p>○ 목적 의료기관 퇴원환자의 안전한 지역사회 정착 도모 및 자립생활유지</p> <p>○ 주요사업내용 -총사업비 : 2,000만원 -서비스대상 : 의료기관 퇴원을 앞둔 환자로 지역사회 정착 및 자립생활기능유지에 어려움이 있는 60세이상 어르신 40여명 -내 용 : 대전지역 2,3차병원 및 요양병원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퇴원 시 돌봄서비스 연계 (퇴원환자 연계서비스 체계 구축, 통합돌봄서비스사업-방문의료, 재가돌봄, 식사지원, 심리지원, 일시보호 등)</p>		
사 업 총 평		
<p>-퇴원 후에 돌봄환경이 취약하여 거동이 어렵거나 일상생활이 어려운 퇴원환자에게 단기간 집중하여 돌봄 및 의료서비스 등을 제공하여 지역사회 정착 및 자립생활기능유지에 도움을 드리는 사업을 진행하였음. 대덕구 퇴원환자 연계서비스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대전지역 2,3차병원 및 요양병원과 간담회를 상/하반기 2회 걸쳐 진행하여 퇴원 후 어르신들을 연계하고, 퇴원환자 의료정보 등을 공유하여 서비스대상자에게 필요한 의료 및 돌봄 서비스를 제공함.</p> <p>또한 의료 돌봄 문제 외에 복합적이고 다양한 문제 해결을 위해 북부, 중부, 남부 통합상담실을 연계해 케어회의를 9회 실시하여 심리지원, 의료비 지원, 이사비용 지원 등 다양한 복지욕구 해결. 총56명의 대덕구 주민이 서비스를 이용하였고, 서비스를 신청하면 간호사가 방문하여 상담을 통해 포괄평가를 진행하고 케어플랜을 수립하여 대상자에게 맞는 서비스를 연계하고 모니터링을 주기적으로 하여 서비스를 조정함. 방문의료서비스 17명, 일시재가돌봄 18명, 이동지원서비스 1명, 영양식사지원 31명, 심리상담 6명, 일시보호서비스 5명이 서비스를 이용함.</p> <p>퇴원환자 돌봄서비스를 통해 지역사회에 민들레 활동과 의료서비스 등을 홍보하고 매출증대에도 일부 기여함. 수술 후 일상생활이 어려울 때 가족이나 지인이 없어 당장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을 알아보시다가 이 서비스를 통해 자신이 익숙한 집에서 돌봄을 받고 건강을 회복하여 일상이 회복되는 사례가 많아 대덕구만의 통합돌봄 우수사업으로 23년도에도 지속할 예정임.</p>		
활 동 모 습		
		
2,3차 및 요양병원 연계협력 간담회 개최	퇴원환자 방문상담 및 포괄평가	

사업명	위탁기관/자체	수행기간
2022 사회서비스분야 사회적경제육성·지원사업 -경증치매어르신 웰라이프 헬스케어서비스	보건복지부, 대덕구	2022. 04. ~ 2022. 12.

사업개요

- 목적
고령화와 치매인구 증가에 따라 급증하는 노인 돌봄 욕구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사회와 연대·협력하여 사각지대 없는 경증치매어르신 돌봄 환경 조성으로 노인과 돌봄 가족의 삶의 질 향상
- 주요사업내용
-총사업비 : 5,000만원
-서비스대상 : 돌봄사각지대 경증치매어르신 40여명
-내 용 : 대사장자별 욕구중심 맞춤형 웰라이프 헬스케어서비스 통합제공



사업총평

-20년부터 진행한 사업으로 치매 등급을 받지 못하는 경증치매어르신들의 건강관리와 돌봄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케어매니저가 방문하여 포괄평가를 진행, 건강관리서비스(ICT활용 단기기업회상법, 인지작업활동, 복약관리 및 운동), 일상생활지원서비스(일상생활수행능력 교육, 일시제가서비스), 건강먹거리서비스(영양맞춤도시락)를 어르신 맞춤형 케어플랜을 작성하여 서비스 제공함.

대표기관인 민들레의료사업을 중심으로 건강리더협동조합, 대덕돌봄협동조합, 행복한밥상 총4개 사회적경제기업이 컨소시엄의 형태로 사업을 진행하였고, 올 초 40여명이 서비스대상 목표였으나 74명의 어르신들이 서비스를 이용함. 일자리제공인원이 25명 확대되어 일자리창출에도 기여하였으며, 서비스를 6명의 이용자들이 유료로 이용하여 비즈니스모델 기반을 구축함.

사업에 참여하는 어르신들의 일상생활 수행능력이 향상되고 건강관리와 돌봄제공을 통해 돌봄환경이 개선되어 보건복지부로부터 우수사업으로 인정받아 '우수상'을 수상하였음. 23년도에도 보건복지부에서 공모사업을 준비중이며, 민간기업과 다양한 주체들과의 컨소시엄을 통한 사회서비스 개발 예정으로 준비하여 참여할 예정임.

활동 모습



경증치매어르신 방문상담 및 포괄평가



건강리더 ICT활용방법 교육



경증치매어르신 인지작업활동



컨소시엄기관 및 대덕구 실무자 정기실무회의

사 업 명	위탁기관/자체	수행기간
2022 재가의료급여 시범사업	대전광역시, 대덕구	2022. 01 ~ 2022. 12.
사 업 개 요		
<p>○ 목적 의료급여 퇴원자의 지역사회로 원활한 복귀 및 정착을 통한 삶의 질 향상</p> <p>○ 주요사업내용 -총사업비 : 3,300만원 -서비스대상 : 관내 동일상병으로 31일이상 입원자 중 의료적 필요가 낮고, 퇴원 시 주거가 있거나 주거연계가 가능한 의료급여수급자 -내 용 : 대상자 선정 후 필요도 평가, 케어플랜을 수립하여 대상자 맞춤형 급여(서비스)제공 (의료지원, 돌봄지원, 식사지원, 이동지원, 주거개선, 냉·난방지원)</p>		
사 업 총 평		
<p>-의료급여 수급자가 퇴원할 경우 지역사회로 원활한 복귀와 정착을 돕는 재가의료급여시범사업을 21년부터 8월부터 협력의료기관으로 사업을 수행하였음.</p> <p>대덕구청 사회복지과에서 대상자를 선정한 후 의뢰를 주면, 간호사가 방문하여 필요도 평가를 하고 케어플랜을 수립하여 의료급여관리사에게 전달하면 대상자 맞춤형 급여(서비스)를 제공함. 필수급여로 의료지원, 돌봄지원, 식사지원, 이동지원이 가능하고 선택급여로 주거개선, 냉·난방지원이 가능함.</p> <p>22년 총10명의 의료급여 수급자분들이 총63회에 걸친 서비스를 제공 받았으며 불필요한 장기입원을 방지하고, 병상이 아닌 재가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였음.</p> <p>민들레는 인력부족과 퇴원환자 돌봄서비스 운영 중복에 따라, 23년 협력의료기관으로 사업을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사회복지과에 재가의료급여시범사업 협력의료기관 참여취소 의견을 전달하였으며, 퇴원환자 돌봄서비스 사업에 매진할 예정임.</p>		
활 동 모 습		
		
대덕구 재가의료급여시범사업 사례회의	방문간호 및 모니터링	

사 업 명	위탁기관/자체	수행기간
만성질환건강반	대덕구, 자체	2022. 04. ~ 2022. 12.
사 업 개 요		
<p>○ 목적 건강취약계층(만성질환자, 허약노인 등)으로 구성된 건강반을 조직하여 신체능력 향상 및 만성질환을 관리하고 관계중심의 공동체 운영</p> <p>○ 주요사업내용 -총사업비 : 500만원(300만원 대덕구, 200만원 자체예산) -서비스대상 : 만성질환을 갖고 있으면서 건강반을 통해 건강증진과 질병예방을 희망하는 65세이상 노인 50명 -내 용 : 케어매니저의 포괄평가 및 SPPB(간단신체기능검사)를 통해 건강상태를 체크하고, 건강상태에 따라 신체활동 및 심리정서활동 건강반 운영</p>		
사 업 총 평		
<p>-건강취약계층(만성질환자, 허약노인 등) 어르신으로 구성되어진 건강반 운영을 60명 목표로 하였으나, 상반기에 참여하신 어르신들이 친구들과 지인에게 소개하여 하반기 17명 증가하여 총 77명의 어르신이 건강반 활동에 참여함. 주1회, 1시간씩, 상반기(3개월)/하반기(3개월) 나누어 진행하였으며, 대덕구 예산 지원을 받아 중리종합사회복지관과 협력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건강리더협동조합에서 운동을 지도함.</p> <p>어르신이 건강반을 신청하시면, 민들레소개와 조합원가입을 안내해드리고, SPPB(간단신체기능검사)와 건강상담(혈압 측정 및 식이교육 등)을 사전/사후 실시하였으며, 결과를 바탕으로 건강실천목표를 세우고 실천활동을 촉진함. 중요한 촉진제로 민들레 건강화페인 '조각'을 활용하였으며 건강반 활동에 동기부여와 활기를 더해주어 열심히 건강반에서 운동한 결과 어르신들의 신체나이, 노쇠지수, 정적균형, 보행속도 등 점수가 전반적으로 향상 되었음. 건강반에 참여하신 어르신들이 활동에서 만나는 어르신들끼리 관계망이 형성되어 서로 안부를 확인하고, 병원 퇴원 후 서로 챙겨주며 서로돌봄이 가능하게 되었음. 우울이 있거나 집밖에 잘 나오지 않던 어르신들도 건강반 활동을 통해 친구도 만들고 스스로 건강을 지키는 힘을 키울 수 있는 것에 만족도가 높아 23년 건강반 활동을 확대할 예정임.</p>		
활 동 모 습		
		
SPPB(간단신체기능)검사 사전/사후 실시	건강반 활동(맨손체조, 탄력밴드 활용 근력운동 등)	

사업명	위탁기관/자체	수행기간
조합원 영양주치의시범사업	자체	2022. 02. ~ 2022. 12.

사업개요

○ 목적
2022년 창립20주년에 따라 다양한 지역사회 건강돌봄 활동의 경험을 바탕으로 조합원과 가족의 어려움을 나누고 노년의 건강하고 존엄한 삶을 함께 설계하고자 함.

○ 주요사업내용
-총사업비 : 조합원 출자금 및 등록비
-서비스대상 : 조합원이면서 거동이 가능하고 건강관리와 돌봄욕구가 있는 자

-내 용 : 보건·의료·돌봄 영역에서의 문제 개선을 위하여 영양주치의팀(의사, 간호사, 케어매니저)이 함께 방문하여, 조합원의 욕구를 파악하여, 그에 따른 만성질환관리, 복약관리, 건강관리, 지역사회 자원연계 등을 지속적·포괄적으로 전담 관리

사업총평

-창립20주년을 맞이하여 주간보호센터 설립 출자를 100만원이상 해주신 조합원님들과 가족의 돌봄·건강의 어려움을 영양주치의팀이 가정을 방문하여 조합원의 욕구에 따라 건강관리 및 통합돌봄을 지속적·포괄적으로 전담 관리해 드림.

총35명의 조합원님들이 사업에 참여하셨고, 건강 및 자립생활기능 상태에 따라 자가, 정기, 집중관리로 나누어 사전 건강측정(SPPB검사, 혈압체크, 식습관 등)과 건강상담을 진행하여 건강목표와 실천계획을 세움. 간호사가 실천계획 수행여부를 정기적으로 체크하고 건강이 갑자기 안 좋아질 경우 영양주치의 팀이 즉시 개입하여 방문진료 및 검사를 진행하여 가정간호서비스를 연계하는 등 응급상황에 대한 대응을 해주었음. 또한 갑작스런 배우자의 질환으로 돌봄 공백이 생긴 조합원에게 '대덕구 통합돌봄사업'인 틈새돌봄서비스 연계와 장기요양등급 신청을 도와드리고, 거동불편으로 외부활동이 제한되어 있으나 재활의 욕구를 갖고 있는 조합원님은 주간보호센터로 연계하는 등 사업에 참여한 조합원님과 가족에게 민들레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하여 포괄적으로 관리해드림.

올해 시범사업의 경험으로 23년부터는 조합원과 가족들에게 민들레 통합돌봄사업을 통합적으로 안내하여 조합원들의 건강과 돌봄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나누며, 노년의 건강하고 존엄한 삶을 함께 설계하고자 함.

활동모습



영양주치의팀(의사, 간호사, 케어매니저) 방문상담



만성질환 관리 및 건강관리

(3) <주간보호센터> 사업평가

사 업 명	위탁기관/자체	수행기간												
민들레 주치의가 있는 「주(야)간보호센터」 설립	자체	2022. 11. ~ 2022. 12.												
사 업 개 요														
<p>○ 정의 거동이 불편하거나 치매, 퇴혈관질환,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환으로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어르신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등급(3~5급)을 받아, 아침에는 집으로 모시러 가고, 저녁에는 모셔다 드리며 이용하는 일명 [어르신 유치원]</p> <p>○ 주요사업내용</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구분</th> <th style="text-align: center;">세부내용</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목적</td> <td>민들레의료사협이 추구하는 조합원과 지역주민의 건강예방, 주치의료, 재활과 돌봄을 구현하기 위한 사업으로 주치의가 건강과 의료문제를 관리하는 센터를 설립, 운영</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시설 위치와 규모</td> <td>- 위치: 럭키스포츠프라자 5층(대덕구 중리서로 83/중리동) - 규모 : 약 700㎡(210평) 주(야)간보호센터 75인시설(170평) 조합원(장애인) 교육활동공간 (40평)</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설립 일정</td> <td>- 3월-4월 건물계약 및 조합원출자/증자 - 5-6월 시설 인테리어 및 행정인가 - 7월 이용자 모집 및 운영시작 - 8월24일 창립20주년 개소식</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운영목표</td> <td>- 어르신이 주체가 되는 돌봄 - 일상생활, 신체기능의 재활과 회복을 중심으로 하는 돌봄</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민들레만의 특징</td> <td>- 주치의가 정기적인 건강의료문제를 관리 - 지역사회, 조합원과 연계한 참여와 활동 - 야간보호 및 단기돌봄 제공</td> </tr> </tbody> </table>			구분	세부내용	목적	민들레의료사협이 추구하는 조합원과 지역주민의 건강예방, 주치의료, 재활과 돌봄을 구현하기 위한 사업으로 주치의가 건강과 의료문제를 관리하는 센터를 설립, 운영	시설 위치와 규모	- 위치: 럭키스포츠프라자 5층(대덕구 중리서로 83/중리동) - 규모 : 약 700㎡(210평) 주(야)간보호센터 75인시설(170평) 조합원(장애인) 교육활동공간 (40평)	설립 일정	- 3월-4월 건물계약 및 조합원출자/증자 - 5-6월 시설 인테리어 및 행정인가 - 7월 이용자 모집 및 운영시작 - 8월24일 창립20주년 개소식	운영목표	- 어르신이 주체가 되는 돌봄 - 일상생활, 신체기능의 재활과 회복을 중심으로 하는 돌봄	민들레만의 특징	- 주치의가 정기적인 건강의료문제를 관리 - 지역사회, 조합원과 연계한 참여와 활동 - 야간보호 및 단기돌봄 제공
구분	세부내용													
목적	민들레의료사협이 추구하는 조합원과 지역주민의 건강예방, 주치의료, 재활과 돌봄을 구현하기 위한 사업으로 주치의가 건강과 의료문제를 관리하는 센터를 설립, 운영													
시설 위치와 규모	- 위치: 럭키스포츠프라자 5층(대덕구 중리서로 83/중리동) - 규모 : 약 700㎡(210평) 주(야)간보호센터 75인시설(170평) 조합원(장애인) 교육활동공간 (40평)													
설립 일정	- 3월-4월 건물계약 및 조합원출자/증자 - 5-6월 시설 인테리어 및 행정인가 - 7월 이용자 모집 및 운영시작 - 8월24일 창립20주년 개소식													
운영목표	- 어르신이 주체가 되는 돌봄 - 일상생활, 신체기능의 재활과 회복을 중심으로 하는 돌봄													
민들레만의 특징	- 주치의가 정기적인 건강의료문제를 관리 - 지역사회, 조합원과 연계한 참여와 활동 - 야간보호 및 단기돌봄 제공													
사 업 총 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 계획과 달리 설립 일정에 차질이 많아 12월 1일에 지정서를 발급받고 운영을 시작하였음. - 12월 16일 조합원, 지역주민, 유관기관장 참석한 가운데 개소식을 하였음. - 11월 1일부터 체험활동을 시작으로 12월 1일부터 운영 시작되어 12월 31일까지 11명의 어르신이 이용하고 있음. -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에게 기본적인 일상생활서비스 및 전문화된 주치의 서비스, 작업치료사의 재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어르신들의 잔존기능 유지 및 향상을 통해 건강증진 및 가족들의 정신적, 육체적 부담을 덜어주어 생활 안정에 도움을 주고 있음. - 조합원들의 봉사 활동을 통해 센터와 조합원 간의 유대관계 형성 및 보람을 느끼게 하는 역할이 이루어짐 														

활동 모습



주간보호센터 개소식



어르신 운동모습

4) 경영지원실

(1) <총무회계팀> 사업보고

사 업 명	위탁기관/자체	수행기간
조합 경영 사업	자체	2022. 01 ~ 2022. 12

사 업 개 요

o 목적

- 조합 운영 시스템 체계화
- 조합 재정운영 관리화

o 주요사업내용

- 총무
 - 전산관리: 내부 전산장비 유지보수, 데이터관리
 - 경영공시: 협동조합 / 사회적기업 경영공시
 - 자원봉사: 봉사자 등록 및 관리
 - 행정지원: 조합의 행정업무 및 병원행정 업무처리
- 인사/노무: 직원 입, 퇴사 및 연차관리
- 회계: 수입 및 지출 데이터화(매월) 및 관리, 의료기관 재고관리, 분기별 회계결산

o 조합원 / 스스로조합비 가입

- 목표: 조합원 10명, 스스로조합비 조합원 8명 신규가입

o 예산

품 명	예산 비용(원)
네트워크서버 장비 구매	2,000,000
회계 / 재고관리 프로그램	8,000,000
조합원관리 프로그램 개발	20,000,000
POS 업그레이드	15,000,000
합 계	45,000,000

사 업 총 평

- o 전산, 경영, 자원봉사, 행정지원 등 원만하게 운영 지원하였으며, 특히 주간보호센터 설립에 집중하여 설립 신고와 인력 운영, 차량 구매 등 전반적 분야에 이루어졌으며 앞으로도 계속 지원 예정임.
- o 일차의료센터 재고관리의 시스템화로 적절한 비용 집행률 마련.
- o 회계업무절차 체계화로 투명성 상승 및 비용절감.
- o 고정자산의 취득과처분의 운용및변동상태를 지속적으로 기록 관리하여 자산실태를 파악하여 재정 건전성을 확보.
- o 프로그램관련 개발 사항은 조합 신사업 구축(주간보호센터)으로 재정 상황을 고려하여 미집행 된 예산은 다음연도로 연기.
- o 대덕구노인복지센터 노인일자리사업을 활용하여 조합건물 환경유지 비용 절감

1.<홍보협력팀> 사업보고

사업명	위탁기관/자체	수행기간																																
조합 홍보	자체	2022. 01 ~ 2022. 12																																
사업개요																																		
<p>o 목적 조합 활동을 효과적으로 알리고, 조합원과 시민의 참여를 독려하며, 조합 활동을 기록하기 위함.</p> <p>o 주요사업내용</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민들레 리포트 제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이소식지를 대신할 신문, 소식지 형태의 반기별 리포트 - 내용 구성 : 활동 소식, 민들레 소개, 건강정보 및 뉴스 등 - 연 2회 발행, 페이지 및 부수는 추후 결정 2) 유튜브용 영상물 제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들레 활동을 신속하게 담은 짧은 영상물 다수 제작 - 각 사업부서 자체 생산을 위한 촉진과 교육 - 영상물 취합 편집, 게재를 위한 플랫폼 구상 3) 모바일 소식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합소식 웹자보 제작, 사안 대응 비정기적 발행 - 카톡 채널 통한 발송, 채널가입자 50명 증대 (430->480명) 4) 조합소개 리플렛 제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기관 비치용, 외부 배포용 홍보물 업그레이드 5) 민들레 홍보협의체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부서 및 기관의 주력사업 파악 및 홍보과제 논의 소통 - 월1회 개최 (의료기관 기존 팀장회의 참여, 통합돌봄본부 회의참여) - 의료기관 내외부 게시판 점검 6) 홈페이지, SNS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시 관리, 관리자페이지 관리 - 조합 주력사업 홍보, 배치 변경, 추가 페이지 제작 등 업데이트 - 페이스북, 카톡채널, 밴드 관리 <p>o 사업예산</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항 목</th> <th>내 역</th> <th>비용(원)</th> <th>비고</th> </tr> </thead> <tbody> <tr> <td>민들레 리포트</td> <td>2회*1,000,000=2,000,000</td> <td>2,000,000</td> <td></td> </tr> <tr> <td>유튜브영상물 제작</td> <td>기기구입비 1,500,000 외부제작비 2,000,000</td> <td>3,500,000</td> <td></td> </tr> <tr> <td>조합소개 리플렛</td> <td>편집인쇄비 1종*500,000=500,000</td> <td>500,000</td> <td></td> </tr> <tr> <td>의료기관 게시판</td> <td>1회*500,000=500,000</td> <td>500,000</td> <td></td> </tr> <tr> <td>모바일소식지</td> <td>망고보드사용료 1년 550,000</td> <td>550,000</td> <td></td> </tr> <tr> <td>홈페이지 관리</td> <td>호스팅비 11,000*12월=132,000 업데이트비 2,000,000</td> <td>2,132,000</td> <td></td> </tr> <tr> <td colspan="2" style="text-align: center;">합 계</td> <td>9,182,000</td> <td></td> </tr> </tbody> </table> <p>o 서비스대상 : 조합원, 주민, 일반시민, 유관단체</p>			항 목	내 역	비용(원)	비고	민들레 리포트	2회*1,000,000=2,000,000	2,000,000		유튜브영상물 제작	기기구입비 1,500,000 외부제작비 2,000,000	3,500,000		조합소개 리플렛	편집인쇄비 1종*500,000=500,000	500,000		의료기관 게시판	1회*500,000=500,000	500,000		모바일소식지	망고보드사용료 1년 550,000	550,000		홈페이지 관리	호스팅비 11,000*12월=132,000 업데이트비 2,000,000	2,132,000		합 계		9,182,000	
항 목	내 역	비용(원)	비고																															
민들레 리포트	2회*1,000,000=2,000,000	2,000,000																																
유튜브영상물 제작	기기구입비 1,500,000 외부제작비 2,000,000	3,500,000																																
조합소개 리플렛	편집인쇄비 1종*500,000=500,000	500,000																																
의료기관 게시판	1회*500,000=500,000	500,000																																
모바일소식지	망고보드사용료 1년 550,000	550,000																																
홈페이지 관리	호스팅비 11,000*12월=132,000 업데이트비 2,000,000	2,132,000																																
합 계		9,182,000																																

사 업 총 평

o 사업 결과

1)서비스 대상 : 조합원, 환자, 일반시민, 유관단체

2)모바일 소식지

- 모바일 소식지 vol15~17호 발행 (봄,여름,가을호)
- 카톡채널 발송, 채널가입자 59명 증가함 (430->489명, 50명 증가 목표 초과달성)

3) 홈페이지, SNS관리

- 홈페이지, 밴드 등 상시 관리, 관리자 페이지 관리
- 조합 주력사업 홍보, 배치 변경, 추가 페이지 제작 등 업데이트
- 조합원 소식 게시판 신설, 메인화면 배치 변경
- 페이스북 계정 변경, 재개장 (의료생협 폐기 -> 의료사협 신설)

4) 주간보호센터 설립 홍보활동

- 대의원,조합원 웨비나 개최
 - 일시 : 2022. 01.20 19시~21시 (장소:공동체지원센터)
 - 제목 : 영양주치의가 있는 주간보호센터 설립 추진을 위한 대의원 및 조합원 웨비나
 - 방식 : 온오프라인, 유튜브 실시간 송출
 - 내용 : 주제발제 3인, 토론2인, 종합토론, 질의응답
 - 결과 : 최대 접속자수 44명, 현장참석자 20명, 질문수 댓글6개, 현장2개
- 조합원 드라마 촬영 “민들레주간보호센터가 온다”
 - 일시 : 2022. 04.29 (촬영장소: 민들레의원,검진센터,김성욱 조합원집 등)
 - 출연 : 주웅식· 김성욱 · 봉미경 조합원
 - 제작 : 대본 박현주 홍보협력팀장, 촬영편집 정종한 조합원(온미디어협동조합)
 - 방영 : 온라인_민들레 홈페이지, 유튜브, 페이스북. 오프라인_대전지역 한살림 매장 10곳, 신협·복합문화공간 등 70여곳
- 조합원 출자, 기부금 모금 홍보
 - 온라인 : 총 10종 웹자보 및 카드뉴스 제작과 발송(홈피 게시, 카톡채널, 페이스북)
 - 오프라인 : 각 의료기관 게시판 및 TV모니터 활용, 의원 출입구 유리문3곳 대형 현수막 2회, 의원내부벽 현수막, 럭키스포츠프라자 대형 현수막 2장 게시, 인근지역 지정게시대 현수막 20매, 전단지 2종 2천매 배포, 홍보리플렛1종
 - 주 1회 부서통합 정기회의 회의 (홍보전략, 상황공유 등)
- 웹홍보물, 영상물 제작 및 게시 (유튜브)
 - 웹자보, 카드뉴스 총 34종 제작 · 영상물 : 15개 신규 업데이트
- 주간보호센터 개소식 행사개최
 - 일시 : 2022.12.16. 09:30~11:00 (장소 : 럭키스포츠프라자 5층 민들레주간보호센터)
 - 참석 : 지역사회 유관기관(대덕구, 복지관, 협동조합, 보건소, 경로당 등), 추진위원회, 이사회 등. 60여명.
- 프로그램 : 인사, 테이프커팅, 주간보호센터 소개, 기부후원안내 등
- 언론보도 : 디트뉴스, 오마이뉴스

5) 기타 - 의료기관 홍보물 등

- 각 의료기관에서 요청하는 시기별 홍보물 제작 게시
- 조합 소개 리플렛 1종 제작 (3단 접지)

o 총평

- 2022년도는 1월 주간보호센터 설립을 위한 조합원 웨비나부터 5월 홍보 드라마 제작, 3억 목표 출자금 모금, 7~8월 오프라인 현수막 게시, 12월 개소식 행사 개최까지 연초부터 연말까지 주간보호센터 설립 홍보를 중점적으로 진행함. 특히 주간보호센터 설립에 조합원 참여를 강구하여 코로나19 시기에 유튜브 생중계 웨비나를 기획하여 관심과 참여를 높였고, 이후 조합원이 출연하고 촬영하는 홍보 드라마를 제작하여 대전지역 80여곳에 오프라인 방영처를 확보하여 상시적으로 방영한 점은 큰 성과임. 다소 늦어진 개소 일정이나, 12월에 지역사회 유관기관 대상 주간보호센터 개소식을 성황리에 개최함.
- 조합 모바일 소식지를 계절별로 3회 발간하였는데, 겨울호는 11월에 담당 실무자의 부서이동(경지실 홍보협력팀->참선)으로 발간하지 못함. 민들레 통합소개서 요청 수요가 높아 3년만에 업그레이드하여 제작할 예정이었으나 예산

상 간략하게 제작한 것은 아쉬움.

○ 홈페이지를 안정적으로 운영, 업데이트하였고, 카톡채널 가입자수 증대 목표를 초과 달성함. 민들레리포트와 통합 소개서 등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인쇄물 제작이 보류되고, 유튜브 게시 영상물과 카드뉴스 등 웹용 홍보가 증가함.

활동 모습



주간보호센터설립 웨비나(유튜브 실시간 중계)



조합원 출연 드라마 촬영 "민들레주간보호센터가 온다"



모바일소식지 발간 / 조합활동 영상 유튜브 탑재



민들레주간보호센터 개소식(지역사회 초청)

사업명	위탁기관/자체	수행기간
대외협력	자체	2022. 01 ~ 2022. 12

사업개요

○ 목적
의료비 지원과 유관기관 협력 등으로 지역사회에 민들레의 선한 영향력을 확장한다.

- 주요사업내용
- 1)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 (기부금 사용)
 - 건강반, 건강리더 등 보건예방활동 지원
 - 성매매피해여성, 이주노동자, 65세 노인 등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과 상담
 - 예산 : 전년도 스스로조합원조합비

구분	운영비	취약계층 의료비지원			보건예방활동			계
		의료기관 의료비지원	지역사회 의료센터	외부기관 연계지원	건강반, 건강리더	조각 지원	장애인위한 시설개선금 적립	
금액	240만원	19,00만원	200만원	450만원	1,550만원	400만원	390만원	5,130만원
비율	5%	37%	4%	9%	29%	8%	8%	100%

- 2) 언론대응
 - 보도자료 발송, 언론사 취재촬영 협의
- 3) 유관기관 협약
 - 지역사회, 복지관, 대학, 기업 등 업무 협약
- 4) 지역화폐 두루지급 관리
 - 민들레 임직원 두루 지급
 - 의료기관 두루 사용 결산
- 5) 직원교육
 - 직원법정의무교육
 - 협동조합 교육

사업총평

- 사업 결과
- 1)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 (기부금 사용)
 - 2022년도 예산 51,416,200원 (전년도 스스로조합원조합비)
 - 성매매피해여성, 이주노동자, 장애인, 65세 노인 등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과 상담
 - 지원대상 선정절차 신설, 지원동의서, 선정회의 구성, 기부금운용보고서 발간(2회)
 - 결산 내역 (단위 원)

구분	운영비	취약계층 의료비지원			보건예방활동			계
		의료기관 의료비지원	지역사회 의료센터	외부기관 연계지원	건강반, 건강리더	조각 지원	장애인위한 시설개선금 적립	
금액	181,810	9,181,815	1,558,265	2,827,110	15,087,656	1,862,050	900,000	31,598,706
집행율	8%	48%	78%	63%	89%	37%	100%	61%

- 2) 유관기관 협약, 실습
 - 제천간디학교(고등과정) 학생 1명 실습 : 2022.06.07.~ 06.24, 경영지원실, 검진센터
 - 상명대 간호학과 학생 6명 실습 : 2022.11.07.~11.18, 사례관리연결, 주간보호센터
- 3) 지역화폐 두루 지급 및 직원법정의무교육
 - 민들레 임직원 두루 지급 (매월 급여 3만두루, 전직원모임 참여 1회 5천두루, 이사회 참여 1회 2만두루)

- 직원법정의무교육 : 4대교육 실시 완료(성희롱예방, 퇴직연금, 장애인식개선, 개인정보보호)

o 총평

- 올해 하반기에 취약계층 의료비지원 절차를 수립하여 접수->선정회의개최->대상자 면담, 동의서작성 등 일련의 과정을 마련하여 기부금사용에 투명성과 공정성을 기함. 의료비지원 의뢰기관이 한정적이나 합리적인 확대방안이 마련되지 못하여 많은 액수가 이월되는 것은 아쉬운 점임. 기부금운용보고서를 발간하였는데(카톡채널) 재원의 대부분이 스스로조합원조합비이므로 스스로조합비조합원에게 운용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음.

- 코로나19사태 소강에 따라 외부기관 요청 실습 재개하였고, 각 부서 협력을 이끌어내어 체계적인 실습생 교육 훈련을 실시하였다. 또한 집합교육이 가능해져서 대전YMCA에서 성희롱예방 강사, 신한은행에서 퇴직연금 강사를 지원받아 직원법정교육을 내실있게 진행함.

활 동 모 습



상명대 간호학과 학생 실습 교육



직원법정교육 실시(강사 초빙 집합교육)



취약계층 의료비지원



기부금운용보고서

Ⅲ 결산 보고(안)

1. 결산 보고 총평

2022년도의 결산 손익은 198,248,294원으로 5년 연속 흑자를 이루었습니다. 주·야간보호센터 설립 및 어려운 경영 환경에도 불구하고, 조합원 등 민들레 구성원들의 마음을 모아 이루어낸 결과물입니다.

2022년 결산 손익을 반영한 2022년 미처리 결손금이 3억 아래로 줄었습니다. 까마득해 보이던 목표가 멀지 않음을 느낄 수 있는 지점에 도달했습니다. 고개를 넘어서 이제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는 중 잠시 어려운 지점을 맞이합니다. 조금 어렵더라도 함께 힘을 모으면 잘 극복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주·야간보호센터 설립을 위한 출자금 증자액이 약 3억여 원으로 민들레 구성원들의 저력을 확인하며 조합원들의 노력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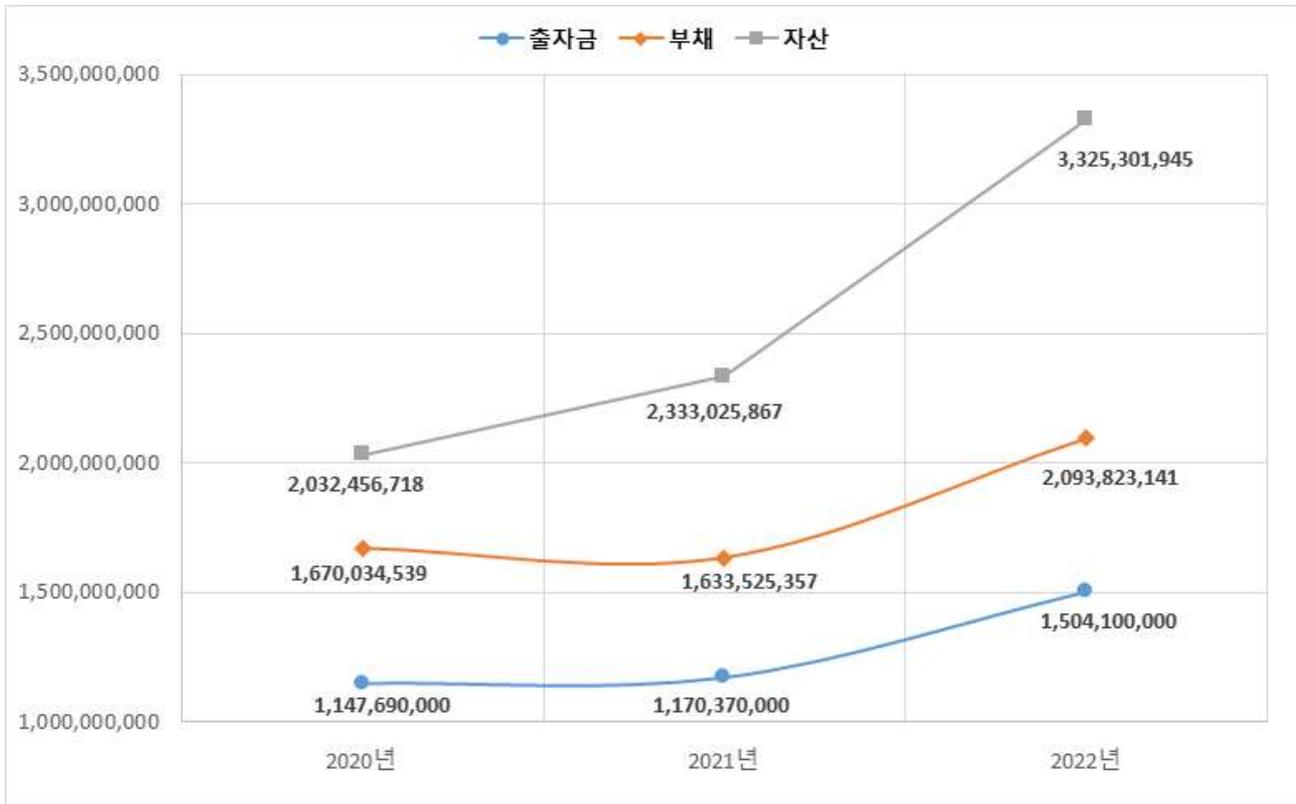
앞으로 어떤 일이라도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게 했던 한 해로, 계묘년 올해도 경영 합리화를 이루겠습니다.

2 자산 / 부채 / 출자금 현황

1) 자산 / 부채 / 출자금 3개년간 내역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자산(원)	2,032,456,718	2,333,025,867	3,325,301,945
부채(원)	1,670,034,539	1,633,525,357	2,093,823,141
출자금(원)	1,147,690,000	1,170,370,000	1,504,100,000

2) 자산 / 부채 / 출자금 3개년간 변동 추이



3. 주요 결산 실적

1) 예산 대비 부서별 매출 / 손익 실적

구 분	2022년도 실적(원)		2022년도 예산(원)		실적율	
	매 출	손 익	매 출	손 익	매 출	손 익
누 계	3,609,818,771	198,248,294	3,444,054,282	62,752,849	105%	316%
의 원/검 진	2,188,593,151	592,029,865	2,170,918,865	545,873,965	101%	108%
한 의 원	261,191,170	2,567,119	238,283,716	-20,265,596	110%	890%
치 과	486,308,810	26,805,464	580,000,000	93,994,191	84%	29%
지 역 사 회 의 료 센 터	655,987,200	148,352,936	450,000,000	113,031,010	146%	131%
주 민 참 여 건강증진센터 + 조합사업부	9,142,980	-120,847,949	2,051,701	-145,783,003	446%	83%
주간보호센터		-156,581,415		-144,100,000		109%
경영지원실	8,595,460	-294,077,726	2,800,000	-379,997,718	307%	77%

2) 2022년 예산 대비 손익계산서

구분		2022년 예산(원)	2022년 결산(원)	예산 대비	총액 대비
수입총계		3,470,694,282	3,711,671,866	106.94%	100.00%
사업 수익	의료기관수입	2,989,202,581	2,936,093,131	98.22%	79.10%
	주민참여건강증진센터 + 조합사업부	2,051,701	9,142,980	445.63%	0.25%
	지역사회의료센터	450,000,000	655,987,200	145.77%	17.67%
	경영지원실	2,800,000	8,595,460	306.98%	0.23%
사업외 수입	정부지원 및 보조금	20,000,000	67,182,818	335.91%	1.81%
	후원금	5,000,000	31,441,204	628.82%	0.85%
	기타	1,640,000	3,229,073	196.89%	0.09%
지출총계		3,407,941,433	3,513,423,572	103.10%	100.00%
사업비		50,107,000	34,378,638	68.61%	0.98%
판관비		3,314,849,305	3,417,443,468	103.09%	97.27%
사업외비용		42,985,128	59,752,196	139.01%	1.70%
법인세등			1,849,270		0.05%
손익합계		62,752,849	198,248,294	315.92%	

4. 자본 결산

1) 자본조성계획과 현황

분 류	항 목	예상 금액(원)	집행 현황(원)
출자금	신입조합원	12,500,000	15,500,000
	조합원증자운동	137,500,000	433,507,345
	조합원감좌&탈퇴	120,000,000	114,379,500
	소계	30,000,000	334,627,845
기 조성 미사용 자본금 (전년도에서 이월)		1,054,805,414	1,054,805,414
합 계		1,084,805,414	1,389,433,259

2) 운용 계획과 집행현황

구 분	기관	품 명	예상금액(원)	집행 현황(원)
토지	주간보호센터	주간보호센터(럭키스포츠포지) 토지 매입		131,111,522
건물	주간보호센터	주간보호센터(럭키스포츠포지) 건물 매입		384,055,215
의료기기	의원	원심분리기		385,000
	치과	파노라마(전산화 단층촬영장치)		27,000,000
		진료실 채어 3대		20,790,000
	의료기기 소계			
시설장치	치과	파우더룸 리모델링		1,045,000
	주간보호센터	주방설치		5,940,000
		실내사인물		5,830,000
	주민참여 건강증진센터	럭키스포츠포지 5층 칸막이 및 전기공사		10,780,000
	경영지원실	주간보호센터 인테리어설계		11,880,000
		주간보호센터 리모델링		350,000,000
		주간보호센터 케이블포설 및 계량기설치		9,873,600
		주간보호센터 정보통신 설치		6,270,000
		주간보호센터 도시가스 시공		8,778,000
	시설장치 소계			
비품	주민참여 건강증진센터	의자30개		1,782,000
		럭키스포츠포지 5층 바닥매트		2,475,000
		냉난방기(스탠드1,벽걸이3)		4,455,600
		책장,온풍기2대,냉장고		1,366,030
	주간보호센터	알렉시아 근력운동기구 12대		20,550,000
		원적외선 편백사우나		8,635,000
		후레쉬덴트(틀니살균세척기)		3,278,000
		S-폴링 15대		20,000,000
		사무용가구		2,200,000
		활동 테이블, 의자		7,997,000
		주방 집기		4,912,820
	경영지원실	주간보호센터 가전, 노래방기계		1,509,490
		주간보호센터 세탁기, 건조기		1,855,940
		주간보호센터 컴퓨터일체		2,014,490
		주간보호센터 두타매트		2,100,000
		네트워크서버장비	2,000,000	1,302,600
	비품 소계			2,000,000

구 분	기관	품 명	예산금액(원)	집행 현황(원)
소프트웨어	경영지원실	회계/재고관리 프로그램	8,000,000	
		조합원관리 프로그램 개발	20,000,000	
		POS 업그레이드	15,000,000	
	소프트웨어 소계		43,000,000	
차입금 상환	금융권 및 조합원 차입금 일부 상환		144,960,000	193,223,934
사업준비금	운영예비비		894,845,414	651,203,755
합 계			1,084,805,414	1,389,433,259

5. 재무상태표

1) 통합 재무상태표

과목	제20(당)기		제19(전)기	
	금액		금액	
자 산				
I.유 동 자 산		712,730,800		688,684,156
(1)당 좌 자 산		671,768,042		641,040,875
현 통 예 금		70,550		274,222
보 통 예 금	170,836,275		259,355,806	
기 금 사 업 비 (차 감)	55,151,914	115,684,361	52,917,860	206,437,946
기 타 제 예 금		60,000,000		60,000,000
정 기 예 . 적 금		60,000,000		24,000,000
단 기 대 여 금		0		27,000,000
미 수 수 익		2,052,850		1,566,000
미 수 금		351,110,015		301,806,250
선 급 금		73,585,726		12,861,170
선 급 비 용		4,549,210		2,139,507
선 납 세 금		315,330		417,560
전 도 금		0		138,220
장 기 선 급		4,400,000		4,400,000
(2)재 고 자 산		40,962,758		47,643,281
의 약 품		19,681,287		26,136,577
의 료 소 모 품		21,281,471		21,506,704
II.비 유 동 자 산		2,612,571,145		1,644,341,711
(1)투 자 자 산		65,728,052		66,194,882
출 자 금		65,728,052		66,194,882
(2)유 형 자 산		2,414,790,584		1,482,525,312
토 지		871,788,445		740,676,923
건 물	846,978,292		462,923,077	
감 가 상 각 누 계 액	88,374,276	758,604,016	70,402,879	392,520,198
의 료 기 계	472,568,500		470,725,850	
감 가 상 각 누 계 액	327,355,676	145,212,824	322,481,081	148,244,769
시 설 장 치	730,338,290		319,941,690	
감 가 상 각 누 계 액	189,129,983	541,208,307	138,225,709	181,715,981
비 품	128,546,200		42,112,230	
감 가 상 각 누 계 액	30,569,208	97,976,992	22,744,789	19,367,441
(3)무 형 자 산		5,960,509		11,721,517
소 프 트 웨 어		5,960,509		11,721,517
(4)기 타 비 유 동 자 산		126,092,000		83,900,000
임 차 보 증 금		125,192,000		83,000,000
기 타 보 증 금		900,000		900,000
자 산 총 계		3,325,301,945		2,333,025,867

부 채				
I. 유 동 부 채			845,666,650	777,592,807
외 상 매 입 금		109,506,520		21,579,756
미 지 급 금		267,989,062		132,991,015
예 수 금		116,621,895		104,181,210
부 가 세 예 수 금		217,267		27,270
당 좌 차 월		269,504,826		268,365,681
단 기 차 입 금		80,000,000		105,000,000
미 지 급 세 금		1,827,080		0
유 동 성 장 기 부 채		0		145,447,875
II. 비 유 동 부 채			1,248,156,491	855,932,550
장 기 차 입 금		1,248,156,491		855,932,550
부 채 총 계			2,093,823,141	1,633,525,357
자 본				
I. 자 본 금			1,504,100,000	1,170,370,000
출 자 금		1,504,100,000		1,170,370,000
II. 자 본 잉 여 금			0	0
III. 자 본 조 정			0	0
IV. 기타 포괄손익누계액			0	0
V. 결 손 금			272,621,196	470,869,490
미 처 리 결 손 금		272,621,196		470,869,490
(당 기 순 이 익)				
당기: 198,248,294원				
전기: 330,007,861원				
자 본 총 계			1,231,478,804	699,500,510
부 채 및 자 본 총 계			3,325,301,945	2,333,025,867

6. 손익계산서

1) 통합 손익계산서

과 목	제20(당)기		제19(전)기	
	금액		금액	
I.매 출 액		3,609,818,771		3,288,394,516
임 대 료 수 입	8,245,460		2,545,460	
의 원 수 입 금	2,157,824,247		1,838,462,546	
한 의 원 수 입 금	261,191,170		214,670,014	
치 과 수 입 금	486,308,810		577,337,340	
검 진 센 터 수 입 금	693,971,074		654,899,416	
조 합 본 부 수 입 금	2,278,010		479,740	
II.매 출 원 가		326,951,994		280,583,277
의 약 품 매 출 원 가		217,882,448		174,526,457
기 초 의 약 품 재 고 액	26,136,577		17,623,239	
당 기 의 약 품 매 입 액	211,427,158		183,039,795	
기 말 의 약 품 재 고 액	19,681,287		26,136,577	
의 료 소 모 품 매 출 원 가		109,069,546		106,056,820
기 초 의 료 소 모 품 재 고 액	21,506,704		18,494,554	
당 기 의 료 소 모 품 매 입 액	108,844,313		109,068,970	
기 말 의 료 소 모 품 재 고 액	21,281,471		21,506,704	
III.매 출 총 이 익		3,282,866,777		3,007,811,239
IV.판 매 비 와 관 리 비		3,124,870,112		2,741,515,758
직 원 급 여	2,094,822,135		1,950,587,105	
(인 건 비 지 원 금)	70,701,440		178,262,328	
잡 급	3,607,744		840,000	
퇴 직 급 여	144,521,160		141,983,085	
복 리 후 생 비	202,179,592		183,565,224	
여 비 교 통 비	12,354,409		5,841,705	
통 신 비	7,326,876		9,496,962	
수 도 광 열 비	3,152,490		2,295,918	
전 력 비	19,019,816		17,980,774	
세 금 과 공 과 금	62,438,060		86,022,340	
감 가 상 각 비	127,904,035		100,322,098	
지 급 임 차 료	50,624,243		44,608,060	
수 선 비	42,502,200		6,887,720	
보 험 료	45,206,817		47,933,353	
(보 험 료 지 원 금)	6,009,760		11,978,298	
운 반 비	2,238,700		884,400	
교 육 훈 련 비	2,639,875		6,370,500	
도 서 인 쇄 비	2,904,000		2,333,900	
회 의 비	4,333,880		5,222,971	

과 목	제20(당)기		제19(전)기	
	금액		금액	
소 모 품 비	29,693,213		17,593,404	
지 급 수 수 료	249,473,737		222,624,553	
광 고 선 전 비	180,000		0	
건 물 관 리 비	7,050,420		3,638,180	
협 회 비	13,048,600		13,344,900	
무 형 고 정 자 산 상 각	5,761,008		6,327,407	
연 대 활 동 비	6,317,000		3,486,400	
조 직 활 동 비	9,374,040		4,461,050	
철 거 비 등	0		1,100,000	
기 금 사 업 비	131,500,102		236,023,026	
(기 금 사 업 비 지원 금)	131,500,102		236,023,026	
홍 보 활 동 비	11,713,843		1,496,465	
인 적 용 역 비	14,099,050		48,855,120	
(인 적 용 역 비 지원금)	8,569,750		45,308,350	
보 건 예 방 사 업 비	0		1,079,830	
조 합 원 건 강 지원 비	33,038,589		29,227,080	
취 약 건 강 지원 비	2,625,530		10,654,230	
기 부 금 사 업 비	36,045,946		37,499,860	
(기 부 금 사 업 지원 금)	36,045,946		37,499,860	
V . 영 업 이 익		157,996,665		266,295,481
VI. 영 업 외 수 익		101,853,095		119,563,340
이 자 수 익	977,237		2,039,546	
정 부 지원 및 보 조 금	67,182,818		91,515,760	
기 부 금 수 입	31,441,204		19,873,824	
잡 이 익	2,251,836		6,134,210	
VII. 영 업 외 비 용		59,752,196		55,850,960
이 자 비 용	55,432,458		43,123,937	
무 형 자 산 처 분 손 실	0		833,334	
보 상 비	1,174,070		6,000,000	
유 형 자 산 처 분 손 실	3,000		5,403,842	
잡 손 실	3,142,668		489,847	
VIII. 법 인 세 차 감 전 이 익		200,097,564		330,007,861
IX . 법 인 세 등		1,849,270		0
법 인 세 등	1,849,270		0	
X . 당 기 순 이 익		198,248,294		330,007,864

7. 부서별 손익계산서

1) 의료기관, 주간보호센터, 경영지원실

계정과목	의원·검진	한의원	치과	지역사회 의료센터	주간보호센터	경영지원실
I . 매 출 액	2,188,593,151	261,191,170	486,308,810	655,987,200		8,595,460
II . 매 출 원 가	172,654,788	42,777,855	51,044,401	60,474,950		
III . 매 출 총 이 익	2,015,938,363	218,413,315	435,264,409	595,512,250		8,595,460
IV . 판 매 비 와 관 리 비	1,426,019,557	214,357,324	408,443,647	452,370,948	156,484,220	304,244,385
직 원 급 여 (인 건 비 지 원 금)	966,491,010	149,140,700	275,848,345	344,959,480	47,188,340	132,958,010
잡 퇴 직 급 여	634,190				2,973,554	
복 리 후 생 비	61,963,140	9,438,990	18,787,500	27,340,400	3,932,280	11,167,550
여 비 교 통 비	92,412,524	20,167,480	19,830,510	19,918,598	2,257,740	34,713,050
통 신 비	47,400			6,718,198	675,000	2,621,931
수 도 광 열 비	2,762,550	404,944	598,175	613,560	336,820	1,990,297
전 력 비	831,810	496,070	409,330	252,100	396,000	340,060
세 금 과 공 과 금	7,341,310	3,124,519	3,545,929	367,593	143,696	4,077,842
감 가 상 각 비	24,860,290	5,192,820	7,777,740	9,863,930	1,309,500	8,983,820
지 급 임 차 료	74,485,934	10,623,009	9,195,559		1,322,377	31,195,222
수 선 비	26,400,000		13,200,000		3,324,243	5,500,000
보 험 료	423,000		110,000		41,943,700	25,500
(보 험 료 지 원 금)	15,366,910	3,175,520	4,856,940	5,029,780	748,030	7,808,627
운 반 비	290,400	720,600			247,500	973,560
교 육 훈 련 비	1,069,875	130,000	480,000	502,000		360,000
도 서 인 쇄 비		156,000	236,000		261,000	1,593,000
회 의 비	1,968,000	303,760	430,550	367,050	39,000	425,150
소 모 품 비	11,107,230	2,243,083	1,817,050	35,100	6,490,920	6,530,250
지 급 수 수 료	111,878,557	4,571,029	43,055,519	36,278,459	29,068,700	24,147,363
광 고 선 전 비					180,000	
건 물 관 리 비	1,584,000		480,000		4,121,220	682,570
협 회 비						13,048,600
무 형 고 정 자 산 상 각	420,608	270,000				5,070,400
연 대 활 동 비				124,700	170,000	6,004,800
조 직 활 동 비						1,417,540
기 금 사 업 비 (기 금 사 업 비 지 원 금)						
홍 보 활 동 비					9,354,600	2,359,243
인 적 용 역 비 (인 적 용 역 비 지 원 금)						250,000
조 합 원 건 강 지 원 비	21,202,189	4,176,300	7,660,100			
취 약 건 강 지 원 비	2,478,630	22,500	124,400			
기 부 금 사 업 비 (기 부 금 사 업 비 지 원 금)	95,330					14,963,630
	95,330					14,963,630
V . 영 업 이 익	589,918,806	4,055,991	26,820,762	143,141,302	-156,484,220	-295,648,925
VI . 영 업 외 수 익	2,121,428	53,148	276,077	5,211,634	2,005	61,217,872
이 자 수 익	71,282	17,575	55,813	5,256	5	787,697
정 부 지 원 및 보 조 금	1,600,000			5,206,378		31,876,440
기 부 금 수 입	100,000					26,912,214
잡 이 익	350,146	35,573	220,264		2,000	1,641,521
VII . 영 업 외 비 용	10,369	1,542,020	291,375		99,200	57,797,403
이 자 비 용			287,055			55,145,403
보 상 비					99,200	1,074,870
유 형 자 산 처 분 손 실			3,000			
잡 손 실	10,369	1,542,020	1,320			1,577,130
VIII . 법 인 세 차 감 전 이 익	592,029,865	2,567,119	26,805,464	148,352,936	-156,581,415	-292,228,456
IX . 법 인 세						1,849,270
당 기 순 이 익	592,029,865	2,567,119	26,805,464	148,352,936	-156,581,415	-294,077,726

2) 주민참여건강증진센터, 조합사업부, 프로젝트사업

계정과목	주민참여 건강증진센터	조합사업부	산자부 (비R&D)	산자부 (R&D)	경증치매어르신 웰라이프돌봄	퇴원환자 돌봄서비스
I . 매 출 액	9,142,980					
II . 매 출 원 가						
III . 매 출 총 이 익	9,142,980					
IV . 판 매 비 와 관 리 비	109,182,654	53,767,377				
직 원 급 여 (인 건 비 지 원 금)	75,666,390	36,177,500	54,164,960 57,794,740	12,227,400 12,906,700		
잡 퇴 직 급 여	5,468,410	2,793,110	3,629,780			
복 리 후 생 비	10,763,260	2,116,430				
여 비 교 통 비	1,836,580	455,300				
통 신 비	620,530					
수 도 광 열 비	427,120					
전 력 비	414,450	4,477				
세 금 과 공 과 금	2,782,040	1,667,920				
감 가 상 각 비	1,081,934					
지 급 임 차 료	2,200,000					
수 보 선 험 비 료 (보 험 료 지 원 금)	1,559,980	651,270	5,381,120 5,381,120	628,640 628,640		
운 반 비	6,640					
교 육 훈 련 비	68,000					
도 서 인 쇄 비	163,000	495,000				
회 의 비	381,600	406,070				
소 모 품 비	1,443,280	26,300				
지 급 수 수 료	486,810					
광 고 선 전 비						
건 물 관 리 비	182,630					
협 회						
무 형 고 정 자 산 상 각 연 대 활 동 비		17,500				
조 직 활 동 비		7,956,500				
기 금 사 업 비 (기 금 사 업 비 지 원 금)			55,616,484 55,616,484	1,850,300 1,850,300	49,500,000 49,500,000	18,460,000 18,460,000
홍 보 활 동 비 인 적 용 역 비 (인 적 용 역 비 지 원 금)	3,600,000	1,000,000	5,850,450 5,850,450	1,358,600 679,300	500,000 500,000	1,540,000 1,540,000
조 합 원 건 강 지 원 비						
취 약 건 강 지 원 비						
기 부 금 사 업 비 (기 부 금 사 업 비 지 원 금)	5,871,330 5,871,330	15,115,656 15,115,656				
V . 영 업 이 익	-100,039,674	-53,767,377				
VI . 영 업 외 수 익	32,792,771	178,160				
이 자 수 익	39,609					
정 부 지 원 및 보 조 금	28,500,000					
기 부 금 수 입	4,250,830	178,160				
잡 이 익	2,332					
VII . 영 업 외 비 용	11,829					
이 자 비 용						
보 상 비						
유 형 자 산 처 분 손 실						
잡 손 실	11,829					
VIII . 법 인 세 차 감 전 이 익	-67,258,732	-53,589,217				
IX . 법 인 세						
당 기 순 이 익	-67,258,732	-53,589,217				

8. 예산대비 집행계산서

관	항	목	2022년 예산	2022년 결산	예산대비	총액대비
수입총계			3,470,694,282	3,711,671,866	106.94%	100.00%
수입	사업 수익	의원, 건강검진센터	2,170,918,865	2,188,593,151	100.81%	58.97%
		한의원	238,283,716	261,191,170	109.61%	7.04%
		치과	580,000,000	486,308,810	83.85%	13.10%
		지역사회의료센터	450,000,000	655,987,200	145.77%	17.67%
		주민참여건강증진센터 + 조합사업부	2,051,701	9,142,980	445.63%	0.25%
		경영지원실	2,800,000	8,595,460	306.98%	0.23%
		사업수입 합계	3,444,054,282	3,609,818,771	104.81%	97.26%
	사업외 수익	이자수익	1,260,000	977,237	77.56%	0.03%
		정부지원및보조금	20,000,000	67,182,818	335.91%	1.81%
		기부금 수입	5,000,000	31,441,204	628.82%	0.85%
		잡이익	380,000	2,251,836	592.59%	0.06%
사업외수입 합계		26,640,000	101,853,095	382.33%	2.74%	
지출총계			3,407,941,433	3,513,423,572	103.10%	100.00%
지출	사업비	교육훈련비	9,805,000	2,639,875	26.92%	0.08%
		회의비	12,340,000	4,333,880	35.12%	0.12%
		연대활동비	7,400,000	6,317,000	85.36%	0.18%
		조직활동비	11,700,000	9,374,040	80.12%	0.27%
		홍보활동비	7,682,000	11,713,843	152.48%	0.33%
		보건예방사업비	1,180,000		0.00%	0.00%
		사업비 합계	50,107,000	34,378,638	68.61%	0.98%
	판매 관리비	의약품비등(재고반영)	293,490,454	326,951,994	111.40%	9.31%
		직원급여	1,894,520,000	2,024,120,695	106.84%	57.61%
		잡급		3,607,744		0.10%
		퇴직급여	195,540,000	144,521,160	73.91%	4.11%
		복리후생비	222,642,334	202,179,592	90.81%	5.75%
		여비교통비	5,400,000	12,354,409	228.79%	0.35%
		통신비	11,600,000	7,326,876	63.16%	0.21%
		수도광열비	2,593,223	3,152,490	121.57%	0.09%

관	항	목	2022년 예산	2022년 결산	예산대비	총액대비
		전력비	21,424,716	19,019,816	88.78%	0.54%
		세금과공과금	60,471,250	62,438,060	103.25%	1.78%
		감각상각비	109,322,098	127,904,035	117.00%	3.64%
		지급임차료	41,250,000	50,624,243	122.73%	1.44%
		수선비	3,500,000	42,502,200	1214.35%	1.21%
		보험료	43,646,350	39,197,057	89.81%	1.12%
		운반비	720,000	2,238,700	310.93%	0.06%
		도서인쇄비	2,362,000	2,904,000	122.95%	0.08%
		소모품비	19,626,000	29,693,213	151.30%	0.85%
		지급수수료	253,400,000	249,473,737	98.45%	7.10%
		광고선전비		180,000		0.01%
		건물관리비	1,831,120	7,050,420	385.03%	0.20%
		협회비	10,648,600	13,048,600	122.54%	0.37%
		무형고정자산상각	12,060,740	5,761,008	47.77%	0.16%
		인적용역비		5,529,300		0.16%
		조합원건강지원비	32,640,114	33,038,589	101.22%	0.94%
		취약건강지원비	13,650,760	2,625,530	19.23%	0.07%
		기부금사업비	39,000,000	36,045,946	92.43%	1.03%
		기부금사업비지원금		-36,045,946		-1.03%
		예비비	23,500,000			
		판관비 합계	3,314,839,759	3,417,443,468	103.10%	97.27%
사업외 비용	이자비용	42,994,674	55,432,458	128.93%	1.58%	
	보상비		1,174,070		0.03%	
	유형자산처분손실		3,000		0.00%	
	잡손실		3,142,668		0.09%	
	사업외비용 합계	42,994,674	59,752,196	138.98%	1.70%	
	법인세등		1,849,270		0.05%	
연간손익합계			62,752,849	198,248,294	315.92%	

●● 협동조합의 정의

협동조합(Co-operative)이란, 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관리하는 사업체를 통하여 공통의 경제·사회·문화의 요구와 열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자발적으로 결합된 사람들의 자치적인 협동조직이다.

[국제협동조합연맹(International Cooperative Alliance)]

●● 협동조합 7원칙

1. 제 1원칙: 자발적이고 개방된 조합원 제도
2. 제 2원칙: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관리
3. 제 3원칙: 조합원의 경제적 참여
4. 제 4원칙: 자율과 독립
5. 제 5원칙: 교육, 훈련 및 정보제공
6. 제 6원칙: 협동조합간 협동
7. 제 7원칙: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 민들레 3원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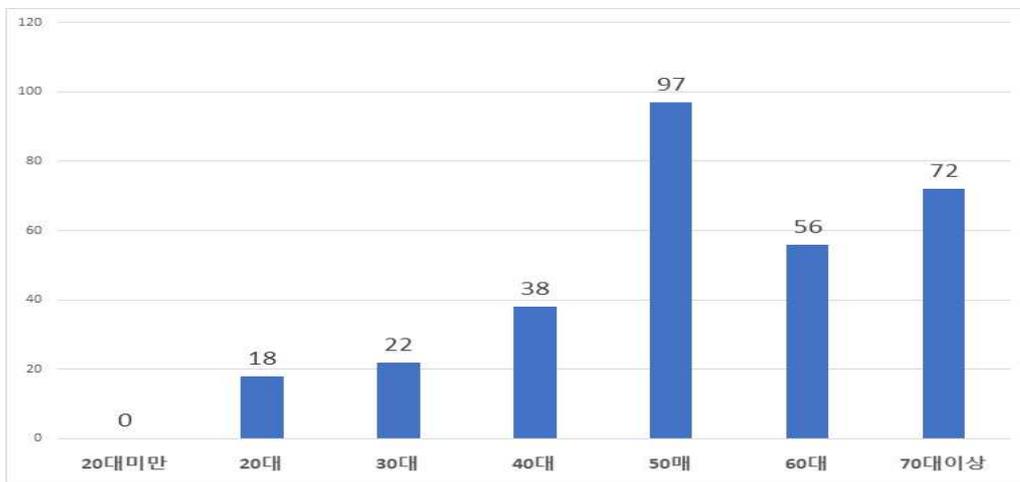
8. 제 8원칙: 걱정진료, 걱정서비스의 원칙
9. 제 9원칙: 노동자 주권의 원칙
10. 제 10원칙: 약자우선

1. 제1원칙 : 자발적이고 개방된 조합원제도

“협동조합은 자발적인 조직으로서, 협동조합을 이용할 수 있고 조합원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며 성(性), 사회적 신분, 인종, 정파, 종교에 따른 차별을 두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개방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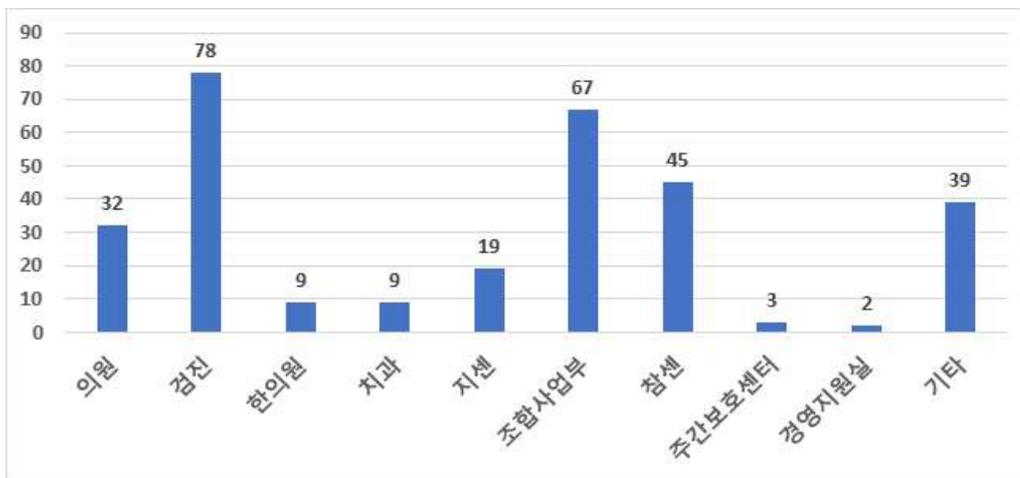
1) 2022년 신규 가입조합원 현황: 연령별

구분	20대 미만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이상	계
총계(명)	-	18	22	38	97	56	72	303
비율(%)	-	5.9	7.3	12.5	32	18.5	23.8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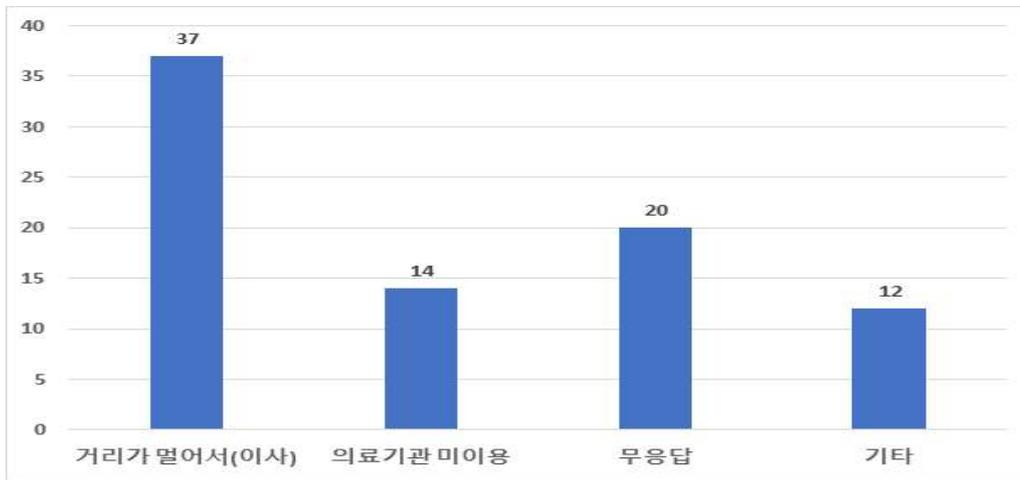
2) 2022년 신규조합원 가입경로

구분	의원	검진	한의원	치과	지센	조합사업부	참센	주간보호센터	경영지원실	기타	계
조합원(명)	32	78	9	9	19	67	45	3	2	39	303
점유율(%)	10.6	25.7	3	3	6.2	22.1	14.9	0.9	0.7	12.9	100



3) 2022년 탈퇴조합원 탈퇴 현황: 가입기간, 탈퇴사유별

가입기간	거리가 멀어서(이사)	의료기관 미이용	무응답	기타	총계
총계	37	14	20	12	83
10년 이상	13	8	8	2	31
5년 이상 10년 미만	15	3	6	4	28
2년 이상 5년 미만	5	1	3	2	11
2년 미만	4	2	3	4	13



2. 제2원칙 :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인 관리

“협동조합은 조합원에 의해서 관리되는 민주적인 조직으로서 조합원은 정책수립과 의사결정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선출된 임원들은 조합원에게 책임을 지고 봉사한다. 조합원들은 동등한 투표권(1인 1표)를 가지며 다른 연합단계의 협동조합도 민주적인 방식에 따라 관리된다.”

1) 총회 및 이사회 개최 현황

구분	참여대상	개최횟수	평균참석률
총회	조합원(대의원)	1회	80.1%
이사회	임원	12회	69.8%
사업감사 / 회계감사	경영지원실 조합사업부	각 2회	

2) 이사회 활동 실적

구분	실적	비고
5대지표 관련	조합원 가입 권유	17명
	스스로조합비 회원 가입 권유	-
개최 관련	정기 이사회 개최 횟수	12회
	참석 이사 수	평균 9명
안건 처리 관련	총 처리 안건 수	41건
	가결 안건 수	38건
	부결 안건 수	3건
	만장일치 처리 안건 수	37건
	부분 동의 처리 안건 수	1건

3) 위원회 활동 실적

의사 결정기구	전체 구성원	회의 일자	사외 이사(명)	사내 이사(명)	근로자 인사(명)	조합원 (명)	총 참여 인원(명)
총회준비 위원회	13	2022.01.18	2	2	3	2	9
	13	2022.02.08	2	2	3	1	8
	13	2022.02.17	2	2	3	1	8
합계			6	6	9	4	25
참가비율(%)			64.1				

의사 결정기구	전체 구성원	회의 일자	사외이사(명)	사내이사(명)	근로자 인사(명)	총 참여 인원(명)
노사협의회 (임직원협의회)	6	2022.01.17	1	1	2	4
	6	2022.06.30	1	-	4	5
	6	2022.09.29	1	1	4	6
	6	2022.12.29	1	1	4	6
합계			4	3	14	21
참가비율(%)			87.5			

의사 결정기구	전체 구성원	회의 일자	조합원	근로자 인사(명)	총 참여 인원(명)
선거관리위원회	4	2022.11.22	2	1	3
	4	2022.11.28	2	2	4
	4	2022.12.13	2	1	3
	4	2022.12.21	2	1	3
합계			8	5	13
참가비율(%)			81.2		

3. 제3원칙 : 조합원에 의한 경제적 관리

“조합원은 협동조합의 자본조달에 공평하게 기여하며 자본을 민주적으로 관리한다. 최소한 자본금의 일부는 조합의 공동재산으로 한다.

1) 출자금 현황 (2022.12.31. 기준, 출자예치금 포함)

총액(원)	증가액(원)	감소액(원)	증감액(원)	1인당 출자액(원)
1,510,182,095	449,007,345	114,379,500	334,627,845	343,067

2) 출자금액 분포 현황 (2022.12.31. 기준, 출자예치금 포함)

구분	1만원	10만원 미만	50만원 미만	100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	총계
조합원 수 (명)	29	2,736	1,259	127	251	4,402
금액(원)	290,000	149,074,126	190,650,774	85,108,755	1,085,058,440	1,510,182,095

3) 조합원 의료기관 이용현황

구분	계	의원	검진	한의원	치과
총 이용 금액 (원)	3,186,610,586	1,736,869,875	690,871,751	265,106,940	493,762,020
조합원 이용 금액(원)	1,132,779,919	403,191,295	382,980,994	135,405,950	211,201,680
이용율(%)	35.5	23.2	55.4	51	42.7

4) 의료기관 이용 조합원 출자금 적립액

구분	계	의원	검진	한의원	치과	비고
총 대상자 (명)	805	103	320	123	259	
적립액 (원)	10,302,345	390,350	1,329,345	1,804,300	6,778,350	

4. 제4원칙 : 자율과 독립

“협동조합은 조합원에 의해 관리되는 자율적이고 자조적인 조직이다. 협동조합이 정부 등 다른 조직과 약정을 맺거나 외부로부터 자본을 조달하고자 할 때에는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인 관리가 보장되고 협동조합의 자율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1) 프로젝트 사업비

프로젝트명	사업비(원)	기관
2022년 사회적경제혁신성장사업 NON R&D 지역화폐플랫폼 기반의 지역사회통합돌봄을 통한 사회적경제 성장	149,000,000	전담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주관기관: 사회적경제연구권사회적협동조합
2022년 사회서비스분야 사회적경제육성·지원사업 경증치매어르신 웰라이프 헬스케어서비스	50,000,000	대표기관: 민들레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구성기관: 건강리더협동조합, 대덕돌봄협동조합, (유)행복한밥상
2022년 지역사회통합돌봄 시범사업 -퇴원환자돌봄서비스	12,690,000	대표기관: 민들레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구성기관: 건강리더협동조합, (유)행복한밥상 대덕돌봄협동조합
계	211,690,000	

2) 정부지원금 수급

단체명	사업비(원)	사용처
대전고용노동청	27,406,440	고용부출산육아지원금 - 2명
배제대ICT융합새일센터	1,600,000	인턴십 지원금 - 1명
산업통상자원부	21,500,000	2022년 사회적경제혁신성장사업 NON R&D 간접비
계	50,506,440	

5. 제5원칙 : 교육 . 훈련 및 정보제공

“협동조합은 조합원, 선출된 임원, 경영자, 직원들이 협동조합의 발전에 효과적으로 기여하도록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협동조합은 일반대중 특히 젊은 세대와 여론지도층에게 협동의 본질과 장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 건강리더 교육과정

- 목적 : 스스로 자기 건강을 돌보며 이웃과 함께 건강 관련 문제를 해결하고자 역할과 관계를 촉진하는 사람으로 건강반을 운영하며 지역사회 건강자치력 향상

구분	일정	수료자	인원
18기	2022년 5월24일 ~ 6월28일 6회차	곽■자, 김■선, 김■혜, 김■정, 박■진, 박■훈, 백■현, 서■영, 송■선, 신■순, 이■선, 이■옥, 장■주, 정■자	14
19기	2022년 5월26일 ~ 6월30일 6회차	권■미, 김■영, 노■희, 도■정, 박■란, 서■자, 송■호, 신■경, 심■남, 오■경, 유■경, 윤■현, 이■화, 이■경, 이■이, 임■국, 장■중, 전■훈, 정■경, 정■영	20

2) 임원

2) 홍보채널

- 목적 : 민들레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의 활동 공유 및 정보제공

오프라인	조합 소식지, 의료기관 부착 안내문, 의료기관 모니터 등
온라인	홈페이지(공식), 페이스북페이지(주요공지), 네이버 밴드(커뮤니티: 조합원, 직원 등), 카카오톡 채널(모바일소식지, 카드뉴스, 웹자보 등)

6. 제6원칙 : 협동조합 간 협동

“협동조합은 지역 및 전국단위, 그리고 인접국간 및 국제적으로 함께 일함으로써 조합원에게 가장 효과적으로 봉사하고 협동조합운동을 강화한다.”

1) 우리조합의 외부 타 조합 출자

연번	단체명	출자액	비고
1	대덕품앗이 협동조합	3,000,000	
2	사회연대신협	500,000	
3	사회적협동조합 품앗이마을	3,000,000	
4	사회혁신연구소협동조합	1,000,000	
5	새마을금고	50,620	
6	신협협동조합	105,432	
7	전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11,000,000	
8	지역화폐협동조합	2,000,000	
9	치유공간 마음의숲사회적협동조합	4,000,000	
10	품앗이소비자생활협동조합	35,000,000	
11	하니쿰협동조합	100,000	
12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5,592,000	
13	한밭사회적협동조합	300,000	
14	한밭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	50,000	
15	한살림대전생활협동조합	30,000	
총 출자액		65,728,052	

2) 우리조합의 외부 타 단체 등 회비 납부

연번	단체명	금액	비고
1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9,808,600	
2	한밭사회적협동조합	120,000	
3	(사)대전광역시사회적기업협의회	600,000	
4	한국사회적의료기관연합회	2,520,000	
총 금액		13,048,600	

3) 우리조합 단체 조합원

연번	단체명	출자금	비고
1	사회적경제연구원	1,000,000	
2	사회적협동조합 품앗이마을	3,000,000	
3	아이쿱대전	5,000,000	
4	품앗이생협	2,000,000	
5	한밭생협	10,000,000	
6	한살림대전	20,000,000	
7	전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11,000,000	
총 금액		52,000,000	

7. 제7원칙 :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협동조합은 조합원의 의사에 따라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력한다.”

■ 지역사회 건강 네트워크 구축

구분	내용	비고
인증·지정	아동, 여성 안전 협력병원	대전광역시
	여성친화기업	대전광역시
	대전 정신건강 마음이음 협력기관 지정	대전광역시
업무협약	경증치매어르신 웰라이프 돌봄서비스 업무협약	대덕구청, 대덕구지역자활센터 대덕돌봄협동조합, (유)행복한밥상
	지역사회복지 네트워크 협약	대덕구정신건강복지센터, 종리종합사회복지관 대덕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대덕구치매안심센터 대전·세종금연지원센터, 법1동 행정복지센터 종리동 행정복지센터
	통합돌봄체계 업무협약	조인케어매니저협동조합, 대덕사랑노인복지센터 대전가톨릭노인복지센터, 밝은미래장기요양센터 지역주민과함께사회적협동조합, 장애인돌봄센터
	간호학과 현장실습 협약	상명대학교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업무협약	대덕구청
건강검진협약	유성구청	직장인 검진
	대덕구청	직장인 검진
	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	조합원
	청소년 일시보호센터	학교 밖 청소년 검진
	초, 중, 고교	학생검진

3) 지역화폐 거래 실적

○ 목적 : 민들레 의료기관에서 진료비 일부를 지역화폐로 결제받고, 민들레 임직원의 조합활동에 대하여 지역화폐 두루를 지급함으로써, 지역화폐 통용 활성화에 기여한다.

○ 화폐명 : 지역품앗이 한발레츠 '두루'

○ 거래실적

- 수입

구분	건수	수입액(두루)	건수비율(%)	액수비율(%)
의 원	514	3,385,890	55.7	21.5
검진센터	64	1,186,127	6.9	7.6
한의원	150	3,118,100	16.3	19.8
치 과	194	8,041,950	21.1	51.1
합 계	922	15,732,067	100	100

- 지출

구 분	건 수	지출액(두루)	건수 비율(%)	액수 비율(%)
조합행사/교육 참여	150	750,000	19.8	4.9
이사회 참석	102	2,040,000	13.6	13.2
직원 지급	503	12,609,000	66.6	81.9
합 계	755	15,399,000	100	100

4) 건강화폐 발행

○ 화폐명 : '조각'

○ 목적 : 조합원 및 지역주민의 건강자치력 향상을 위한 건강증진 활동 촉진

○ 방법 : 건강증진 질병예방 활동에 따른 조각 지급

○ 실적

총 지급건수	총 지급액(원)	지급 인원수(명)	신규발행 통장수
478	4,916,000	160	160

8. 제8원칙 : 적정진료, 적정서비스의 원칙

“과잉진료를 경계하되 우리사회 현재수준의 진료와,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 1) 의료기관 적정운영 평가 결과(다음에 검토 필요)
 - 당뇨병, 천식 적정성 양호기관 선정(2021.04.27.)
 - 평가대 상기간 : 2019년 7월 ~ 2020년 6월
 - 평가기관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평가결과 : 양호

- 2) 다양한 의료 시범사업 참여
 - 만성질환관리 교육사업 참여
 - 고혈압과 당뇨 만성질환 건강 증진용 동영상 제작 및 교육
 - 만성질환관리 대상자 집단교육 실시 (월1회)
 - 왕진 시범사업 참여
 - 의사의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제공
 - 생활습관 및 환경을 파악하여 적절한 진료처방
 - 장애인주치의 사업 참여
 - 의사의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제공

9. 제9원칙 : 노동자 주권의 원칙

“노동은 자연과 사회, 인간을 성장시키는 주요 요소이다. 협동조합은 노동자에게 주권을 부여하며, 주체적으로 협동조합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1) 직원 조합원 조합 출자 참여

- 직원 조합원 : 47명 중 45명, 95.7%
- 직원 출자금 총액
 - 총 출자금 1,510,182,095원 중 185,686,600원
 - 점유율 : 12.2%
- 직원 1인당 평균 출자금 : 4,126,368원
 - 조합원 평균 출자액 : 343,067원

2) 직원 상조회 운영

- 회의 개최 : 매월 1회/그 외 사안에 따라 논의
- 상조회 경조비 및 대출금 지급

3) 직원대표 경영진 참여

- 직원 이사 : 박혜란, 이경민, 이자우, 허애령
- 매월 정기 이사회 등 경영활동 참여

4) 각 단위 부서별 자주관리를 위한 회의 개최

- 전직원 회의
 - 회의 주기 : 매월 첫째 화요일 13:00
 - 회의 안건 : 각종 현안 공유 및 경영 성과 토의 등
 - 주요 이행 실적: 경영성과 및 계획 보고, 의견 수렴

5) 지역 공익활동가 서로도움공제

- 목적 : 지역 공익활동 단체와 연대
- 방법 : 급여차감 후 단체 송금 적립
- 조합대표 임원참여
- 공제회원 : 7명

10. 제10원칙 : 약자우선

“약자와 소수라는 이유로 권리를 침해받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야 한다.”

1) 의료취약계층 진료비 지원

- 재원 : 조합자체부담금 > 기부금(스스로조합비) > 외부지원금 순으로 충당
- 조합 이용 취약계층의 의료비(비보험 적용 진료비) 지원

2) 약자와 소수의 권리 보호

- 지역사회의료센터 운영
 - 센터장 : 박지영 원장
 -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의료 접근성 증진을 위한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체계 구축
 - 의사(내과) 가정전문간호사, 방문간호사, 작업치료사
- 장애인 주치의 시범사업 참여
 - 목적 : 취약계층 의료 접근성 개선
 - 지속적인 참여
- 만성질환관리사업 전개
 - 만성질환관리 양호기관(건보공단 심사평가원) 지정
 - 고혈압, 당뇨병 관리 시범사업
 - 월1회 정기 교육
- 왕진사업 참여
 - 지역사회의료센터 관할
- 성소수자 진료
- 건강여성 첫걸음 클리닉 참여기관
- 어린이국가예방접종사업 지정의료기관

제5호 의안 2022년 잉여금 처분(안) 승인의 건

●● 의결주문: 2022년 당기 순이익 198,248,294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기존의 손실금 470,869,490원에 보전하는 것을 승인하여 주십시오.

●● 관계조항: 정관 제25조, 제33조 제5호

※정관 제25조(법정적립금)

- ① 조합은 매 회계연도 결산의 결과 잉여금이 있는 때에는 해당 회계연도 말 출자금 납입총액의 3배가 될 때까지 잉여금의 100분의 30 이상을 적립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법정적립금은 손실금의 보전에 충당하거나 해산하는 경우 외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관 제33조(총회의 의결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5. 대차대조표, 수지계산서, 결산보고서의 승인과 잉여금의 처분 및 손실금의 처리

결손금 처리 계산서(안)

민들레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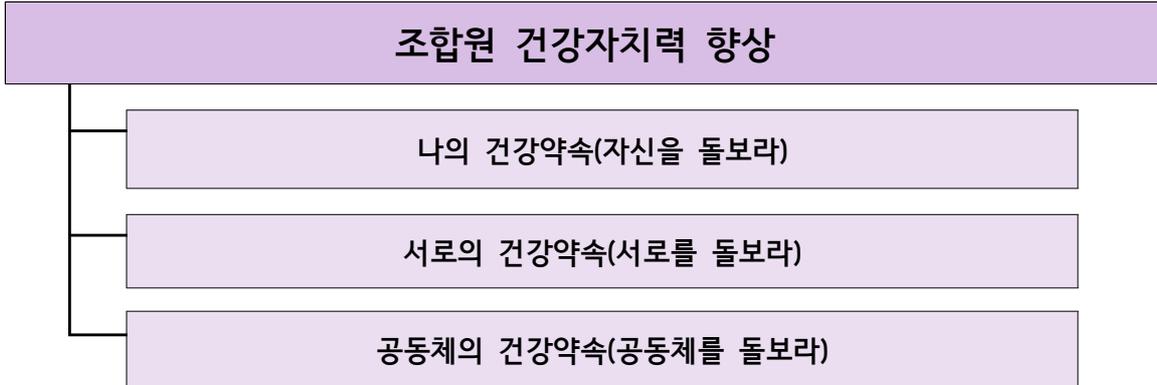
과 목	제20(당기)		제19(전기)	
	금 액		금 액	
I . 미 처 리 결 손 금		272,621,196		470,869,490
1 . 전 기 이 월 미 처 리 결 손 금	470,869,490		785,267,821	
2 . 회 계 변 경 의 누 적 효 과	0		0	
3 . 전 기 오 류 수 정 이 익	0		0	
4 . 전 기 오 류 수 정 손 실	0		15,609,530	
5 . 중 간 배 당 금	0		0	
6 . 당 기 순 이 익	198,248,294		330,007,861	
II . 결 손 금 처 리 액		0		0
1 . 임 의 적 립 금 이 입 액	0		0	
2 . 기 타 법 정 적 립 금 이 입 액	0		0	
3 . 이 익 준 비 금 이 입 액	0		0	
4 . 재 평 가 적 립 금 이 입 액	0		0	
5 . 자 본 준 비 금 이 입 액	0		0	
III . 차 기 이 월 미 처 리 결 손 금		272,621,196		470,869,490

제6호 의안 2023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의 건

- 의결주문: 2023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승인해 주십시오.
- 관계조항: 정관 제33조 제4호

※ 제33조(총회의 의결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4. 사업계획 및 예산의 심의

1. 사업기초



2. 건강자치력 향상을 위한 전략

- 건강증진 :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의 건강에 대한 통제력을 증가시키고 건강수준을 개선시킬 수 있는 능력을 배양시키는 과정. 오타와 선언(WHO, 1986)
- 건강결정요인 : 건강의 변화를 나타낼 수 있는 지표로서 개인이나 집단의 건강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말함. 크게 생물학적 요인, 개인적 요인, 물리적 요인, 사회·경제적 요인으로 분류

1) 나의 건강약속 : 개인의 생활양식 요소

- ① 조합원 주치의 : 건강검진, 구강검진, 만성질환 관리
- ② 건강생활 실천하기 : 만성질환 건강반, 건강학교(65세 이상), 조합원 건강걷기대회
- ③ 민들레 건강강좌 : 찾아가는 건강상담, 구강관리교육

2) 서로의 건강약속 : 사회적 및 지역사회 네트워크

- ① 건강반 확장 : 건강기금(스스로조합비), 자원봉사 연계
- ② 조합원 활동
 - 만남 : 신입조합원, 대의원
 - 교육 : 심폐소생술, 신입/직원조합원 교육, 임원 워크숍
- ③ 조합원 참여 : 조합원 홍보영상 공모, 조합원 자원조사

3) 공동체의 건강약속 : 생활 및 사회·경제·문화·환경적 조건

- ① 민들레 통합돌봄 유지·확대
 - 분야별 : 장애인주치의사업, 재택의료시범사업,
 - 지역별 : 동구, 유성구, 서구 등 시범사업 참여
- ② 민들레 돌봄활동
 - 주간보호센터 활동 : 민들레꽃 나눔반
 - 돌봄 일자리 : 노인건강돌봄지도사, 통합돌봄서포터즈 건강지킴이
- ③ 건강생태계 구축 : 지역사회 연대활동(의료, 복지, 사회적경제 등)

2. 6대 핵심지표 달성 목표

1) 6대 핵심지표 달성 기초

6대 핵심지표는 민들레 설립 이념과 정관에 따른 조합의 기본적인 상황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조합원의 활동과 성장을 나타내고 있다. 민들레 조합원으로서 역할과 성장을 목표로 질적 성장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2) 6대 핵심지표

① 조합원

2022년 말 기준	목표	비고
총 조합원 4,402세대 신규: 303세대	총 조합원 4,522세대 증감계 120명	

② 출자금

2022년 말 기준	목표	비고
총 출자금 누계액 1,510,182,095원(출자예치금 포함)	1,540,182,095원(출자예치금 포함) 증감계 3,000만원	

③ 건강리더

2022년 말 기준	목표	비고
총 306명	총 누적 336명 증가 30명	

④ 건강반

2022년 말 기준	목표		비고
	총 55개 반원 375명	조합사업부 총 40개반 이상 반원 230명 이상	

⑤ 스스로조합비 조합원

2022년 말 기준	목표	비고
263세대	300세대 증감계 37세대	

⑥ 자원봉사

2022년 말 기준	목표	비고
-	연인원 250명 봉사시간 500시간	

3. 단위 부서별 사업계획

1) 일차의료센터

(1) 민들레의원

	분류	목표	실행계획
의 료 서 비 스 사 업 목 표	의료 기기 관련	- 응급상황 시 신속 대처를 위한 장비 관리	- 의료장비 리스트 확인 업로드(구입날짜, 수리, 충전)로 관리 체계화와 담당자 지정 관리(산소통, 산소포화도, 초음파장비 등)
	진료 환자 관리	- 진료대기시간의 효율적인 관리 - 검사의 정확성을 위해 관리	- 만성질환 교육 동영상과 여행, 관광, 건강 등 다양한 테마별 시청각 영상으로 즐겁고 유익한 대기시간 자료 제공 - 대기 환자들의 편의를 위한 병원 순번 대기 시스템 설치 - 당일 진료환자 검사 처치 시 오더 확인 처치 - 처치 시 신속하고 정확한 처치를 위한 분기별 직원 역량 강화 교육 - 소변 스틱 비치하여 필요시 사용
	수익 창출 관리	- 매출목표 3% 상승	- 의원 수입 구조 정확함을 위한 지역사회의료센터와 매출 분리 - 일차만성질환 시범사업 참여자 재등록 독려 및 확대
	조합원 관리	- 접수 시 조합원 유무 확인 - 조합원 가입(30명) 스스로조합원(5명)	- 접수 시 조합원 유무 확인 후 신규조합원 가입 안내 - 조합 관련 자료 비치하여 조합 홍보

(2) 민들레건강검진센터

	분류	목표	실행계획
의료 서비스 사업 목표	의료 기기 관련	- 의료 장비 관리 시스템	- 의료장비 점검리스트 기록 관리 (구입일자/ 담당자/ 수리내역/ 수리비용 기록)
	진료 환자 관리	- 대기시간 단축으로 검사 만족도 상승	- 채혈 후 주사 부위 지혈 안내 잘하기 - 연말 내시경 예약자 예약 시간 맞춰 진행 (소변 검사는 내시경 들어가기 전 확인) - 위 / 대장 예약 시 초음파 검사 여부 확인 - 검진 결과 발송 시 대변 검사 통보일을 검진 대장에 함께 기록 - 안내지로 구강검진 안내
	수익 창출 관리	- 매출 5% 목표	- 검진 후 추적 검사 대상자 관리(초음파, 위, 대장, 간질환, 심비대 등) - 대장내시경 매일 3건 예약(예약 취소 감소와 부부 취소 시) - 비수기 검진(2월/ 5월/ 9월)에 부가서비스 검사 진행(혈관노화도) - 대장암 검사 대상자는 대변 검사(통+문진표) 안내 - 매월 셋째주 월요일 검진회의 시 내시경 건수 확인 - 신규 아파트 홍보 진행
	조합원 관리	- 조합원 검진을 증대 - 조합원 친밀감 갖기	- 접수 시 조합원 유무 확인 하기(업무공간에서 조합원 확인) - 조합원 가입 70명/ 스스로조합비조합원 가입 10명 - 조합원 부가 서비스(검진+대장내시경 검사 시 간영양제 수액 주사) - 조합원 호칭과 내원 시 감사 인사

(3) 민들레한의원

	분류	목표	실행계획
의료 서비스 사업목표	의료 서비스 비용 절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치료시(ICT) 정확한 부위 실행 - 신뢰도 향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장비 매주 화요일 ICT, IR 장비 점검/ 점검 관리 리스트 작성 - 핫팩 온도 체크 - 뜸 치료 시 화상 유의 - 습부 처리 후 주의사항 안내 - 텐스 --> ICT 교체
	진료 환자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치료방식, 비용에 대한 불만 줄이기 - 진료대기 시간의 효율적인 관리 - 한약 상담 환자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진 환자와 주말(토요일) 진료 시 진료비 설명 - 비급여 진료비에 대한 설명 - 진료대기 시간 활용 (발마사지, 동영상 시청, 한의원 및 조합 홍보물) - 처방 배송 후 복약에 대한 안내 전화 - 녹용 처방 한재 이상 환자 한방패스(1세트) 서비스
	수익 창출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300만원 / 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월 적절한 의약품, 의료소모품 구입 - 냉·난방 적정 온도 유지(냉·난방 25도 유지) - 퇴근 시 점검으로 안전 생활화 - 설날, 어버이날, 추석 공진단 할인 행사 (조합 홈페이지, 조합원, 환자 홍보)
	조합원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합원 가입 12명 - 스스로조합비조합원 가입 2명 - 접수 시 조합원 유무 확인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원 환자에게 조합 정보 제공 및 홍보(대기 시간 활용) - 접수 시 조합원 유무 확인 후 신규 조합원 가입 안내 (비보험 상담 시 조합 가입 권유) - 라포 형성 후 스스로조합비조합원 가입 권유

(4) 민들레치과의원

	분류	목표	실행계획
의료 서비스 사업목표	의료 기기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후 의료 장비 교체 - 진료 환경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담실 모니터 교체 - 자외선 소독기 교체 - 진료실 안쪽 환경 개선
	진료 환자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기적 치주관리를 통한 잇몸질환 예방 - 스켈링 & RP: 100건/월 - 임플란트환자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료환자 정기 검진과 리콜 문자 발송 - 임플란트 환자 정기적 관리를 위한 문자 발송 - 스켈링 후 차트에 담당자 기록과 환자 상태 기록하여 내부 공유
	수익 창출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월수입 4,500만원 - 구강검진 챙기기[연500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료 시 구강검진도 안내 - 구강검진 환자 진료로 이어지도록 하기 - 비수기(봄, 가을) 전체 조합원 대상으로 연 1회 보험 치석 제거 알림 문자 발송
	조합원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합원 유무 확인하기 - 조합원가입 10명 - 스스로조합가입 2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접수, 수납 시 조합원 확인 후 신규 조합원 가입 안내 - 신한인 경우 조합원 유무 확인하여 조합원인 경우 내원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인사 멘트 하기

2) <지역사회의료센터> 사업계획서

사업명	위탁기관/자체	수행기간																				
방문의료 (방문진료시범사업/가정간호)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자체	2023. 01. ~ 2023. 12.																				
사업개요																						
<p>o 목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사회와 연대하고 건강약자를 배려하는 따뜻하고 신뢰받는 방문의료 서비스 제공 및 의료시스템 만들기 <p>o 주요사업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재가 및 시설의 거동 불편자 (장애인, 어르신, 수술 후 퇴원환자, 기타 의료서비스가 필요하나 병원 내원이 힘든 환자), 지역사회 의뢰 대상 - 내용: 의료접근이 불편한 취약계층 및 지역사회에서 의뢰받은 대상에게 다학제 팀기반 의료 서비스 제공 - 매출목표: 4억 5천만원 <p>o 추진목표</p>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목표</th> <th>2023년 성과목표</th> <th>비고</th> </tr> </thead> <tbody> <tr> <td>방문진료</td> <td rowspan="5">왕진, 가정간호 및 작업치료 서비스를 팀접근 방식으로 진행하여 의료의 접근성을 높인다.</td> <td>연 300건</td> <td></td> </tr> <tr> <td>가정간호(가정)</td> <td>연 3000건</td> <td></td> </tr> <tr> <td>가정간호(시설)</td> <td>연 1,300건</td> <td></td> </tr> <tr> <td>방문작업치료</td> <td>연 50건</td> <td></td> </tr> <tr> <td>재택의료센터</td> <td>70명(연 관리 인원)</td> <td></td> </tr> </tbody> </table> <p>o 추진전략</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홍보 및 활성화 2) NECA 환자 중심 방문의료 연구 사업 참여 3) 호스피스 및 가정임종을 위한 팀원 교육 (사전연명의료제도 등) 4) 당사자 중심의 복약관리 (약달력, 약포지 등을 활용하여 복약순응도 향상) 5) 발관리 등 민들레 특화 방문의료서비스 지속 6) 마이차트 자체시범사업 시행 (환자, 보호자, 돌봄제공자 및 의료진들의 소통과 협력을 위한 차트) <p><2023년 계획(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월까지 재택의료센터 대상자 30명 목표, 의사 추가구인 예정. 연 재택의료 등록 관리인원 70명을 중심으로 방문의료의 서비스의 질 관리를 해 나갈 예정 - 2023년부터 방문진료 수가에 팀 방문(간호사, 작업치료사, 물리치료사) 수가가 생겨서, 다학제 방문진료 시 재정적으로 조금은 개선될 전망. 			구분	목표	2023년 성과목표	비고	방문진료	왕진, 가정간호 및 작업치료 서비스를 팀접근 방식으로 진행하여 의료의 접근성을 높인다.	연 300건		가정간호(가정)	연 3000건		가정간호(시설)	연 1,300건		방문작업치료	연 50건		재택의료센터	70명(연 관리 인원)	
구분	목표	2023년 성과목표	비고																			
방문진료	왕진, 가정간호 및 작업치료 서비스를 팀접근 방식으로 진행하여 의료의 접근성을 높인다.	연 300건																				
가정간호(가정)		연 3000건																				
가정간호(시설)		연 1,300건																				
방문작업치료		연 50건																				
재택의료센터		70명(연 관리 인원)																				

사 업 명	위탁기관/자체	수행기간								
2023년 장애인건강주치의시범사업 (+지역사회 작업치료)	국민건강보험공단+심평원 /자체	2023. 01. ~ 2023. 12.								
사 업 개 요										
<p>o 목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의 질병예방 및 치료, 활동과 참여를 통한 건강 및 삶의 질 개선 <p>o 주요사업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 상: 중증 장애인 - 내 용: 주치의 팀 기반으로 중증장애인의 의료접근성을 높여 만성질환 또는 장애 등에 대해 지속적, 포괄적인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방문 및 내원, 검진, 전화나 SNS 상담, 건강반 활동, 기타 서비스 연계 등을 통해서 중증 장애인의 건강관리) - 목표매출: 1.6억 <p>o 추진전략</p> <table border="0" style="width: 100%;"> <tr> <td style="width: 50%;">1) 장애인 건강검진, 치과 검진 및 스케일링 지속 독려 및 연계</td> <td style="width: 50%;">2) 예방접종 지원</td> </tr> <tr> <td>3) 만성질환 교육 등록 및 시행 (정신장애인 중 비만관리 그룹)</td> <td>4) 복약 관리 (약달력 활용)</td> </tr> <tr> <td>5) 발 관리 서비스에 대한 평가 시행</td> <td>6) 평생교육, 스포츠, 취업 연계</td> </tr> <tr> <td>7) 장애인에게 듣는 조합원 및 직원 교육 기회</td> <td>8) 우울증 관리 필요 (PHQ-9 시행 고려)</td> </tr> </table> <p><2023년 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성구, 대덕구보건소 지역사회 재활담당자들, 대전광역시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와 적극 협력하여 장애인건강주치의 갖기 캠페인을 전개하여, 장애인건강주치를 통한 장애인 건강관리가 정착할 수 있도록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자 함 - 대덕구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연계하여 정신장애인 건강 및 사례관리를 적극적으로 할 예정 			1) 장애인 건강검진, 치과 검진 및 스케일링 지속 독려 및 연계	2) 예방접종 지원	3) 만성질환 교육 등록 및 시행 (정신장애인 중 비만관리 그룹)	4) 복약 관리 (약달력 활용)	5) 발 관리 서비스에 대한 평가 시행	6) 평생교육, 스포츠, 취업 연계	7) 장애인에게 듣는 조합원 및 직원 교육 기회	8) 우울증 관리 필요 (PHQ-9 시행 고려)
1) 장애인 건강검진, 치과 검진 및 스케일링 지속 독려 및 연계	2) 예방접종 지원									
3) 만성질환 교육 등록 및 시행 (정신장애인 중 비만관리 그룹)	4) 복약 관리 (약달력 활용)									
5) 발 관리 서비스에 대한 평가 시행	6) 평생교육, 스포츠, 취업 연계									
7) 장애인에게 듣는 조합원 및 직원 교육 기회	8) 우울증 관리 필요 (PHQ-9 시행 고려)									

사 업 명	위탁기관/자체	수행기간
2023년 가치기반 지역사회 연대활동	자체	2023. 01. ~ 2023. 12.
사 업 개 요		
<p>o 목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지역 건강자원들을 발굴하고 지속적으로 소통 연대 <p>o 주요사업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네트워크 및 연대활동, 지역에서 일할 수 있는 보건의료전문가 양성을 위한 실습 지도, 공동체학습, 시민참여 등을 기획 진행한다. <p>o 추진전략</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스스로 학습하고 함께 성장하며, 지역사회 공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전연명의료제도, 발달장애 커뮤니티케어, 치매서포터즈, 공공의료 및 공공병원 건립과 관련한 학습 2) 학습하고 경험한 것을 나누는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센 내부에서 매월 학습하고 나누기 - 작업치료 전공학생, 노인전문간호사 실습지도 - 외부 강의, 발표, 방문의료 저서 공동 집필 3) 지역사회 유관기관과 지역사회 문제를 발견하고 협력하여 해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복상담소, 지역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리빙랩, 보조기기 열린 플랫폼 참여 - 최중증발달장애인지원, 공공보건의료를 위한 네트워크 활동 		

3) 통합돌봄사업본부

사 업 개 요
<p>1. 주간보호센터 운영지원 체계 구축 : 주민참여건강증진센터의 역할 확대</p> <p>2. 통합돌봄사업의 지역확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성사업팀, 통합돌봄사업본부 유성지부운영 (장애인주치의 사업, 꼬트머리 상담소 연계, 유성구 통합돌봄사업 연계)- 동구, 유성구, 서구 등의 통합돌봄 시범사업 참여 <p><세부운영계획></p> <p><input type="checkbox"/> 유성 장애인주치의 사업 (의원 예산 반영) (예산 6,700만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건비 5,800만원 (간호사1 + 의사(하반기) 0.3 총원)- 유성 장애인주치의팀 활동/운영비 1천만원 <p>(매출 8,700만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반기 40명 등록 = 2,700만원- 하반기 60명 등록 = 6,000만원 (수지 +2천만원)

(1) <주간보호센터> 사업계획서

사 업 명	위탁기관/자체	수행기간
민들레주간보호센터	자체	2023.01.01. ~ 2023.12.31
사 업 개 요		
<p>o 목적 민들레주간보호센터는 조합원과 지역주민의 건강하고 존엄한 노년을 위해 주치의 진료와 더불어 통합적인 맞춤형 돌봄을 제공하여, 고목에도 새 잎이 돋듯이 어르신들의 삶에 생기를 불러일으키고, 민들레가 씨앗을 날리듯 활기차게 변화된 일상이 되도록 한다.</p> <p>o 사업목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급자 확보를 통한 사업 안정화 - 주치의를 통한 보건과 복지의 통합 돌봄 서비스 제공 - 개인별 맞춤 재활 서비스 제공 - 수급자의 인권과 결정권을 존중하는 돌봄 서비스 제공 - 수급자가 주체가 되는 적정 돌봄 서비스 제공 <p>o 총사업비 1,053,969,600원(수익 발생 전까지 총사업비 중 51% 조합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익 발생 시점 : 수급자 월 평균 이용 인원 : 35명 <p>o 목표 인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반기 : 25명 - 하반기 : 45명 <p>o 사업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 운영 : 기관관리, 인적자원관리 - 환경 및 안전관리 : 정보관리, 위생 및 감염관리, 시설 및 설비관리, 안전관리 - 수급자 권리보장 : 수급자 인권보호 및 선택 존중 활동 - 급여제공 : 신체활동지원, 건강 및 간호관리, 인지관리 및 의사소통, 기능회복 훈련 <p>o 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 운영 : 종사자 처우개선과 복지향상을 통한 안정적인 인적자원관리, 조합 및 지역사회 자원 활용 - 환경 및 안전관리 : 철저한 위생 및 주기적인 감염관리, 안전한 시설 설비 관리, 안전한 실내환경 조성, 재난 및 응급상황 대응체계 구축 - 급여 제공 : 위생적인 급여 제공, 수급자 권리 보장, 개인별 맞춤 재활서비스 제공, 수급자 선택권 존중 프로그램 제공, 한살림 식자재를 이용한 건강한 식사제공 - 홍보 : 입소 예정자 리스트 집중 관리, 운영지원팀 지역사회 방문 홍보(경로당, 복지관 등), 1차 의료기관 거점 홍보(현수막 설치, 영상 상영), 블로그 관리, 조합원 대상 홍보 		

(2) <주민참여건강증진센터> 계획서

사업명	위탁기관/자체	수행기간
만성질환건강반	자체	2023.03 ~ 12
사업개요		
<p>o 목적 건강취약계층(만성질환자, 허약노인 등)의 건강반 활동을 통한 건강자치력향상 및 관계돌봄 실천</p> <p>o 주요사업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사업비 : 360만원+200만조각 (하반기 예산은 평생학습사업 활용 예정) - 서비스대상 : 만성질환을 갖고 있으면서 건강반을 통해 건강증진을 희망하는 65세이상 노인 80명 - 내용 : 건강반 참여 어르신들의 신체기능검사와 건강상담을 사전,사후 진행하여 건강반활동을 통한 체력향상과 건강증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영시기 : 3월~6월(상반기) 12회, 9월~12월(하반기) 12회 ■ 운영방법 : 건강반(총5개반_1개반 15인이내 구성)별 건강리더 신체활동 주1회 지도 및 조각 1,000원 지급 ■ 운영절차 :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align-items: center; margin-top: 10px;">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조합원가입 및 건강반신청서 작성</div> <div style="font-size: 24px; margin: 0 10px;">▶</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SPPB(간단신체기능검사) 및 건강상담 진행_사전</div> <div style="font-size: 24px; margin: 0 10px;">▶</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건강체조, 스트레칭, 세리밴드 운동 주1회 실시</div> <div style="font-size: 24px; margin: 0 10px;">▶</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SPPB(간단신체기능검사) 및 건강상담 진행_사후</div> </div>		

사업명	위탁기관/자체	수행기간
건강학교	자체	2023.07 ~ 08
사업개요		
<p>o 목적 만성질환 건강반 참여 어르신들의 건강자치력 향상과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제공</p> <p>o 주요사업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사업비 : 48만조각 (교육강사 : 지역사회자원, 민들레 임직원 및 조합원 활용) - 서비스대상 : 건강반에 참여하고 있는 어르신 80명 - 내용 : 건강반 어르신들과 '건강학교' 운영을 함께 기획하고, 노인의 건강 및 보건, 노인복지, 일상생활, 사회교육 등 역량강화 교육과정 진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영시기 : 건강반 방학기간 7월~8월, 총6회 진행 ■ 운영방법 : 건강반 어르신들의 욕구에 기반하여 교육을 설계하고, 교육별 강사를 초빙하여 교육제공, 교육 수강시 1,000조각 지급 (예: 지역사회서비스 알아보기, 마음건강, 영양밥상, 응급상황대처방법, 치매지킴이, 기후위기 등) 		

사 업 명	위탁기관/자체	수행기간
민들레꽃 나눔반	자체	2023.02. ~ 12.
사 업 개 요		
<p>o 목적 건강반 참여 어르신들의 스스로 건강을 지키며 서로돌봄을 실천하여 촘촘한 돌봄관계망 형성, 자원활동을 통한 사회참여 확대</p> <p>o 주요사업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사업비 : 없음. - 서비스대상 : 민들레꽃나눔반 어르신 50여명 - 내용 : 안부확인 및 장보기, 병원동행 등 도움이 필요한 지역주민에게 돌봄활동을 하거나, 민들레주간보호센터 운영에 필요한 자원활동(송영안내, 식사도움, 말벗, 프로그램운영시 활동지원 등) 		

사 업 명	위탁기관/자체	수행기간					
경증치매어르신 웰라이프 헬스케어서비스	대덕구/한국에자이(주)	2023.03. ~ 12.					
사 업 개 요							
<p>o 목적 치매등급 외 경증치매어르신들에게 건강관리 및 다양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삶의질 향상 및 돌봄환경조성</p> <p>o 주요사업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사업비 : 7,000만원 (대덕구 4,000만원, 한국에자이(주) 3,000만원_인건비) - 서비스대상 :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경증치매어르신 30여명 - 내용 : 건강 및 일상생활수행 능력에 따른 맞춤형 헬스케어서비스* 제공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25%;">포괄평가 및 케어플랜 수립 (ICT활용 COGMATE검사, SPPB검사, ADL, IADL검사)</td> <td style="width: 25%;">*신체건강서비스 (1:1또는 그룹, 맨손체조 및 근력운동)</td> <td style="width: 25%;">*인지건강서비스 (1:1또는 그룹, 두뇌활성화작업)</td> <td style="width: 25%;">*심리건강서비스 (그룹, 우울예방 집단상담프로그램)</td> <td style="width: 25%;">*공동체프로그램 (관계향상을 위한 소통프로그램)</td> </tr>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에자이(주)의 ICT솔루션을 활용하여 신체, 인지건강서비스 제공(건강리더협동조합) 			포괄평가 및 케어플랜 수립 (ICT활용 COGMATE검사, SPPB검사, ADL, IADL검사)	*신체건강서비스 (1:1또는 그룹, 맨손체조 및 근력운동)	*인지건강서비스 (1:1또는 그룹, 두뇌활성화작업)	*심리건강서비스 (그룹, 우울예방 집단상담프로그램)	*공동체프로그램 (관계향상을 위한 소통프로그램)
포괄평가 및 케어플랜 수립 (ICT활용 COGMATE검사, SPPB검사, ADL, IADL검사)	*신체건강서비스 (1:1또는 그룹, 맨손체조 및 근력운동)	*인지건강서비스 (1:1또는 그룹, 두뇌활성화작업)	*심리건강서비스 (그룹, 우울예방 집단상담프로그램)	*공동체프로그램 (관계향상을 위한 소통프로그램)			

사 업 명	위탁기관/자체	수행기간
퇴원환자 돌봄서비스	대덕구	2023.03. ~ 12.
사 업 개 요		
<p>○ 목적 의료기관 퇴원환자의 지역사회정착 및 자립생활유지</p> <p>○ 주요사업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사업비 : 2,000만원 - 서비스대상 : 대덕구민으로 의료기관 퇴원환자로 자립생활기능유지에 어려움이 있는 자, 50여명 - 내용 : 2,3차병원 및 요양병원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퇴원시 단기간 의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사회 정착 및 자립생활유지에 도움을 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포괄평가 및 케어플랜 수립, 서비스연계, 모니터링 ■ 방문의료서비스(왕진, 가정간호) ■ 일시재가돌봄서비스(일상생활지원) ■ 영양식사지원서비스(반찬도시락, 환자식사대용간편식) ■ 일시보호서비스(요양병원 한달 입원을 통한 재활 및 치료) 		

사 업 명	위탁기관/자체	수행기간
건강리더협동조합 인큐베이팅	자체	2023.01. ~ 12.
사 업 개 요		
<p>○ 목적 건강리더협동조합 자립역량 구축을 위한 돌봄사업 자금 확보 및 사업추진실무 자문</p> <p>○ 주요사업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사업비 : 없음. - 서비스대상 : 건강리더협동조합 (2020년 5월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지원사업으로 창업지원했으며,인큐베이팅 3년차) - 내용 : 돌봄사업자금 확보 및 서비스 연계, 정기실무회의 운영을 통한 사업추진실무 자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돌봄사업 : (대덕구) 틈새돌봄, 퇴원환자돌봄, 경증치매어르신 돌봄사업 ■ 건강반 운영 : (민들레) 주1회 건강체조 및 세라밴드 활용 운동지도, 조각통장관리 		

사 업 명	위탁기관/자체	수행기간
주간보호센터 홍보 및 입소자 발굴	자체	2023. 02 ~ 12
사 업 개 요		
<p>o 목적 민들레주간보호센터를 지역에 효과적으로 알려 입소자로 연결</p> <p>o 주요사업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사업비 : 100만원 (드라마 제작비용) - 서비스대상 : 민들레 조합원, 민들레주간보호센터 이용자, 대덕구 지역주민, 연대협력기관 - 내용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온라인 홍보 : 네이버 스마트플레이스 개설 및 관리, 뉴스레터 제작, SNS게시, 주간보호 블로그 관리, 조합원 홍보 2. 홍보 드라마 제작 : 조합원 출연 드라마 2탄 “슬기로운 주간보호센터 생활”(가제) 제작 및 상영 3. 입소자 발굴 및 상담 : 인근지역 경로당, 노인복지관, 행정복지센터 등 유관기관 방문 홍보, 입소 예비자 리스트 발굴 관리 4. 기타 운영지원 : 견학 및 외부기관 협력 		

사 업 명	위탁기관/자체	수행기간
주간보호센터 자원활동가 조직운영	자체	2023. 03 ~ 12
사 업 개 요		
<p>o 목적 자원활동가를 조직하여 주간보호센터 활성화를 꾀하고 활동하는 조합원을 확대한다.</p> <p>o 주요사업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사업비 : 100만원+100만조각 (자원활동가모임 및 자원활동가대회 개최비용) - 서비스대상 : 민들레 조합원(대의원), 건강반어르신, 지역주민 *노인일자리 8명 확보 - 내용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자원활동가 조직 및 관리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모집 홍보 : 조합원(대의원)문자, 홈페이지, 카톡채널, 의료기관 게시판, 1365사이트 등 2) 모집 분야 : 돌봄(송영안내 포함) 20명, 프로그램강사 10명, 방학기간 학생자원활동 3) 자원활동가 관리 : 신청서 접수, 1365등록 및 시간 인증, 업무 배치, 조각 지급관리, 자원활동 주간보호센터 게시판 게시 : 기초, 심화 단계별 교육 진행, 성과보고서 발간(3년차) : 자원활동가 모임운영, 자원활동가대회(워크숍) 개최 : 자체 운영기반 마련을 위한 체계 및 자체 규정 준비마련 2. 보상 체계 : 1365사이트 시간인증 등록, 건강화폐 조각 1시간 1,000조각 부여, 우수자원활동가 시상(대의원총회) 		

4) <조합사업부> 사업계획서

사 업 명	위탁기관/자체	수행기간
기초조직강화	자체	2023. 01 ~ 2023. 12
사 업 개 요		
<p>o 목적 조합원의 성장과 참여를 이끌고 임직원의 역량 강화로 조합의 근간인 조합원 중심의 조직 운영과 조합 발전 및 지역 활동 확장 도모</p> <p>o 주요사업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사업비: 800만원 - 대 상: 조합원 및 임직원 - 내 용 		
구 분	계 획	
조합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합원 활동(대면 비대면 방식 활용 만남과 교육) - 조합 홍보 및 이용 영상 공모 1회(150만원) - 카톡 채널 구독자 증가(100명) 	
대의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의원 오리엔테이션 - 연 1회 대의원 및 조합원 걷기 행사(400만원) - 대의원 자원봉사 조직 	
임·직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 1회 임원 워크숍(50만원) - 신입 직원 교육 - 직원 교육(200만원) 	

사 업 명	위탁기관/자체	수행기간
건강반	자체	2023. 05 ~ 2023. 11

사 업 개 요

○ 목적

조합원 및 지역 사회 주민들의 건강한 관계의 힘으로 건강증진과 질병예방을 위해 스스로 만들고 운영하여 나와 이웃과 마을의 건강자치력 향상

○ 주요사업 내용

- 총사업비: 2,000만원
- 목 표: 40개반 이상, 230명 이상(조합원 비율 70%)
- 대 상: 조합원 및 지역 주민
- 내 용: 조합원 및 지역 주민 5인 이상이 한 반으로 구성 등록하여 건강 목표와 활동 계획을 세우고, 월 2회 이상 건강증진과 예방 활동 진행(조합원 50%이상 의무 구성)
- 활동비 지원:

조합원 수	활동비 지원액
조합원 3인	35만원
조합원 4인	40만원
조합원 5인	45만원
조합원 6인	48만원
조합원 7인 이상	51만원

- 활동비 추가지원: 7월까지 스스로조합비조합원 가입 시 인당 3만원 추가 지원

○ 일정



사 업 명	위탁기관/자체	수행기간
건강리더교육	자체	2023. 05 ~ 2023. 06
사 업 개 요		
<p>o 목적 스스로 자기 건강을 돌보며 나와 이웃과 지역사회의 건강에 관련한 변화를 만들어 가고, 건강반을 운영하며 건강 자치력 향상</p> <p>o 주요사업 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사업비: 200만원 - 목표: 수료 25명 - 대상: 조합원 -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마을 이해 ▶ 민들레 역사 ▶ 건강반 현장 이야기 ▶ 만성질환, 정신건강, 기후위기, 갈등관리 등 다양한 주제 진행 ▶ 수료 		

사 업 명	위탁기관/자체	수행기간
건강화폐 '조각'	자체	2023. 01 ~ 2023. 12
사 업 개 요		
<p>o 목적 건강화폐 '조각'을 활용하여 건강자치력 향상을 위한 건강증진과 질병예방 활동을 촉진하고 활동 참여 동기 부여를 강화하기 위함</p> <p>o 주요사업 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사업비: 650만원(스스로조합비) - 대상: 조합원 및 지역 주민 - 내용: 부서별 지급 기준에 따라 건강 화폐를 발행하여 참여자들의 활동 촉진 - 지급 방법: '조각' 통장 수기 기록 - 사용처: 민들레의료사협 일차의료센터, 두레약국, (주)좋은이웃 - 사용기한: 2023. 12. 30. <p>o 발행부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합사업부 - 주민참여건강증진센터 - 지역사회의료센터 		

5) <경영지원실> 사업계획서

사 업 명	위탁기관/자체	수행기간																					
조합 경영 사업	자체	2023. 01 ~ 2023. 12																					
사 업 개 요																							
<p>o 목적 조합 운영 시스템 체계화와 재정운영 보완, 점검으로 적정한 조합 재정 안정화</p> <p>o 주요사업내용 - 사업소 수입결의 및 월결산 자동데이터 구축 - 직원법정교육 실시 - 2023년 보건복지부 감사 준비 -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 실시(2회 촉진) - 자원봉사자 관리</p> <p>o 조합원 / 스스로조합비 가입 - 목표: 조합원 5명, 스스로조합비 조합원 3명 신규가입</p> <p>o 예산(안)</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30%;">항목</th> <th style="width: 40%;">내역</th> <th style="width: 30%;">비용(원)</th> </tr> </thead> <tbody> <tr> <td>조합 건물 유지보수</td> <td>소모품 교체</td> <td style="text-align: right;">3,000,000</td> </tr> <tr> <td rowspan="3">사무기기 유지보수</td> <td>조합 컴퓨터 소모품 교체 등</td> <td style="text-align: right;">3,000,000</td> </tr> <tr> <td>노트북 구매</td> <td style="text-align: right;">2,000,000</td> </tr> <tr> <td>기타</td> <td style="text-align: right;">2,000,000</td> </tr> <tr> <td rowspan="2">소프트웨어 유지보수</td> <td>POS 관련 유지보수</td> <td style="text-align: right;">2,000,000</td> </tr> <tr> <td>기타</td> <td style="text-align: right;">2,000,000</td> </tr> <tr> <td colspan="2" style="text-align: center;">합 계</td> <td style="text-align: right;">14,000,000</td> </tr> </tbody> </table>			항목	내역	비용(원)	조합 건물 유지보수	소모품 교체	3,000,000	사무기기 유지보수	조합 컴퓨터 소모품 교체 등	3,000,000	노트북 구매	2,000,000	기타	2,000,000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POS 관련 유지보수	2,000,000	기타	2,000,000	합 계		14,000,000
항목	내역	비용(원)																					
조합 건물 유지보수	소모품 교체	3,000,000																					
사무기기 유지보수	조합 컴퓨터 소모품 교체 등	3,000,000																					
	노트북 구매	2,000,000																					
	기타	2,000,000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POS 관련 유지보수	2,000,000																					
	기타	2,000,000																					
합 계		14,000,000																					

사 업 명	위탁기관/자체	수행기간
조합 홍보	자체	2023. 01 ~ 2023. 12

사 업 개 요

o 목적

조합 활동을 효과적으로 대내외에 알려 조합 활동 확장과 참여를 독려하고 활동 기록

o 주요사업 내용

- 카카오톡채널 활성화: 쿠폰, 활동 소식, 민들레 소개, 카드뉴스, 건강정보 및 뉴스 조합원들에게 전달
- 유튜브용 영상물 제작
- 민들레 활동을 신속하게 담은 짧은 영상물 다수 제작
- 각 사업부서 자체 생산을 위한 촉진과 교육
- 영상물 취합 편집, 게재를 위한 플랫폼 구상
- 조합내 홍보관리: 의료기관 내외부 게시판 관리
- 홈페이지, SNS관리
- 상시 관리, 관리자페이지 관리
- 조합 주력사업 홍보, 배치 변경, 추가 페이지 제작 등 업데이트
- 페이스북, 카톡채널, 밴드 관리

o 예산안

항목	내역	비용(원)
홈페이지관리	호스팅비 12개월	132,000
	홈페이지 디자인 수정 및 업데이트	1,000,000
게시판 유지관리	의료기관 및 조합 게시판 유지관리	2,000,000
카카오톡채널 관리	포스트 발송	500,000
합계		3,632,000

사 업 명	위탁기관/자체	수행기간																																					
기부금 활용 (전년도 스스로조합비, 일반기부금)	자체	2023. 01 ~2023. 12																																					
사 업 개 요																																							
<p>o 목적 취약계층의 의료비 지원 및 유관기관 협력등으로 지역사회 보건예방사업 활동</p> <p>o 주요사업 내용 - 취약계층 의료비 및 보건예방활동 지원과 상담 (성매매피해여성, 이주노동자, 미등록아동, 65세 노인, 장애가족등 취약계층) - 조각 사용 관리 - 지역사회, 복지관, 대학, 기업등 유관기관 협약 - 지역품앗이 한발레츠와 연대 활동</p> <p>o 예산(안)</p> <table border="1"> <thead> <tr> <th rowspan="2">구분</th> <th rowspan="2">운영비</th> <th colspan="4">취약계층 의료비지원</th> <th colspan="3">보건예방활동</th> <th rowspan="2">합계</th> </tr> <tr> <th>의료기관 의료비 지원</th> <th>지역사회 의료센터</th> <th>주간 보호 센터</th> <th>외부기관 연계지원</th> <th>건강반 건강리더</th> <th>조각 지원</th> <th>장애인 시설개선금</th> </tr> </thead> <tbody> <tr> <td>금액 (만원)</td> <td>200</td> <td>1,500</td> <td>300</td> <td>400</td> <td>400</td> <td>1,700</td> <td>650</td> <td>250</td> <td>5,200</td> </tr> <tr> <td>비율(%)</td> <td>3.7</td> <td>27.75</td> <td>5.55</td> <td>7.4</td> <td>7.4</td> <td>31.45</td> <td>12.02</td> <td>4.62</td> <td>100</td> </tr> </tbody> </table>			구분	운영비	취약계층 의료비지원				보건예방활동			합계	의료기관 의료비 지원	지역사회 의료센터	주간 보호 센터	외부기관 연계지원	건강반 건강리더	조각 지원	장애인 시설개선금	금액 (만원)	200	1,500	300	400	400	1,700	650	250	5,200	비율(%)	3.7	27.75	5.55	7.4	7.4	31.45	12.02	4.62	100
구분	운영비	취약계층 의료비지원				보건예방활동			합계																														
		의료기관 의료비 지원	지역사회 의료센터	주간 보호 센터	외부기관 연계지원	건강반 건강리더	조각 지원	장애인 시설개선금																															
금액 (만원)	200	1,500	300	400	400	1,700	650	250	5,200																														
비율(%)	3.7	27.75	5.55	7.4	7.4	31.45	12.02	4.62	100																														

Ⅱ 2023년 사업예산(안)

1. 2023년 예산 수립 기초

주간보호센터 설립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계획된 예산 손익보다 큰 성과를 2022년도에도 거두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통합돌봄의 중간지대 주간보호센터를 견고히 하는 기초로 2023년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간단하지 않은 목표인 통합돌봄을 위한 구성원들의 뚜렷한 목표 의식을 기대하면서, 2023년도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점을 밝혀 둡니다 .

민들레의 탄생과 존재 이유를 확인할 수 있는 2023년 예산이 되길 기대합니다.

2. 예산 총칙

<제1조> 본 예산의 회계연도는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조> 2023 회계연도 예산 총 규모는 다음과 같다.

관	항	목	2021년 결산	2022년 예산	2022년 결산	2023년 예산	
수입	사업수익	민들레	의원,검진	2,082,255,232	2,170,918,865	2,188,593,151	2,268,130,367
			한의원	214,670,014	238,283,716	261,191,170	274,250,729
			치 과	577,337,340	580,000,000	486,308,810	539,802,779
		지역사회의료센터	411,106,730	450,000,000	655,987,200	701,906,304	
		주간보호센터				536,348,000	
		주민참여 건강증진센터	479,740	2,051,701	9,142,980		
		조합사업부					
		경영지원실	2,545,460	2,800,000	8,595,460	5,000,000	
	사업외 수익	이자수익	2,039,546	1,260,000	977,237	448,000	
		정부지원 및 보조금	91,515,760	20,000,000	67,182,818	40,500,000	
		기부금	19,873,824	5,000,000	31,441,204	2,600,000	
		잡이익	6,134,210	380,000	2,251,836	52,000	
	수입합계			3,407,957,856	3,470,694,282	3,711,671,866	4,369,038,179
	지출	사업비	교육,회의,연대,조직 홍보,보건예방	22,117,216	50,107,000	34,378,638	95,222,000
관리비		매출원가	280,583,277	293,490,454	326,951,994	345,213,588	
		인건비 (급여,퇴직연금,인적용 역)	1,953,572,002	2,090,060,000	2,174,171,155	2,528,349,772	
		감가상각비, 지급임차료	144,930,158	150,572,098	178,528,278	191,860,869	
		기타 판관비	620,896,382	780,726,753	737,792,041	1,089,836,654	
기타		영업외 비용 (이자비용등)	55,850,960	42,985,128	59,752,196	62,522,444	
		법인세			1,849,270		
지출합계			3,077,949,995	3,407,941,433	3,513,423,572	4,313,005,327	
손익합계(수입합계-지출합계)			330,007,861	62,752,849	198,248,294	56,032,852	

3. 단위부서별 2023년도 예산 (2022년도 결산대비)

계정 과목	민들레통합(프로젝트 제외)	
	2022년 통합결산	2023년 통합예산
I.매 출 액	3,609,468,771	4,325,438,179
▷ 의원 수입금	1,494,622,077	1,539,460,739
▷ 검진센터 수입금	693,971,074	728,669,628
▷ 한의원 수입금	261,191,170	274,250,729
▷ 치과 수입금	486,308,810	539,802,779
▷ 지역사회의료센터 수 입 금	655,987,200	701,906,304
▷ 주간보호센터 수 입 금		536,348,000
▷ 조합본부 수입금	9,142,980	
▷ 임대료 수입	8,245,460	5,000,000
II.매 출 원 가	326,951,994	345,213,588
▷ 의원/검진	172,654,788	178,929,358
▷ 한의원	42,777,855	44,916,748
▷ 치과	51,044,401	56,659,285
▷ 지역사회의료센터	60,474,950	64,708,197
III.매 출 총 이 익	3,282,516,777	3,980,224,591
IV.판 매 비 와 관 리 비	3,124,870,112	3,905,269,295
▷ 직 원 급 여	2,028,429,775	2,296,340,052
- 의원/검진	966,491,010	984,611,292
- 한의원	149,140,700	139,203,360
- 치과	275,848,345	255,882,000
- 지역사회의료센터	344,959,480	467,993,880
- 주간보호센터	47,188,340	212,643,120
- 주민참여건강증진센터	75,666,390	96,938,400
- 조합사업부	36,177,500	33,712,800
- 경영지원실	132,958,010	105,355,200
▷ 잡 급	3,607,744	
- 의원/검진	634,190	
- 주간보호센터	2,973,554	
▷ 퇴 직 급 여	140,891,380	179,398,200
- 의원/검진	61,963,140	73,850,040
- 한의원	9,438,990	10,335,120
- 치과	18,787,500	18,827,280
- 지역사회의료센터	27,340,400	38,999,040
- 주간보호센터	3,932,280	17,719,680
- 주민참여건강증진센터	5,468,410	8,078,160
- 조합사업부	2,793,110	2,809,320
- 경영지원실	11,167,550	8,779,560

계정 과목	민들레통합(프로젝트 제외)	
	2022년 통합결산	2023년 통합예산
▷ 복 리 후 생 비	202,179,592	256,139,539
- 의원/검진	92,412,524	129,650,959
- 한의원	20,167,480	22,781,940
- 치과	19,830,510	22,411,920
- 지역사회의료센터	19,918,598	30,474,840
- 주간보호센터	2,257,740	21,942,840
- 주민참여건강증진센터	10,763,260	11,316,240
- 조합사업부	2,116,430	4,228,080
- 경영지원실	34,713,050	13,332,720
▷ 여 비 교 통 비	12,354,409	37,600,000
- 의원/검진	47,400	
- 한의원		
- 치과		
- 지역사회의료센터	6,718,198	9,000,000
- 주간보호센터	675,000	7,800,000
- 주민참여건강증진센터	1,836,580	600,000
- 조합사업부	455,300	
- 경영지원실	2,621,931	200,000
▷ 통 신 비	7,326,876	11,720,000
- 의원/검진	2,762,550	4,800,000
- 한의원	404,944	420,000
- 치과	598,175	600,000
- 지역사회의료센터	613,560	960,000
- 주간보호센터	336,820	1,800,000
- 주민참여건강증진센터	620,530	200,000
- 조합사업부		900,000
- 경영지원실	1,990,297	2,040,000
▷ 수 도 광 열 비	3,152,490	7,740,000
- 의원/검진	831,810	840,000
- 한의원	496,070	600,000
- 치과	409,330	720,000
- 지역사회의료센터	252,100	360,000
- 주간보호센터	396,000	4,800,000
- 주민참여건강증진센터	427,120	
- 조합사업부		60,000
- 경영지원실	340,060	360,000

계정 과목	민들레통합(프로젝트 제외)	
	2022년 통합결산	2023년 통합예산
▷ 전 력 비	19,019,816	21,240,000
- 의원/검진	7,341,310	8,400,000
- 한의원	3,124,519	3,780,000
- 치과	3,545,929	3,720,000
- 지역사회의료센터	367,593	480,000
- 주간보호센터	143,696	
- 주민참여건강증진센터	414,450	
- 조합사업부	4,477	60,000
- 경영지원실	4,077,842	4,800,000
▷ 세 금 과 공 과 금	62,438,060	72,021,440
- 의원/검진	24,860,290	24,293,160
- 한의원	5,192,820	5,341,120
- 치과	7,777,740	8,205,760
- 지역사회의료센터	9,863,930	14,579,280
- 주간보호센터	1,309,500	9,567,120
- 주민참여건강증진센터	2,782,040	4,361,400
- 조합사업부	1,667,920	1,516,800
- 경영지원실	8,983,820	4,156,800
▷ 감 가 상 각 비	127,904,035	137,740,869
- 의원/검진	74,485,934	76,038,434
- 한의원	10,623,009	10,623,009
- 치과	9,195,559	9,480,559
- 지역사회의료센터		
- 주간보호센터	1,322,377	7,989,044
- 주민참여건강증진센터	1,081,934	1,364,601
- 조합사업부		
- 경영지원실	31,195,222	32,245,222
▷ 지 급 임 차 료	50,624,243	54,120,000
- 의원/검진	26,400,000	26,400,000
- 한의원		
- 치과	13,200,000	14,520,000
- 지역사회의료센터		
- 주간보호센터	3,324,243	13,200,000
- 주민참여건강증진센터	2,200,000	
- 조합사업부		
- 경영지원실	5,500,000	

계정 과목	민들레통합(프로젝트 제외)	
	2022년 통합결산	2023년 통합예산
▷ 수 선 비	42,502,200	24,600,000
- 의원/검진	423,000	
- 한의원		
- 치과	110,000	
- 지역사회의료센터		
- 주간보호센터	41,943,700	21,600,000
- 주민참여건강증진센터		
- 조합사업부		
- 경영지원실	25,500	3,000,000
▷ 보 험 료	39,197,057	49,423,780
- 의원/검진	15,366,910	17,241,440
- 한의원	3,175,520	2,462,880
- 치과	4,856,940	4,443,760
- 지역사회의료센터	5,029,780	7,505,880
- 주간보호센터	748,030	12,756,720
- 주민참여건강증진센터	1,559,980	1,554,360
- 조합사업부	651,270	540,600
- 경영지원실	7,808,627	2,918,140
▷ 운 반 비	2,238,700	600,000
- 의원/검진	290,400	300,000
- 한의원	720,600	100,000
- 치과		
- 지역사회의료센터		
- 주간보호센터	247,500	
- 주민참여건강증진센터	6,640	
- 조합사업부		
- 경영지원실	973,560	200,000
▷ 교 육 훈 련 비	2,639,875	6,110,000
- 의원/검진	1,069,875	1,600,000
- 한의원	130,000	130,000
- 치과	480,000	480,000
- 지역사회의료센터	502,000	600,000
- 주간보호센터		600,000
- 주민참여건강증진센터	98,000	
- 조합사업부		2,700,000
- 경영지원실	360,000	

계정 과목	민들레통합(프로젝트 제외)	
	2022년 통합결산	2023년 통합예산
▷ 도서 인쇄비	2,904,000	2,240,000
- 의원/검진		
- 한의원	156,000	
- 치과	236,000	240,000
- 지역사회의료센터		
- 주간보호센터	261,000	
- 주민참여건강증진센터	163,000	
- 조합사업부	495,000	
- 경영지원실	1,593,000	2,000,000
▷ 회의비	4,333,880	13,680,000
- 의원/검진	1,968,000	3,240,000
- 한의원	303,760	360,000
- 치과	430,550	480,000
- 지역사회의료센터	379,750	2,640,000
- 주간보호센터	39,000	4,200,000
- 주민참여건강증진센터	381,600	1,560,000
- 조합사업부	406,070	120,000
- 경영지원실	425,150	1,080,000
▷ 소모품비	29,693,213	65,700,000
- 의원/검진	11,107,230	11,800,000
- 한의원	2,243,083	2,600,000
- 치과	1,817,050	600,000
- 지역사회의료센터	35,100	300,000
- 주간보호센터	6,490,920	47,100,000
- 주민참여건강증진센터	1,443,280	300,000
- 조합사업부	26,300	
- 경영지원실	6,530,250	3,000,000

계정 과목	민들레통합(프로젝트 제외)	
	2022년 통합결산	2023년 통합예산
▷ 지 급 수 수 료	249,473,737	423,134,840
- 의원/검진	111,878,557	188,000,000
- 한의원	4,571,029	4,800,000
- 치과	43,055,519	44,400,000
- 지역사회의료센터	36,265,759	48,000,000
- 주간보호센터	29,068,700	137,700,000
- 주민참여건강증진센터	486,810	234,840
- 조합사업부		
- 경영지원실	24,147,363	
▷ 광 고 선 전 비	180,000	850,000
- 의원/검진		100,000
- 한의원		100,000
- 치과		100,000
- 지역사회의료센터		100,000
- 주간보호센터	180,000	
- 주민참여건강증진센터		
- 조합사업부		150,000
- 경영지원실		300,000
▷ 건 물 관 리 비	7,050,420	36,864,000
- 의원/검진	1,584,000	1,584,000
- 한의원		
- 치과	480,000	480,000
- 지역사회의료센터		
- 주간보호센터	4,121,220	31,800,000
- 주민참여건강증진센터	182,630	3,000,000
- 조합사업부		
- 경영지원실	682,570	

계정 과목	민들레통합(프로젝트 제외)	
	2022년 통합결산	2023년 통합예산
▷ 협 회 비	13,048,600	13,028,600
- 의원/검진		
- 한의원		
- 치과		
- 지역사회의료센터		
- 주간보호센터		
- 주민참여건강증진센터		
- 조합사업부		
- 경영지원실	13,048,600	13,028,600
▷ 무 형 고 정 자 산상각	5,761,008	6,294,341
- 의원/검진	420,608	420,608
- 한의원	270,000	270,000
- 치과		
- 지역사회의료센터		
- 주간보호센터		
- 주민참여건강증진센터		
- 조합사업부		
- 경영지원실	5,070,400	5,603,733
▷ 연 대 활 동 비	6,317,000	7,400,000
- 의원/검진		
- 한의원		
- 치과		
- 지역사회의료센터	124,700	
- 주간보호센터	170,000	2,400,000
- 주민참여건강증진센터		
- 조합사업부	17,500	
- 경영지원실	6,004,800	5,000,000
▷ 조 직 활 동 비	9,374,040	57,400,000
- 의원/검진		
- 한의원		
- 치과		
- 지역사회의료센터		
- 주간보호센터		48,200,000
- 주민참여건강증진센터		
- 조합사업부	7,956,500	7,700,000
- 경영지원실	1,417,540	1,500,000

계정 과목	민들레통합(프로젝트 제외)	
	2022년 통합결산	2023년 통합예산
▷ 홍보 활동비	11,713,843	10,632,000
- 의원/검진		
- 한의원		
- 치과		
- 지역사회의료센터		
- 주간보호센터	9,354,600	3,500,000
- 주민참여건강증진센터		2,000,000
- 조합사업부		1,500,000
- 경영지원실	2,359,243	3,632,000
▷ 인적용역비	4,850,000	52,611,520
- 의원/검진		
- 한의원		
- 치과		
- 지역사회의료센터		
- 주간보호센터		49,011,520
- 주민참여건강증진센터	3,600,000	3,600,000
- 조합사업부	1,000,000	
- 경영지원실	250,000	
▷ 조합원건강지원비	33,038,589	32,640,114
- 의원/검진	21,202,189	15,065,297
- 한의원	4,176,300	6,252,565
- 치과	7,660,100	11,322,252
- 지역사회의료센터		
- 주간보호센터		
- 주민참여건강증진센터		
- 조합사업부		
- 경영지원실		
▷ 취약건강지원비	2,625,530	3,000,000
- 의원/검진	2,478,630	2,000,000
- 한의원	22,500	1,000,000
- 치과	124,400	
- 지역사회의료센터		
- 주간보호센터		
- 주민참여건강증진센터		
- 조합사업부		
- 경영지원실		

계정 과목	민들레통합(프로젝트 제외)	
	2022년 통합결산	2023년 통합예산
▷ 기 부 금 사업비	36,045,946	52,000,000
- 의원/검진	95,330	4,000,000
- 한의원		1,000,000
- 치과		10,000,000
- 지역사회의료센터		3,000,000
- 주간보호센터		4,000,000
- 주민참여건강증진센터	5,871,330	
- 조합사업부	15,115,656	23,500,000
- 경영지원실	14,963,630	6,500,000
▷ 기 부 금 사업비지원금	36,045,946	-52,000,000
▷ 예비비		25,000,000
- 주간보호센터		15,000,000
- 경영지원실		10,000,000
V.영 업 이 익	157,996,665	74,955,296
- 의원/검진	589,918,806	518,965,779
- 한의원	4,055,991	18,173,987
- 치과	26,820,762	86,229,963
- 지역사회의료센터	143,141,302	15,205,187
- 주간보호센터	-156,484,220	-126,782,044
- 주민참여건강증진센터	-100,039,674	-148,308,001
- 조합사업부	-53,767,377	-70,997,600
- 경영지원실	-295,648,925	-217,531,975
VI.영 업 외 수 익	101,853,095	43,600,000
▷ 이 자 수 익	977,237	448,000
- 의원/검진	71,282	72,000
- 한의원	17,575	20,000
- 치과	55,813	60,000
- 지역사회의료센터	5,256	6,000
- 주간보호센터	5	50,000
- 주민참여건강증진센터	39,609	40,000
- 조합사업부		
- 경영지원실	787,697	200,000

계정 과목	민들레통합(프로젝트 제외)	
	2022년 통합결산	2023년 통합예산
▷ 정 부 지 원 및 보조금	67,182,818	40,500,000
- 의원/검진	1,600,000	3,000,000
- 한의원		
- 치과		
- 지역사회의료센터	5,206,378	5,000,000
- 주간보호센터	28,500,000	
- 주민참여건강증진센터		30,000,000
- 조합사업부		
- 경영지원실	31,876,440	2,500,000
▷ 기 부 금 수 입	31,441,204	2,600,000
- 의원/검진	100,000	100,000
- 한의원		
- 치과		
- 지역사회의료센터		
- 주간보호센터		
- 주민참여건강증진센터	4,250,830	
- 조합사업부	178,160	
- 경영지원실	26,912,214	2,500,000
▷ 잡 이 익	2,251,836	52,000
- 의원/검진	350,146	10,000
- 한의원	35,573	10,000
- 치과	220,264	10,000
- 지역사회의료센터		3,000
- 주간보호센터	2,000	3,000
- 주민참여건강증진센터	2,332	3,000
- 조합사업부		3,000
- 경영지원실	1,641,521	10,000
Ⅶ.영 업 외 비 용	59,752,196	62,522,444
▷ 이 자 비 용	55,432,458	57,482,444
- 치과	287,055	1,327,044
- 경영지원실	55,145,403	56,155,400

계정 과목	민들레통합(프로젝트 제외)	
	2022년 통합결산	2023년 통합예산
▷ 유형자산처분손실	3,000	
- 치과	3,000	
▷ 보상비	1,174,070	5,000,000
- 주간보호센터	99,200	5,000,000
- 경영지원실	1,074,870	
▷ 잡손실	3,142,668	40,000
- 의원/검진	10,369	5,000
- 한의원	1,542,020	5,000
- 치과	1,320	5,000
- 지역사회의료센터		5,000
- 주간보호센터		5,000
- 주민참여건강증진센터	11,829	5,000
- 조합사업부		5,000
- 경영지원실	1,577,130	5,000
Ⅷ.법인세차감전이익	200,097,564	56,032,852
- 의원/검진	592,029,865	522,142,779
- 한의원	2,567,119	18,198,987
- 치과	26,805,464	84,967,919
- 지역사회의료센터	148,352,936	20,209,187
- 주간보호센터	-156,581,415	-31,734,044
- 주민참여건강증진센터	-67,258,732	-118,270,001
- 조합사업부	-53,589,217	-70,999,600
- 경영지원실	-292,228,456	-268,482,375
Ⅹ.법인세	1,849,270	
당기순이익	198,248,294	56,032,852

제7호 의안 차입금 한도 승인의 건

- 의결주문: 2023년 회계연도 차입금 최고 한도는 현재의 차입금 1,597,661,317원을 포함하여 총 합계액 기준 20억 원 이내로 하는 것을 승인하여 주십시오.
- 관계조항: 정관 제33조 제10호

※ 제33조(총회의 의결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10. 차입금의 최고한도 결정

2022년 차입금 내역 및 상환 계획

(2022. 12. 31 기준)

구분	차입액(원)		최초 대출일	대출기한	차입 이율 (연, %)	상환 계획	
	2021년도	2022년도					
조합원 차입금	105,000,000	80,000,000	'13.4.부터	1년 단위 (상환 연장)	4.00	요청시	
금융권 차입	신한은행	268,365,681	269,504,826	'19.11.27	'23.11.27. (연장가능)	7.5138	운영비통장 (-대출)
	신한은행	142,500,000	124,500,000	'19.11.27	'23.11.24. (연장가능)	6.620	월150만원
	신한은행 (신보보증)	105,000,000	75,000,000	'20.06.30	'25.06.17	6.280	월250만원
	신한은행		292,250,000	'22.05.27	'25.05.27	7.460	월325만원
	신한은행 (신보보증)		100,000,000	'22.11.23	'23.11.15. (연장가능)	6.880	23년 협의
	유동화 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300,000,000	300,000,000	'18.04.26	'23.06.28	1.538	23년 협의 (일부상환)
	한빛신협	362,200,000	333,440,000	'19.01.11	'29.01.11	3.950	월248만원
	(재)밴드	49,658,459	7,626,282	'19.11.06	'23.01.31	3.035	전액 상환
	신나는 조합	41,021,966	15,340,209	'19.07.23	'23.07.23	3.00	전액 상환
총 계	1,374,746,106	1,597,661,317	-	-	-		

인가 사항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1732(2021. 3. 25.)

정 관



민들레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민들레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정관

전 문		
제 1 장	총 칙	(제 1 조 ~ 제 9 조)
제 2 장	조 합 원	(제 10 조 ~ 제 17 조)
제 3 장	출 자	(제 18 조 ~ 제 26 조)
제 4 장	총 회 와 이 사 회	(제 27 조 ~ 제 44 조)
제 5 장	임 원 과 직 원	(제 45 조 ~ 제 60 조)
제 6 장	사 업 과 집 행	(제 61 조 ~ 제 63 조)
제 7 장	회 계	(제 64 조 ~ 제 68 조)
제 8 장	합병·분할 및 해산	(제 69 조 ~ 제 72 조)
부 칙		

전 문

민들레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은 나눔과 협동의 경제를 지향하는 지역통화운동 단체 <지역품앗이 한밭레츠>와 참다운 의료생활의 실현을 위해 노력해 온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대전·충남지회>가 중심이 되어 시작되었다. 이후 친구랑공동육아어린이집, 한밭생활협동조합, 한살림대전생활협동조합 등의 협동조합과 대전지역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지역주민들의 노력으로 민들레의료생활협으로 창립하였다.

민들레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은 민들레의료생활협의 전통을 이어 다음과 같은 네 가지를 기본이념으로 한다. 첫째, 지역사회 주민이 참여하는 협동조합으로서 생명과 평화, 공동체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한다. 둘째, 환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치료과정에 함께 참여하며 인권을 존중하는 의료, 복지, 노인건강사업을 펼쳐나간다. 셋째, 자신과 가정, 직장, 마을에서 좋은 생활습관과 환경을 만들어 질병을 사전에 예방하는 보건의료를 실천한다. 넷째, 주민의 자치와 참여, 협동을 통해 지역의 마을마다 건강한 생활공동체를 만들어간다.

민들레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은 위 네 가지 기본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조합원 주권의 원칙을 따르며 세계의 협동조합과 연대하여 평화롭고 행복한 세계를 이루어갈 것이다.

제1장 총칙

제1조(설립과 명칭) 이 조합은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하여 설립하며, 민들레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이라 한다.

제2조(목적) 민들레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은 자주적·자립적·자치적인 협동조합 활동을 통하여 구성원의 복리증진과 상부상조 및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2명 이상의 서로 다른 이해관계자들이 모여 구성원의 건강증진 및 사회복지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조합의 책무) ① 조합은 조합원 등의 권익 증진을 위하여 교육·훈련 및 정보 제공 등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한다.

② 조합은 다른 협동조합, 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 외국의 협동조합 및 관련 국제기구 등과의 상호 협력, 이해 증진 및 공동사업 개발 등을 위하여 노력한다.

제4조(사무소의 소재지) ① 조합의 주된 사무소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계족로 663번길 26(법동)에 둔다.

② <삭제, 2020. 5. 09.>

③ 의료기관 소재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민들레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민들레의원: 대전광역시 대덕구 계족로663번길 26, 1층(법동), 대전광역시 대덕구 계족로 663번길 22, 2층(법동) <개정, 2020. 5. 9.> <개정,2021. 2. 27>

2. 민들레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민들레한의원: 대전광역시 대덕구 계족로 663번길 26, 2층(법동) <개정, 2021. 2. 27>

3. 민들레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민들레치과의원: 대전광역시 대덕구 계족로663번길 28, 2층(법동)

4. <삭제, 2020. 5. 09.>

제5조(사업구역) 조합의 사업구역은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충청북도, 일원으로 한다.

제6조(광고방법) ① 조합의 광고는 주된 사무소의 게시판(지사사무소의 게시판을 포함한다)에 게시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전광역시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 또는 중앙일간지에 게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광고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하며, 조합원의 이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에 대하여는 광고와 함께 서면으로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통지 및 최고방법) 조합원에 대한 통지 및 최고는 조합원명부에 기재된 주소지, 전자우편 또는 휴대폰 문자메세지로 하고, 통지 및 최고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조합원이 따로 연락받을 연락처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곳으로 한다.

제8조(공직선거 관여 금지) ① 조합은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 정당을 지지·반대하거나 특정인을 당선되도록 하거나 당선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조합을 이용하여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규약 또는 규정) 조합의 운영 및 사업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이 정관으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규약 또는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2장 조합원

제10조(조합원의 자격 및 유형) ① 조합의 설립목적에 동의하고 조합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있다.

② 조합원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비자조합원 : 조합이 제공하는 사업을 이용하는 자 <개정, 2020. 5. 09.>
2. 직원조합원 : 조합에 고용된 자.
3. 자원봉사자조합원 : 조합에 무상으로 필요한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자
4. 후원자조합원 : 조합에 필요한 물품 등을 기부하거나 자금 등을 후원하는 자
5. 단체조합원: 조합의 설립목적에 동의하고 단체출자를 한 법인

제11조(조합원의 가입) ① 조합원의 자격을 가진 자가 조합에 가입하고자 할 때에는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합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인의 자격을 확인하고 가입의 가부를 결정하여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2주 이내에 신청인에게 서면 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가입의 통지를 받은 자는 조합에 가입할 자격을 가지며 납입하기로 한 출자좌수에 대한 금액을 지정한 기일 내에 조합에 납부함으로써 조합원이 된다.

④ 조합은 정당한 사유없이 조합원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 자에 대하여 가입을 거절하거나 가입에 관하여 다른 조합원보다 불리한 조건을 붙일 수 없다.

제12조(조합원의 고지의무) 조합원은 제11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가입신청서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 또는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조합에 이를 고지하여야 한다.

제13조(조합원의 책임) 조합원의 책임은 납입한 출자액을 한도로 한다.

제14조(탈퇴) ① 조합원은 예고하고 조합을 탈퇴할 수 있다.

②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연히 탈퇴된다.

1. 조합원 지위의 양도 등 조합원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2. 사망한 경우
3. <삭제, 2020. 5. 09.>
4. 피성년후견, 피한정후견 선고를 받은 경우 <개정, 2020. 5. 09.>
5. 조합원인 법인이 해산한 경우

제15조(제명) ① 조합은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총회의 의결을 얻어 제명할 수 있다.

1. 1년 이상 계속해서 조합의 시설 또는 사업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2. 출자금 및 경비의 납입 등 조합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조합의 목적사업과 관련된 법령·행정처분·정관 및 규정을 위반한 경우
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합의 사업을 방해하거나 신용을 상실하게 하는 행위를 한 경우

② 조합은 제1항에 따라 조합원을 제명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 개최 10일 전에 그 조합원에게

제명의 사유를 알리고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행한 총회의 제명 의결은 해당 조합원에게 효력이 없다.
- ④ 조합은 제명결의가 있었을 때에 제명된 조합원에게 제명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6조(탈퇴·제명조합원의 출자금 환급청구권) ① 조합을 탈퇴하거나 조합으로부터 제명된 조합원은 출자금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 ② 조합은 탈퇴 조합원이 조합에 대한 채무를 다 갚을 때까지는 제1항에 따른 출자금의 환급을 정지할 수 있다. 다만, 탈퇴하거나 제명된 조합원이 조합에 대하여 채무가 있을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환급금과 상계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청구권은 탈퇴하거나 제명된 날부터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 ④ 제1항에 따른 환급은 탈퇴하거나 제명된 당시의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의 총회 승인에 따라 반환한다. <개정, 2020. 5. 09.>

제17조(탈퇴조합원의 손실액 부담) ① 탈퇴한 조합원의 출자금 환급분을 계산할 때 이 조합의 재산으로 그 채무를 다 갚을 수 없는 경우에는 탈퇴한 조합원은 납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출자액의 범위에서 그가 부담하여야 할 손실액을 납입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손실액의 납입 청구에 관하여는 제16조제3항을 준용한다.

제3장 출자와 경비부담 및 적립금

제18조(출자) ① 조합원은 5좌 이상의 출자를 하여야 하고, 출자 1좌의 금액은 1만원으로 하며, 조합원 1인당 최저출자금은 5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의 최저출좌 수는 이사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21. 2. 27>

- 1. 「의료급여법」 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
 - 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
 -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
 - 4.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 5.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을 가진 자
 - 6. 조합원과 같은 가구에 속하는 자
- ② 한 조합원의 최고출자금은 출자금 납입총액의 10퍼센트 이내여야 한다. 다만, 2인 이상의 조합원이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 포함)일 경우에는 그 2인 이상의 조합원 출자금 총액이 총 출자금 납입총액의 10퍼센트 이내여야 한다.
- ③ 조합에 납입할 출자금은 조합에 대한 채권과 상계하지 못한다.
 - ④ 출자는 현물로도 할 수 있고, 현물출자의 경우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자액을 계산한다. 이 경우 현물출자자는 출자의 납입기일에 출자의 목적인 재산의 전부를 조합 또는 조합에서 지정한 장소에 납입하여야 한다.
 - ⑤ <삭제, 2021. 2.27>
 - ⑥ 단체출자에 관한 사항은 규약으로 정한다.
 - ⑦ 조합원이 추가납입(증좌)한 출자금이 1좌에 미만일 경우 그 출자금은 1좌를 충족시 까지 출자예치금으로 별도 관리하며, 출자예치금으로 포함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1.02.27.>
 - ⑧ 제7항에 따른 출자예치금이 1좌를 충족시에 당해 조합원의 출자금으로 전환하여 적립한다. <신설, 2021.02.27.>

제19조(출자증서 등의 교부) ① 조합의 이사장은 조합원이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최초 출자금을 납입한 때 및 조합원이 요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출자증서 또는 출자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에 기명날인하여 조합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조합의 명칭
2. 조합원의 성명 또는 명칭
3. 조합 가입 연월일
4. 출자금의 납입 연월일
5. 출자금액 또는 출자좌수
6. 발행 연월일

② 조합의 이사장은 매년 정기총회 7일 전까지 조합원의 출자금액 변동상황을 조합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우편, 전자메일, 팩시밀리, 휴대폰 문자 등을 이용하여 통지할 수 있다.

제20조(출자금 등의 양도와 취득금지) ① 조합원 지위의 양도 또는 조합원 출자금의 양도는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 ② 조합원이 아닌 자가 출자금을 양수하려고 할 때에는 가입의 예에 따라야 한다.
- ③ 출자금의 양수인은 그 출자금에 관하여 양도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 ④ 조합원은 출자금을 공유하지 못한다.
- ⑤ 조합은 조합원의 출자금을 취득하거나 이를 질권의 목적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1조(출자금액의 감소의결) ① 조합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조합원의 신청에 의하여 출자좌수를 감소할 수 있다.

- ② 조합은 출자 1좌의 금액 또는 출자좌수의 감소(이하 “출자감소”라 한다)를 총회에서 의결한 경우에는 그 의결을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대차대조표를 작성한다.
- ③ 조합은 제1항에 따른 의결을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조합의 주된 사무소에 이를 서면으로 진술하라는 취지를 공고하고, 이미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개별적으로 최고하여야 한다.
- ④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 기간은 30일 이상으로 한다.
- ⑤ 그 밖의 출자감소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약으로 정할 수 있다.

제22조(출자감소 의결에 대한 채권자의 이의) ① 채권자가 제21조의 이의신청 기간에 출자감소에 관한 의결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출자감소를 승인한 것으로 본다.

② 채권자가 이의를 신청하면 조합은 채무를 변제하거나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23조(경비 및 사용료와 수수료) ① 조합은 사업운동을 위하여 조합원 및 조합의 사업을 이용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경비 및 사용료와 수수료를 부과 및 징수할 수 있다.

1. 시설 사용료
 2. 조합가입 수수료
- ② 제1항에 따른 경비 및 사용료와 수수료의 부과대상, 부과금액, 부과방법, 징수시기와 징수방법은 규정으로 정한다.
- ③ 조합원은 제1항에 따른 경비 및 사용료와 수수료를 납입할 때 조합에 대한 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
- ④ 제2항의 부과금에 있어서 조합원에 대한 부과금액의 산정기준 사항에 변경이 있어도 이미 부과한 금액은 변경하지 못한다.

- 제24조(과태금)** ① 조합은 조합원이 출자금 또는 경비 등의 납입의무를 그 기한까지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과태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조합원은 제1항에 따른 과태금을 조합에 대한 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
 ③ 과태금의 금액 및 징수방법은 규약으로 정한다.

- 제25조(법정적립금)** ① 조합은 매 회계연도 결산의 결과 잉여금이 있는 때에는 해당 회계연도 말 출자금 납입총액의 3배가 될 때까지 잉여금의 100분의 30 이상을 적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법정적립금은 손실금의 보전에 충당하거나 해산하는 경우 외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26조(임의적립금)** ① 조합은 매 회계연도의 잉여금에서 제25조에 따른 법정적립금을 빼고 나머지가 있을 때에는 총회에서 결정하는 바에 따라 매 회계연도 잉여금의 100분의 10 이상을 임의적립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② 임의적립금은 총회에서 결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준비금, 사업개발비, 교육 등 특수목적을 위하여 지출할 수 있다.

제4장 총회와 이사회

- 제27조(총회)** ① 조합은 총회를 둔다.
 ②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③ 총회는 이사장과 조합원으로 구성하며, 이사장이 그 의장이 된다.

- 제28조(대의원총회)** ① 조합은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 총회를 둘 수 있다.
 ② 대의원은 조합원 중에서 제10조제2항의 조합원 유형에 따라 각각 선출한다. 다만, 선출할 대의원 수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③ 대의원의 의결권 및 선거권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행사하게 할 수 없다.
 ④ 대의원의 정수는 100명에서 110명 이하로 하며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개정, 2021.2.27>
 ⑤ 결원으로 인하여 선출된 대의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대의원은 조합원의 선거를 통하여 선출하며, 선거방법에 관한 사항은 선거관리규정으로 정한다.
 ⑦ 대의원총회에 관하여는 총회에 관한 사항을 준용하며, 이 경우 "조합원"은 "대의원"으로 본다.
 ⑧ 대의원총회는 조합의 합병, 분할 및 해산에 관한 사항은 의결할 수 없다.

- 제29조(대의원의 의무 및 자격상실)** ① 대의원은 성실히 대의원회에 출석하고, 그 의결에 참여하여야 한다.
 ② 대의원회는 대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그 의결로 대의원자격을 상실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대의원에게 서면으로 자격상실 이유를 의결일 7일 전까지 통지하고, 총회 또는 대의원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1. 대의원총회 소집통지서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3회 이상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대의원총회에 출석하여 같은 안건에 대한 의결에 2회 이상 참가하지 아니한 경우
 2. 부정한 방법으로 대의원총회의 의사를 방해한 경우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 조합의 명예 또는 신용을 훼손시킨 경우

제30조(정기총회) 정기총회는 매년 1회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이사장이 소집한다.

제31조(임시총회) ①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사장이 소집한다.

1. 이사장 및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조합원이 조합원 5분의 1이상의 동의를 받아 소집의 목적과 이유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여 이사장에게 소집을 청구한 때
 3. 감사가 조합의 재산상황이나 업무집행에 부정할 사실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내용을 총회에 신속히 보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이사장에게 소집을 청구한 때
- ② 이사장은 제1항 제2호(제57조 규정에 따른 해임 요구를 포함한다) 및 제3호의 청구를 받으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2주 이내에 소집절차를 밟아야 한다.
- ③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총회의 소집을 청구하였으나 총회를 소집할 자가 없거나 그 청구가 있는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사장이 총회의 소집절차를 밟지 아니한 때에는 감사가 7일 이내에 소집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 경우 감사가 의장의 직무를 수행한다.
- ④ 감사가 제3항의 기한 이내에 총회의 소집절차를 밟지 아니하거나 소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총회의 소집을 청구한 조합원의 대표가 이를 소집한다. 이 경우 조합원의 대표가 의장의 직무를 수행한다.

제32조(총회의 소집절차) ① 이사장은 총회 개최 7일 전까지 회의목적·안건·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우편 또는 전자메일 등으로 각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이사장이 궐위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총회를 소집할 수 없는 때에는 제52조에서 정하고 있는 순으로 이를 소집한다.

제33조(총회의 의결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1. 정관의 변경
2. 규약의 제정과 변경 또는 폐지
3. 임원의 선출과 해임
4.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5. 대차대조표, 수지계산서, 결산보고서의 승인과 잉여금의 처분 및 손실금의 처리
6. 감사보고서의 승인
7. 조합의 합병, 분할, 해산 또는 휴업
8. 조합원의 제명
9. 탈퇴조합원(제명된 조합원을 포함한다)에 대한 출자금 환급
10. 차입금의 최고한도 결정
11. 그 밖에 이사장 또는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4조(총회의 의사) ① 총회의 의사는 법령상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총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의 개의 정족수 미달로 총회가 유회된 때에는 이사장은 20일 이내에 다시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총회는 제32조에 따라 미리 통지한 사항에 한하여 의결할 수 있다. 다만, 긴급을 요하여 총 조합원의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총회에서 조합과 조합원간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 의결을 행할 때에는 해당 조합원은 의결에 참가하지 못한다.

제35조(합병·분할 및 해산등의 의결)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정관의 변경
2. 조합의 합병·분할·해산 또는 휴업
3. 조합원의 제명
4. 탈퇴조합원(제명된 조합원을 포함한다)에 대한 출자금 환급

제36조(의결권 및 선거권) ① 조합원은 출자좌수에 관계없이 각각 1개의 의결권과 선거권을 갖는다.

- ② 조합원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결권 및 선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조합원은 출석한 것으로 본다.
- ③ 제37조의 자격을 갖춘 대리인이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행사할 때에는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행사하기 전에 조합이 정하는 양식에 따라 미리 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7조(대리인이 될 자격) 전조 제2항에 따른 대리인은 다른 조합원 또는 본인과 동거하는 가족(조합원의 배우자, 조합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과 형제자매, 조합원의 직계 존속·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어야 하며, 대리인이 대리할 수 있는 조합원의 수는 1인에 한한다.

제38조(총회의 의사록) ①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진행 상황과 그 결과를 적고 의장과 총회에서 선출한 조합원 3인 이상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제39조(총회의 운영규약) 정관에 규정하는 외에 총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회운영규약으로 정한다.

제40조(총회의 회기연장) ① 총회의 회기는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속행된 총회는 제32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1조(이사회) ① 조합에 이사회를 두고, 이사회는 조합의 업무집행을 결정한다.

- ② 이사회는 이사로서 구성하고 이사장 1인 외 부이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등을 둘 수 있다.
-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④ 이사회의 소집은 회의일 7일 전까지 회의의 목적사항, 일시 및 장소를 기재한 서면 또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등을 이용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여 이사회 구성원 과반수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1.2. 27>
- ⑤ 이사 3분의 1 이상 또는 감사 전원이 회의목적 사항과 회의 소집이유를 기재한 서류를 제출하고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 ⑥ 이사장은 제5항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7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42조(이사회의 의결사항) ①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조합의 재산 및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총회의 소집과 총회에 상정할 의안
3. 규정, 규칙 등의 제정과 변경 및 폐지
4. 사업계획 및 예산안 작성
5. 간부 직원의 임면 승인

- 6. 기본자산의 취득과 처분
- 7. 그 밖에 조합의 운영에 중요한 사항
- 8. 이사회가 부의하는 사항
- ② 이사회는 제61조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 ③ 제2항의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43조(이사회 의사) ① 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이사의 개인 이익과 조합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이나 신분에 관련되는 사항에 관하여는 당해이사는 이사회 의사결정에 관여할 수 없다.

제44조(이사회 의사록) 이사회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의 경과와 그 결과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참석 이사 전원이 이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제5장 임원과 직원

제45조(임원의 정수) ① 조합의 임원으로 이사장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 20명 이내의 이사와 1명 혹은 2명 이상의 감사를 둔다. 다만, 이사는 제10조제2항의 조합원 유형에 따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로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09.>
 ② 제1항의 임원중 이사회 호선에 의해 상임임원을 둘 수 있다.

제46조(임원의 선임) ① 이사 및 감사는 총회가 조합원 중에서 선출한다. 다만, 이사는 정수의 5분의 1의 범위 내에서, 감사는 2분의1의 범위 내에서 이사회 추천에 따라 조합원 외의 자를 선출할 수 있다.
 ②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총회에서 선출하고, 부이사장,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는 이사회가 이사 중에서 호선한다.
 ③ 제1항, 제2항의 선거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는 별도의 선거관리규정으로 정한다.

제47조(선거운동의 제한) ①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조합의 임원 또는 대의원으로 당선되도록 하거나 당선되지 아니하도록 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조합원(조합에 가입신청을 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나 그 가족(조합원의 배우자, 조합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과 형제자매, 조합원의 직계 존속·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조합원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 가. 금전·물품·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 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는 행위
 - 다. 금전·물품·향응,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겠다는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2. 후보자가 되지 못하도록 하거나 후보자를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나 후보자에게 제1호 각 목에 규정된 행위를 하는 행위
3. 제1호 또는 제2호의 이익이나 직을 제공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하는 행위 또는 그 제공을 요구하거나 알선하는 행위

② 임원 또는 대의원이 되려는 사람은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의 선

거운동기간을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조합원을 호별로 방문하거나 특정 장소에 모이게 할 수 없다.

③ 누구든지 조합의 임원 또는 대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연설·벽보, 그 밖의 방법으로 거짓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를 비방할 수 없다.

④ 누구든지 임원 또는 대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 이외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1. 선전 벽보의 부착
2. 선거 공보의 배부
3. 소형 인쇄물의 배부
4. 합동 연설회 또는 공개 토론회의 개최
5. 전화(문자메시지를 포함한다)·팩스·컴퓨터통신(전자우편을 포함한다)을 이용한 지지 호소

제48조(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조합의 임원 및 대의원 선거사무를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본 조합에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조합원 중에서 이사회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당해 선거에 임원으로 후보등록한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③ 위원의 위촉기간은 위촉일로부터 2년으로 하되 위원이 조합원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위원의 직을 상실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를 소집하여 이를 주재한다.

⑤ 위원장은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에 부의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후보자의 자격심사
2. 선거인 명부의 확정
3. 후보자 추천의 유·무효 판정
4. 선거공보의 작성과 선거운동방법 결정 및 계도
5. 선거관리, 투표관리 및 개표관리
6. 투표의 유·무효의 이의에 대한 판정
7. 선거관련 분쟁의 조정
8. 선거운동 제한규정 위반여부 심사 및 조치
9. 당선인의 확정
10. 그 밖에 선거에 필요한 사항

⑦ 위원회는 의사의 진행상황 및 그 결과를 적은 의사록을 작성하고, 참석위원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⑧ 위원은 선거관리사무를 행함에 있어 공정을 기하여야 한다.

⑨ 그 밖에 위원회의 기능·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선거관리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49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거나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

- 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7.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 ② 제1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임원은 당연히 퇴직된다.
- ③ 제2항에 따라 퇴직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제50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임기 만료일은 총회에서 차기 임원 선출시 까지로 한다. <개정, 2021. 2. 27>

- ② 임원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이사장은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③ 결원으로 인하여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종료일까지로 한다.

제51조(임직원의 겸직금지) ① 이사장은 다른 조합의 이사장을 겸직할 수 없다.

- ②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와 직원은 감사를 겸직할 수 없다.
- ③ 조합의 임직원은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 의원을 겸직할 수 없다.
- ④ 임원 총 수의 3분의 1을 초과하여 임원은 이 조합의 직원을 겸직할 수 없다. 다만, 조합원의 수가 10인 이하인 조합은 해당 기간 동안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2조(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① 이사장은 이사회에 의결에 따라 조합의 업무를 집행하고 조합을 대표한다.

- ② 이사는 이사장을 보좌하며 조합의 업무를 집행한다.
- ③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이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이사, 감사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하고 해당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연장자 순으로 한다.
- ④ 제3항의 경우와 이사장이 권한을 위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장이 아닌 이사는 조합을 대표할 수 없다.

제53조(감사의 직무) ① 감사는 연 2회 이상 조합의 업무집행 상황, 재산상태, 장부 및 서류 등을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반기별 감사보고서는 이사회에, 반기별 감사보고서를 종합한 종합감사보고서는 정기총회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 ② 감사는 예고 없이 조합의 장부나 서류를 대조 확인할 수 있다.
- ③ 감사는 이사장 및 이사가 법령·정관·규약·규정 또는 총회의 의결에 반하여 업무를 집행한 때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 ④ 감사는 총회 또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⑤ 제1항 및 제2항의 감사보고서 제출에 있어서 감사가 2인 이상인 경우 감사의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각각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54조(감사의 대표권) 조합이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와 소송, 계약 등의 법률행위를 하는 때에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제55조(임원의 의무와 책임) ① 임원은 법령과 조합의 정관, 규약, 규정 및 총회와 이사회에 의결을 준수하고 조합을 위하여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② 임원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하여 조합에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③ 임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임무를 게을리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때에는 제3자에게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④ 제2항 및 제3항의 행위가 이사회에 의결에 의한 것일 때에는 그 의결에 찬성한 이사회도 제2항 및 제3항의 책임이 있다.

- ⑤ 제4항의 의결에 참가한 이사로서 명백한 반대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자는 그 의결에 찬성한 것으로 본다.
- 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구상권의 행사는 감사 및 이사에 대하여는 이사장이, 이사장에 대하여는 감사가, 전체 임원에 대하여는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은 조합원 대표가 한다.

제56조(임원의 보수 등) ① 임원에 대하여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 등 조합업무와 관련된 비용을 실비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 ② 상임임원에 대하여는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제57조(임원의 해임) ① 조합원은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동의로 총회에 임원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임의 사유를 서면으로 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조합은 제1항에 따른 서면 제출이 있을 때에는 총회 개최 10일 전에 해당 임원에게 해임 이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58조(운영의 공개) ① 이사장은 결산결과의 공고 등 운영사항을 적극 공개하여야 한다.

- ② 이사장은 정관·규약·규정과 총회·이사회 의사록, 회계장부 및 조합원 명부를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 ③ 결산보고서는 정기총회 7일 전까지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 ④ 조합원과 조합의 채권자는 이사장에게 제2항 및 제3항의 서류의 열람 또는 그 사본을 청구할 수 있다.
- ⑤ 이사장은 제4항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 ⑥ 이사장은 결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게재하여야 한다.

1. 정관, 규약, 규정
2. 사업결산보고서
3. 총회, 대의원총회 및 이사회 활동 상황
4. 사업결과보고서(정관 제61조의 필수사업은 반드시 포함)
5. <삭제, 2020. 5. 09.>

제59조(직원의 임면 등) ① 직원은 이사장이 임면한다. 다만, 간부직원은 이사회 결의를 거쳐 이사장이 임면한다.

- ② 직원의 임면, 급여, 기타 직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60조(고문) ① 총회의 결의로 학식과 경륜있는 사람을 고문으로 추대할 수 있다.

- ② 고문은 조합의 운영과 업무집행에 관하여 이사회에 자문에 응한다.
- ③ 고문의 임기는 추대당시 이사의 임기와 같다.
- ④ 고문의 활동에 대해 이사회에서 정하는 대로 여비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장 사업과 집행

제61조(사업의 종류) ① 이 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 중 하나 이상을 주 사업으로 하여야 하고, 주 사업은 협동조합 전체 사업량의 100분의 40 이상이어야 한다.

1. 지역주민의 건강과 권익과 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해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 가. 의료시설, 요양시설, 보육시설, 재활시설, 양로시설, 노인복지시설, 장애인시설, 사회복지시설, 건강증진시설
- 나. 생활습관 및 생활환경 개선사업
- 다. 취약계층과 조합원 및 지역주민에 대한 건강지원 사업
- 라. 질병예방 및 보건예방 교육사업
- 마. 지역내 의료인과 연대 및 협조사업
- 바. 지역통화 운동 등 협동경제를 구축하고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지원하는 사업
- 사. 조합원의 운동 및 생활습관개선을 위한 시설
- 아. 기타 자원봉사활동 사업 <신설, 2020. 5. 09.>

2.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한 사업

② 이 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기타 사업으로 할 수 있다.

- 1. 조합원과 직원에 대한 상담·교육·훈련 및 정보제공 사업
- 2. 조합과 관련한 연구·조사사업
- 3. 협동조합간 협동을 위한 사업
- 4. 조합의 홍보 및 지역사회를 위한 사업
- 5. 임대사업

③ 조합의 사업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목적·요건·절차·방법 등에 따라 적법하고 타당하게 시행되어야 한다.

④ 조합은 주 사업의 목적 및 판단기준을 적용하기 위하여 수행할 사업유형은 지역사업형으로서 '수입·지출 예산서상 전체 사업비의 100분의 40 이상을 주 사업 목적으로 지출할 것'으로 한다. <개정, 2021. 2. 27>

⑤ 주 사업 및 기타 사업은 구분하여 따로 회계처리 되어야 한다.

제62조(사업의 이용) ① 조합이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 총공급고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도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 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
- 2. 「의료급여법」 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
-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
- 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
- 5.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 6.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을 가진 자
- 7. 해당 조합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소재하는 시·도의 관할 구역에 주소·거소·사업장 또는 근무지가 있는 자
- 8. 조합원과 같은 가구에 속하는 자

② 조합의 공급고의 산정기준은 직전 연도 매출액으로 한다. <신설, 2020. 5. 09.>

제63조(사업계획과 수지예산) ① 이사회는 매 회계연도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동 계획의 집행에 필요한 수지예산을 편성하여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과 예산이 총회에서 확정될 때까지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가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총회의 사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이사회가 총회에서 확정된 사업계획과 예산을 변경한 때에는 차기 총회에서 사후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장 회계

제64조(회계연도 등) ① 조합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조합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되, 당해 조합의 주사업은 일반회계로 하고 그 외의 사업은 특별회계로 한다.

제65조(회계) ① 조합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② 당해 조합의 사업은 일반회계로 하고, 특별회계는 조합이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특정자금을 보유하여 운영할 때, 기타 일반회계와 구분 경리가 필요할 때 설치한다.

제66조(기부금) ① 조합은 관계법령에 따라 기부금을 모금할 수 있다.
② 기부금은 조합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적 목적을 위해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는 불특정 다수로 한다.
③ 조합은 조합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다음해 3월31일까지 공개한다.
④ 기부금은 별도의 통장을 통해 수입과 지출을 관리한다.

제67조(결산 등) ① 조합은 정기총회일 7일 전까지 결산보고서(사업보고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잉여금처분안 또는 손실금처리안 등을 말한다)를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합은 제1항에 따른 결산보고서와 감사의 의견서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8조(손실금의 보전) ① 조합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 결과 손실금(당기손실금을 말한다)이 발생하면 미처분이월금, 임의적립금, 법정적립금 순으로 이를 보전하고, 보전 후에도 부족이 있을 때에는 이를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한다.
② 조합은 제1항에 따른 손실금을 보전하고 제25조에 따른 법정적립금 등을 적립한 이후에 발생하는 잉여금은 임의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하고, 이를 조합원에게 배당할 수 없다.

제8장 합병,분할 및 해산

제69조(합병과 분할) ① 조합은 합병계약서 또는 분할계획서를 작성한 후 총회의 의결을 받아 합병 또는 분할할 수 있다.
②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존속 또는 새로 설립되는 조합은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소멸되는 조합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제70조(해산) ①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산하고 해산절차는 민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한다.
1. 총회의 의결
2. 합병·분할 또는 파산
3. 설립인가의 취소
② 이사장은 조합이 해산한 때에는 지체 없이 조합원에게 통지하고 공고하여야 한다.

제71조(청산인) ① 조합이 해산한 때에는 파산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장이 청산인이 된다. 다만, 총회에서 다른 사람을 청산인으로 선임하였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청산인은 취임 후 지체 없이 재산상태를 조사하고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재산처분의 방법을 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③ 청산사무가 종결된 때에는 청산인은 지체 없이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④ 제2항 및 제3항의 경우에 총회를 2회 이상 소집하여도 총회가 구성되지 아니할 때에는 출석 조합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총회의 승인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72조(청산 잔여재산의 처리) 조합이 해산 후 채무를 변제하고 청산잔여재산이 있을 때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1차 개정) 2013년 2월 23일 일부개정

제3조(2차 개정) 2013년 7월 11일 일부개정

제4조(3차 개정) 2014년 2월 22일 일부개정(2014.4.21 보건복지부장관 인가)

제5조(4차 개정) 2015년 2월 28일 일부개정(2015.4.9 보건복지부장관 인가)

제6조(5차 개정) 2017년 4월 4일 제2조(목적), 제4조(사무소의 소재지), 제57조(사업의 종류) 일부개정

제7조(6차 개정) 2019년 2월 23일 제2조(목적), 제4조(사무소의 소재지), 제10조(조합원의 자격 및 유형), 제18조(출자), 제25조(대의원총회), 제29조(정기총회), 제42조(이사회 의사), 제44조(임원의 정수), 제27조(선거운동의 제한), 제28조(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 제54조(임직원의 겸직금지), 제65조(운영의 공개), 제57조(사업의 종류), 제58조(소액대출: 삭제), 제59조(상호부조: 삭제), 제60조(사업의 이용), 제61조(사업계획과 수지예산), 제63조(특별회계의 설치), 일부개정 (2019.4.22 보건복지부장관 인가)

제8조(7차 개정) 2020년 5월 9일 제4조(사무소의 소재지), 제10조(조합원의 자격 및 유형), 제14조(탈퇴), 제16조(탈퇴·제명조합원의 출자금 환급청구권), 제45조(임원의 정수), 제58조(운영의 공개), 제61조(사업의 종류), 제62조(사업의 이용) (2020.06.17. 보건복지부장관 인가)

제9조(8차 개정) 2021년 2월 27일 제4조(사무소의 소재지), 제18조(출자), 제28조(대의원총회), 제41조(이사회), 제50조(임원의 임기), 제61조(사업의 종류)(2021.03.25. 보건복지부장관 인가)

민들레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 총회운영규약
- 출자좌수 감소 규약
- 현물출자에 관한 규약
- 단체출자에 관한 규약
- 과태금에 관한 규약

총회운영규약

제정 2013.02.23.
개정 2019.02.23.

제1조[목적] 이 규약은 정관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총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총회의 운영은 법령 및 정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약에 의한다.

제3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총회개최 공고 및 통지 전일까지 조합에 가입 승인된 조합원으로 구성한다.

제4조[총회개최 공고 및 통지] ① 총회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목적·안건·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조합의 게시판에 공고하고 조합원에게 우편 또는 홈페이지 게시, 문자메세지 등의 방법 중 적당한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개최공고 및 통지를 하고 필요한 때에는 대전광역시에서 발행하는 신문에 게재한다.

③ 제1항의 공고 및 통지기간 계산은 초일 불산입으로 기산하여 공고 및 통지일과 개최일을 포함하지 않고 7일 이상이어야 한다.

제5조[재적 조합원 확정] 총회 구성원인 재적 조합원은 총회개최 공고 전일까지 조합에 가입 승인된 조합원으로 확정한다.

제6조[조합원명부 비치] 재적 조합원으로 한 조합원명부(선거인명부)를 작성하여 조합원이 열람할 수 있도록 조합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7조[의결사항] ① 총회는 정관 제33조에서 규정하는 의결사항을 의결한다.

② 총회에서 의결할 상정의안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 상정하여야 한다.

제8조[의사의 진행] 의장은 의사를 진행하는 이외에 회의장 정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9조[의안 설명] 의안은 제안자(이사장)가 설명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제안자가 아닌 자에게 위촉할 수 있다.

제10조[일사부재의] 의결된 의안 및 철회된 의안은 동일 회기 중에 다시 제안하지 못한다.

제11조[휴회 또는 회기 연장] ①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회의 도중 퇴장한 조합원이 많아 의결정족수에 미달한 때에는 의장은 정회, 휴회 또는 회기 연장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회기 연장에 의하여 속행된 총회는 정관 제32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2조[표결 방법] 표결은 거수, 기립 또는 투표 등의 방법에 의하되 의장이 총회의 의견을 들어 정한다.

제13조[표결 순위] ① 수정안이 제안되었을 때에는 수정안을 먼저 표결한다.

② 수정안이 2개 이상 있을 때에는 재수정안부터 순차로 표결한다.

제14조[의견 청취] 총회는 필요한 경우 전무이사 및 직원 또는 기타 관계자를 출석시켜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5조[의사록] ① 총회의사록은 총회에서 선출한 2명의 서기가 작성하고, 의장과 서명날인인 및 선거관리인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② 총회의사록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총회의 종류
2. 소집통지 일자
3. 개최일시 및 장소
4. 재적 조합원수 및 참석 조합원수
5. 회의의 목적사항
6. 전차 의사록 낭독 및 승인 여부
7. 의사의 경과 요령과 그 결과
8.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6조[회의의 공개] 총회는 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약은 총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1차 개정) 2019년 2월 23일 제1조(목적), 제4조(총회개최 공고 및 통지), 제7조(의결사항), 제11조(휴회 또는 회기 연장), 제15조(의사록) 일부개정

출자좌수 감소 규약

제정 2013.02.23.
개정 2019.02.23.
개정 2021.02.27.

제1조[목적] 이 규약은 정관 제21조제5항에 의거 조합원의 출자좌수 감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조합원의 출자좌수 감소에 관한 사항은 법령 및 정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약에 의한다.

제3조[출자좌수의 감소] ① 조합원이 납입한 출자금을 감소하고자 할 때에는 감소하고자 하는 출자좌수를 조합에 신청하고 이사회의 승인으로 출자좌수를 감소할 수 있다. <개정, 2021. 2.27>

② <삭제, 2021.02.27.>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시의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의 총회 승인에 따라 반환한다. <개정, 2021. 2.27>

1. 조합원 자격 상실
2. 탈퇴 및 제명
3. <삭제, 2021.02.27.>

제4조[출자금 감소 신청] 조합원 출자금 감소 신청은 별지1호 서식에 의한다.

제5조[출자좌수의 감소금지] ① 조합원의 출자감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출자금을 감소할 수 없다.

1. 조합원의 출자좌수가 기본좌수 이하일 경우
2. 조합원이 조합에 대한 외상물품공급대금 등의 채무액이 출자좌수를 감소하고 도 남은 출자금을 초과할 경우

② 전항의 경우에 의해 조합원의 출자좌수 감소신청에 대하여 출자좌수 감소를 금지한 때에는 조합은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기타 출자좌수 감소에 관한 사항] 이 규약에서 정하지 않은 기타 출자좌수 감소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가 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약은 총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1차 개정) 2019년 2월 23일 제1조(목적) 일부개정

제3조(2차 개정) 2021년 2월 27일 제3조(출자좌수의 감소) 일부개정

현물출자에 관한 규약

제정 2013.02.23.

제1조[목적] 이 규약은 정관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물출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현물출자라 함은 정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원이 조합에 출자를 함에 있어서 현금 이외의 현물재화로 출자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평가기관] 조합원이 현물로 출자할 경우 그 평가액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4조[평가방법] 이사회는 조합원이 현물출자한 당해 현물 평가시에는 정부기관, 관련전문기관 등 제3자에 의한 공정한 평가에 의거 출자액을 계산하여야 한다.

제5조[조합원의 동의] 이사회는 제4조의 규정에 의거 평가 계산한 출자액에 대하여 현물출자한 당해 조합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6조[기타사항] 이 규약에서 정하지 않은 현물출자에 대한 평가와 관련되는 사항은 일반관례에 따라 이사회가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약은 총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단체출자에 관한 규약

제정 2013.02.23.

개정 2019.02.23.

개정 2021.02.27.

제1조[목적] 이 규약은 정관 제10조제2항의5, 제18조제6항 조합원인 법인의 단체출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단체의 정의] 단체출자의 단체라 함은 정관 제10조제2항제5호에 따른 법인으로 국내법인, 외국법인을 포함한다.

제3조[출자방법] 단체가 출자할 경우 출자 100좌 이상을 가져야 하며 출자 1좌의 금액은 정관에서 정한 금액으로 한다.

제4조[출자에 따른 권한] 단체가 출자할 경우의 총회 의결권은 해당 단체장 또는 단체장에게 위임을 득 한자만 사업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또한, 운영에 관해서는 이사회, 위원회 등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1. 2.27>

제5조[사업의 이용] 출자단체 구성원이 조합의 사업을 이용함에 있어 조합원에 준하는 대우를 받을 수 있고,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6조[기타사항] 이 규약에서 정하지 않은 단체출자에 대한 사항은 일반관례에 따라 이사회가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약은 총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1차 개정) 2019년 2월 23일 제2조(단체의 정의) 일부개정

제3조(2차 개정) 2020년 2월 27일 제4조(출자에 따른 권한) 일부개정

과태금에 관한 규약

제정 2013.02.23.

개정 2019.02.23.

제1조[목적] 이 규약은 정관 제24조제3항에 의거 조합원이 출자금 또는 경비 등의 납입의무를 그 기한까지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과태금의 부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과태금의 부과에 관한 사항은 법령 및 정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약에 의한다.

제3조[과태금] ① 조합원이 경비 또는 조합시설 이용료 또는 변상금의 불입과 부과금의 최종 납부 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이사회가 정하는 과태금을 부과한다.

② 조합은 조합원에게 과태금을 부과할 때에는 서면으로 통지하고 이 서면은 조합원이 최종납입기 일 15일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과태금의 유예] ① 조합원이 조합에 납부할 금액을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할 수 없는 충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납부 기한 내에 해당 조합원은 조합에 그 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하고 이사회 승인을 얻어 과태금의 부과를 유예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과태금의 유예기간에 관하여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5조[과태금의 면제] ① 조합은 조합원에게 부과한 과태금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과태금을 면제할 수 있다.

1. 조합의 명백한 오류로 인해 조합원에게 과태금이 부과된 때
2. 조합원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과태금의 부과 통지를 받지 못해 과태금 부과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을 때
3. 기타 이사회 결의로 과태금을 면제한 때

제6조[기타 과태금에 관한 사항] 이 규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이사회가 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약은 총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1차 개정) 2019년 2월 23일 제1조(목적) 일부개정



민들레 Mindlle



Mindlle Health Welfare Social Cooperative



대전광역시 대덕구 계족로663번길 26(법동)

의 원 042)638-9012

한의원 042)638-9013

치과의원 042)638-2275

건강검진센터 042)716-5002

지역사회의료센터 042)716-7001

조합사무실 042)638-9053

대전광역시 대덕구 중리서로 83, 5층(중리동)

주간보호센터 042)716-7004

주민참여건강증진센터 042)638-9043

대표번호 042) 638-9042 / fax 042) 638-9055

<http://www.mindlle.org>
